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321-10

— 창의,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 행복실현 —
2017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2017. 2.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목 차 •

I. 제주도민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1. 계획의 필요성	3
2. 그동안의 주요성과 및 고려사항	9
3. 계획의 추진방향	13
4. 계획의 범위 및 주요영역	16
5. 제주지역 평생교육 추진체계	28

II. 2017년 영역별 시행계획

제1장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31
제2장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 구축	65
제3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123
제4장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265

부 록

<부록 1> 평생교육법	305
<부록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325
<부록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336



I. 제주도민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1. 계획의 필요성

1-1.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중추적 학습기반체계로서의 평생교육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해 내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OECD 회원국들에서 관찰한 결과는 지식·정보를 창출, 확산, 활용하는 지식기반산업이 새로운 미래성장주도적 산업으로 부상하며, 이에 따라 고도로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와 무형자산 등 휴먼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협력과 네트워크 및 상생지향적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전략이 강조됨
 - 이처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으로 인해 종래의 “학교교육 중심 패러다임”에서 “평생학습 중심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 그리하여 일터는 “학습조직”을, 지방정부는 “학습도시”를, 사회는 “학습사회”를, 경제는 “학습경제”를, 문화는 “학습문화”를, 그리고 국가는 “학습강국”의 건설을 각각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 각 부문이 “학습활동”을 적극 강조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ESSD)이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 환경의 보전, 문화의 정립 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에서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역량을 개발하자는 것이며, 이로써 지역평생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성장과 발전시스템 및 지식사회형 사회적 체계구축과 서로 긴밀히 연계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평생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더불어 국가적, 지역적으로는 국민(주민)의 정보공유, 지식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을 널리 아우르는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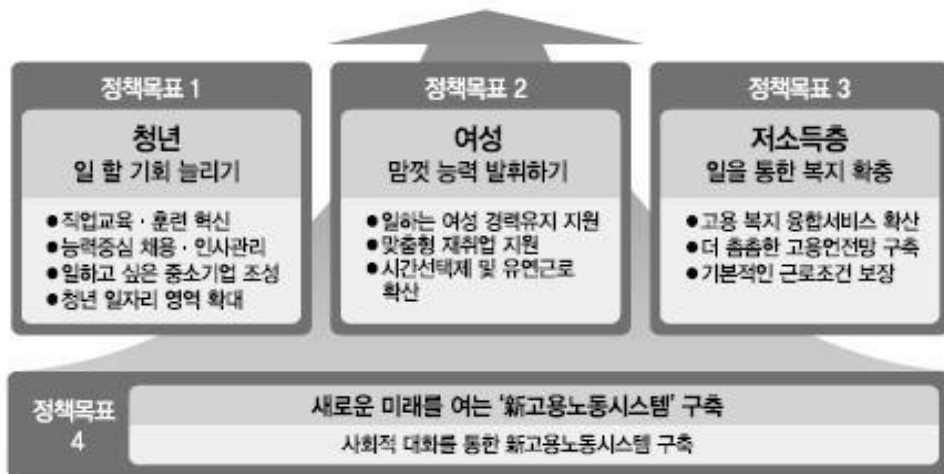
<표 1>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학습 패러다임 변화

구 분		학력중심사회	능력중심사회
경제환경	산 업 구 조	제조업(중화학)중심	소프트화 정보서비스산업중심
	직 무 내 용	단순 반복	복잡화·세분화·전문화
	수 요 인 력	단순기능인력	기초직업능력 다기능화·전문화
	노동시장 채용관행	종신고용 정시 채용제	노동시장 유연화로 수시 채용
사회교육 환 경	학 력 변 화	저학력	고학력
	개 인 능 력 표 시	학력	학력 + 자격
	사 회 교 육	학력중심사회 (정규교육 중심)	능력중심사회 (평생학습의 중요성)
	훈 련	양성훈련	향상훈련

1-2. 미래 평생직업시대에 대응하는 일과 학습의 병행 추진

-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 및 지식기반형 산업으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국가와 지역 모두 새로운 학습정책 수요 및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 따라서 일과 학습의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창조적 성장동력 확보 및 지식기반사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학습생태계 조성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 성과를 좌우함
 - 현대사회의 ‘신유목민적 특성’ 이 강해짐에 따라 시·공간적 개념을 뛰어넘으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경력·역량 중심의 평생직업으로 확산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제주지역은 신규 인구 유입 및 경기불황에 따른 창업과 폐업의 증가, 기업 유치에 따른 전문인력 필요 등 개인을 넘어 지역적 차원에서도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유연하고 개방된 학습-고용 연계체제로의 전환요구와 함께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일-학습병행제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청년계층)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 기업현장(또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임¹⁾
 - 산업체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 현장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채용하며, 참여자들은 실무역량을 획득한 후에 조기에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하고, 이 후 재직단계에서 지속적인 경력개발의 기회를 확보함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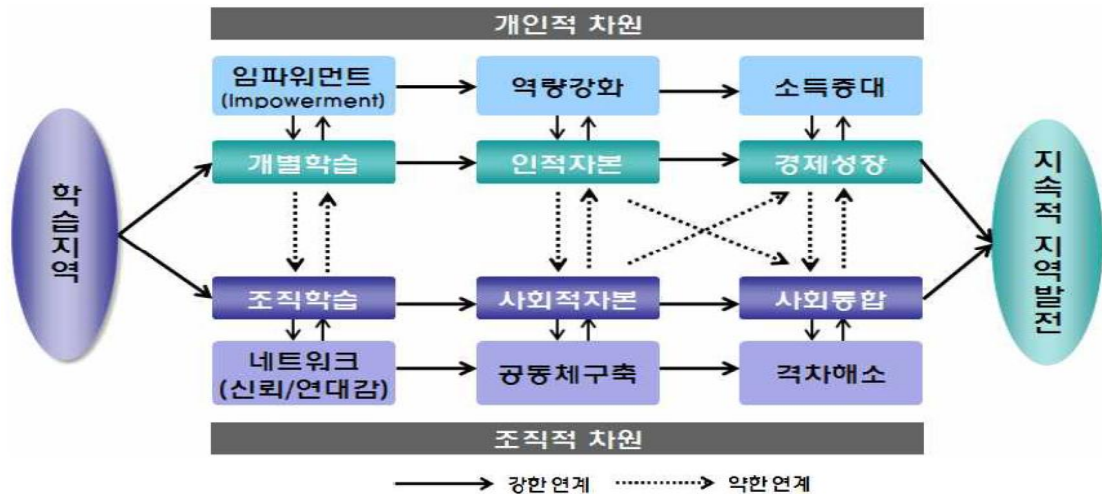


[그림 2] 일-학습 병행제를 위한 정부 정책목표

1) 이는 독일 및 스위스식 도제(徒弟)와 호주·영국 견습제(apprenticeship) 등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일터 기반의 학습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설계·도입한 제도를 말함

1-3. 광역 차원에서의 지역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 역할 수행 기대

- 평생교육은 2007년 법 개정과 더불어 광역과 기초 간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강화되었으며, 2002년부터 추진되는 기초 중심의 「평생 학습도시의 지정·운영」에 따른 시너지 확보, 평생교육기관간의 정책네트워크 구성, 협력적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차별화된 평생교육 확립이 가능해졌음
 - 특히 광역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평생학습 생활화와 개인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역의 발전과 학습공동체 형성, 평생교육 활성화 위한 참여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평생교육은 지역주민의 지적능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지식기반산업 체제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제논리의 영역 속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핵심과제로 부상되고 있음
 - 기존의 학습도와 조직화된 틀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속한 사회변동에 대한 적응과 나아가서는 지역성의 확립에 동참할 수 있는 광역 차원의 평생교육체계를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는 것이 요구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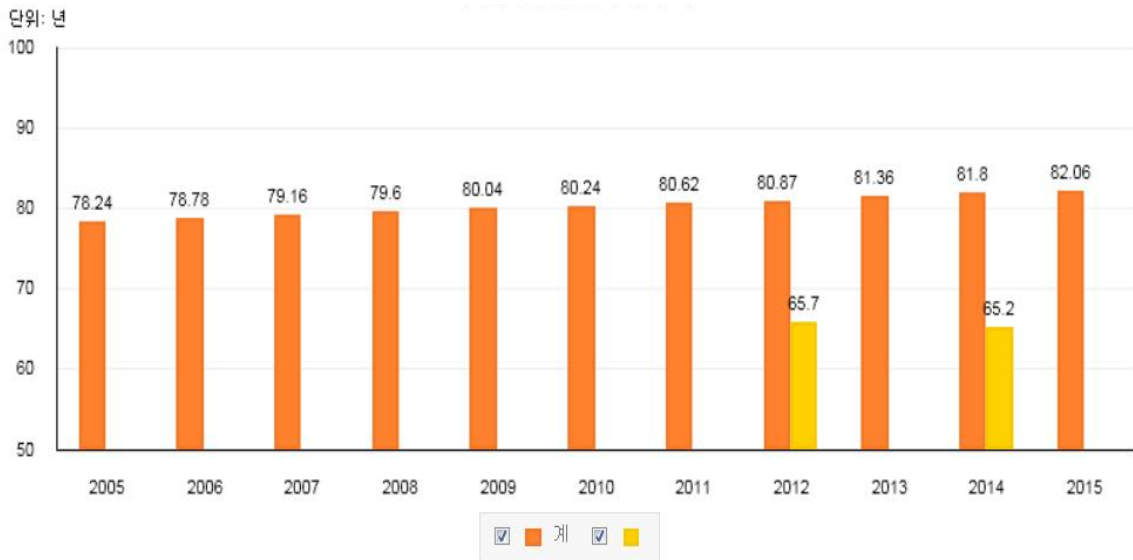
* 출처 : 권인택(2014),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광역수준 지역평생교육체제화의 분석과 발전과제”, 「교육융합연구」, 제12권 1호, 교육융합연구소, p.142

[그림 3] 광역적 평생학습의 발전모형

2)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조사한 「2016년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2016. 12)에서는 만 25세 이상 만 79세의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율은 28.0%로 전국(33.6%) 대비 5.6%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형식교육 참여율은 1.2%로 전국(2.4%) 대비 1.2%p 낮게,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7.2%로 전국(32.3%) 대비 5.1%p 낮은 수준이며, 반면 제주도민 중 대졸 이상 응답자의 경우 평생학습 전체 참여율이 39.9%로 전국 대비 약 20.2% 높은 수준으로 각각 나타남

1-4. 인생 100세 시대의 공존과 공생의 가치 확산

- 평균수명 100세의 ‘호모 헨드레드’ 시대에서 한국은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확실시되며, 이에 따른 고령인구의 재교육과 사회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식과 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그의 생성과 소멸 주기도 계속 짧아지고 있음. 시대의 변화가 빨라진 만큼 직업·직종의 트렌드도 빠르게 변해가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정, 즉 평생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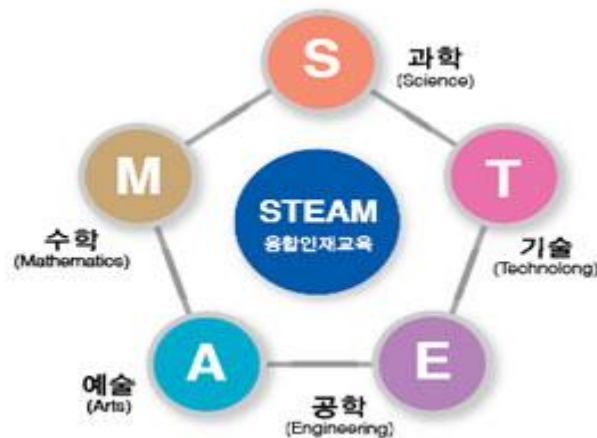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2016. 12), 「생명표」, 국가승인통계 제101035호.

[그림 2] 한국인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추이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추이에 따른 100세 장수의 보편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의 학령기 중심 인생설계(학업, 취업, 혼인, 출산 등)에서 벗어나, 이제는 고용시장 중심 사회로의 총체적인 재구조화를 요청받고 있음
- 인생 100세 시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이 아니라 ‘평생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것’ 으로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따라서 장수(長壽)지역인 제주지역은 장년층, 고령층의 건강하고 유익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와 여유로운 개인적 삶의 영유를 위한 새로운 지식·정보의 습득과 학습기회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1-5.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는 평생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인공지능(AI)에 의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³⁾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이미 사회 곳곳에 그 여파를 드러내고 있음
 - 이와 관련해, 현재 전세계의 실업자 수는 약 10억 명 이상 추산되며, 향후 20년간 아시아 지역에서만 1억 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패러다임(프레임, 콘텐츠)에 대한 변화가 절실하며,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지식의 생산자를 양성해야 함. 특히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가진 학습자로서 의사소통, 협력, 주도성, 도전의식, 적응력, 리더십 등이 ‘사회정서학습’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kills)으로 간주,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평생교육 패러다임도 능동적 변화가 요구됨
 - 이른바 ‘STEAM’으로 표현되는 “융합인재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 수학(Mathematics)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⁴⁾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학습자가 문제해결 상황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의 제시, 학습자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창의적 설계,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성공의 경험을 그 준거로 하고 있음



[그림 3]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합인재 STEAM 교육

3)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이며, 학자에 따라 제시하는 키워드는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지칭.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 통합되어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물리시스템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음

4) Arts 요소는 단지 예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교육(Liberal Arts)을 포함하는 훨씬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

1-6.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통합적 요구 증대

- 유네스코가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을 주창한 이래 평생 학습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통합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 간주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의 평생학습은 ‘사회통합’ 과 함께 ‘학습복지’ 를 추구하는 평생 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학습의 강조, 국가자격체계 설정, 소외계층의 학습 지원, 모든 학습결과의 호환(互換)시스템 구축, 평생학습 재정 확충, 평생 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에 역점을 기울여 왔음
 - 현재 한국사회는 다양한 신념, 의견, 가치, 경제와 교육수준이 조화롭게 공존 하는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배려와 나눔, 일치를 중요한 덕목으로 생활해 왔음. 전통의 두레, 향약은 물론 특히 제주지역의 미덕이자 아름다운 전통인 ‘수눌음’ 은 사회통합을 위한 기층적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음. 이처럼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의 소통과 화합은 국민·주민 모두가 차별과 소외 없는 사회로 함께 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음
- 평생교육은 21세기에 지역, 국가, 네트워크 사회의 ‘범용(汎用)’ 교육시스템 모델인 지역교육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의 ‘잃어버린 교육기반’ (lost education foundation)을 복원하자는 지역사회 교육의 부활적 성격을 지님. 따라서 과거 지역은 사람이 머물고 떠나는 공간적 개념으로만 이해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공동체로서 직접적인 발전의 주체이자 교류의 주체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잃어버린 공동체’ (lost community)를 복원, 재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평생교육은 제주 지역사회의 사회통합과 갈등구조 해소를 위한 매개체로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과 자생력 확보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제주지역 평생교육이 요구 받는 사회통합적 역할과 기능

최근 도내 갈등현안	상생기반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해군기지 및 제2공항 건설 관련 갈등 - 4.3 및 행정체제개편 관련 갈등 - 제주신항만 건설 관련 갈등 - 외국인학교 과실송금 및 외국의료기관 (영리의료법인) 허용 관련 갈등 - 기타 일반 생활수요 관련 갈등현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사회 여론수렴 공통분모 추출 - 소통과 조율로 갈등예방·해소 촉진 - 사회협약위원회 역할·기능 활성화 - 상생·협력기반 공동문제해결 추진 - 글로벌화·다문화 대응 인식도 제고 - 시민교육 활성화, 공동체의식 강화 등

2. 그동안의 주요 성과 및 중점 고려사항

2-1. 주요 성과

(1) 제주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도민사회의 인식 공유화 및 단계적 광역화 기반의 확장

-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이래 평생학습 영역의 재구성 및 세부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단계별·체계적으로 추진
 - ‘구호’로서의 평생학습에서 ‘정책’으로서의 평생학습으로 전환
 - ▶ 교육 관련 6개 공약에 의거한 세부실천 사업의 체계적 집행으로 정책 실효성의 점진적 증진, 평생학습 유관기관들의 협업적 평생학습정책 추진의 기반 점진적 구축
 - 광역단위 제주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저변 확대의 기틀 마련
 - ▶ 평생학습의 확대를 위해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통한 권역화 추진 및 거점시설 지정·운영 실시, 중앙정부의 평생학습도시 연계 운영 및 평생학습관,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과 연동, 실효성 확보
 - ▶ 광역단위 평생학습 지원기관으로서 진흥원의 법인화 전환 검토 및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추진

(2)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2의 교육기회'(Second Chance) 제공 및 이를 통한 사회통합 및 상생·협력 증진에 접근

-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기회 확대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운영
 - 기존의 어르신(노인), 장애인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등 신(新)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수혜(受惠) 기회 확대
 - ▶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및 노인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경로당 등 노인시설 평생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 마련
 - ▶ 장애인 등 취약계층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 확대 방안 모색
 - ▶ 경력단절 극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 ▶ 정착이주민 학교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특성화 운영 여건 및 현황 분석, 제주의 '가치증진' 프로그램 연계 개발
- 저학력 성인 대상 성인문해교육 및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 저학력 성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서 운영 중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 실시

- ▶ 저학력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
- ▶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지원 확대 실시

(3) 평생학습 종사자 자질 및 전문성 향상과 활동영역의 다변화 모색

- 직종별, 직능별 종사자들의 보수교육 활성화를 통해 유관분야,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 사회서비스 가능성 확대
 - 진로직업 맞춤형 교육, 창업아카데미, 관광아카데미, 관광도슨트,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농업인 전문교육, 소비자단체 교육 등 유연한 방식의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전문 교육 실시로 평생학습 종사자의 자질·전문성 향상
- 지역내에서 일정한 전문적 수요, 현장지향적 직능수요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관련 시민대학, 직능별 대학(학교), 교육장 운영다변화 및 확대 등을 통한 전문적 역량의 증진
 -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관광경영자과정, 미술관대학, (여성)시민대학, 박물관대학, 세정대학, 재외도민 향토학교, 간판디자인학교, 융합형 디자인대학, 환경대학 등 특성화과정의 지속적 확대 운영
-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내실화 추진
 - 교양·취미·오락 프로그램의 축소, 직업능력개발 기반의 취·창업 프로그램(자격증 취득) 확대 및 시민교육(핵심리더교육, 인권교육, 응급처치, 사회통합 및 갈등관리 등) 증가

(4) 도민 중심의 자율적 학습 생활화 분위기 조성 확대

- 도민들이 자발적인 학습활동 증가. 특히, 생애주기별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 학습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학습-일상생활 연계를 위해 지식과 정보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과정별로 다양한 체험적 교육과정을 병행 실시
 - 생활안전교육, 문화산업교육, 환경생태교육, 예비부모 아카데미, 외국인(다문화)가족 온라인 한국어교육, 청소년 성·인권교육, 마을별 커뮤니티 리더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과 현장체험을 병행하면서 진행
 - 특히,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시 학습참여 후 일상에서의 다양한 지역활동과의 연계성 확보 및 현장 활용 기회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 및 대응에 주력

2-2. 중점 고려사항

(1) 민선6기 교육부문 공약 실천의 지속화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학습지원, 학습지도전문가 양성·배치, 평생교육 진흥원 법인화 전환·기능강화, 제주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아카데미 개설·운영, 생활권 기반 권역화 및 거점시설 지정·운영 등 지속적 지원을 통한 정책효과 가시화
 - 민선6기에 시작한 평생교육 관련 공약 실천은 2016년도에는 도약기를 맞이하여 그 효과가 도민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함. 자기주도학습센터(2개소), 행복 학습센터(10개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및 현장 활동가들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

(2) 평생교육 도민참여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 저학력 성인계층 및 소외계층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된 시혜적 정책은 소득·학력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율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노정(露呈)
 - 최근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OECD 평균(40.4%)보다 약 5% 낮으며, 조사대상 27개국 중 19위에 불과)
 - 특히, 소규모 영세 자영업체, 다문화가족 등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계층간 및 지역내에서도 학습편차가 큰 실정임. 더불어 생활권역별로도 평생학습 여건 격차가 있어 참여에 대한 저해요인들이 여전히 존재
 - ▶ 월소득 150만원 이하 vs 500만원 이상 평생학습 참여율 : 30.1% vs 44.1%
 - ▶ 지역내 평생교육기관은 제주시(236개소), 서귀포시(101개소) 위치해 있으며 읍, 면 지역의 경우에는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저조한 실정

<표 3> 제주지역 평생교육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운영현황(2015년말 기준)

구 분		기초/성인문해		학력보완		직능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총계	2,704 (100%)	72 (2.7%)		63 (2.3%)		332 (12.3%)		1,566 (57.9%)		449 (16.6%)		222 (8.2%)	
행정부	제주시권	26	36.1	42	66.7	216	65.1	537	34.3	182	40.5	134	60.3
	제주시서부	11	15.2	1	1.6	22	6.6	115	7.3	50	11.1	14	6.3
	제주시동부	2	2.8	3	4.8	1	0.3	50	3.2	28	6.3	5	2.2
	서귀포시권	19	26.4	14	22.1	39	11.8	654	41.8	123	27.4	53	23.9
	서귀포서부	10	13.9	2	3.2	13	3.9	129	8.2	30	6.7	7	3.2
	서귀포동부	4	5.6	1	1.6	41	12.3	81	5.2	36	8.0	9	4.1
합 계		72	100	63	100	332	100	1,566	100	449	100	222	100

(3)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 기반 강화

- 지역내 평생교육 유관기관들이 소수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비정기적, 한시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따라서 아직도 현실적으로 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운영상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즉, 평생교육 유관기관의 경우 비정기적, 부수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미약. 따라서 현장 협력체계 미구축 및 온라인 평생교육 정보망 연계성 부족으로 상호 교류 및 지역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에 제약이 발생
- 아울러 현행 「평생교육법」상 지자체·교육청 간의 역할분담 및 책임한계가 불명확하여 지역평생교육 추진주체는 물론 역할·책임 등에 대한 혼선 발생
 - 중앙정부 및 타시도와 지속적 협의 및 공조를 통해 법령 개정 및 광역-기초에 부합하는 기능 및 역할 협의

(4) 단방향 전달방식 중심에서 지속적·자생적 평생교육 운영기반 확보

- 쌍방향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조기 정착으로 주민참여 학습활동 및 학습 동아리 활성화 등 학습문화 확산 및 지원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참여문화를 조성
- 단방향 교육이 아닌 참여를 통한 학습으로서의 평생교육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일궈나가는 학습공동체 문화 조성이 필요 및 생활 근거리 학습 여건 마련이 기본인프라로 중요함
 - 특히, 제주지역 평생학습 유관기관 중 공공부문 차지 비율(41%)이 높은 편임. 따라서 공공기관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관 특성 및 목적에 부합하는 정례적 교육과정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반면, 2015년부터 제주시평생학습관에서는 현장 수요형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및 ‘재능기부’, ‘배달강좌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 향후에도 지역내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에 대한 해소를 위한 부분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학습동아리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학습과 지역 사회봉사를 추구하는 학습단위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기존 활동조직은 지역내 안착 비율이 높은 실정임. 2010년 이전부터 활동한 학습동아리 비율은 38.6%

3. 계획의 추진방향

3-1. 일-학습-역량 연계·통합성 제고 및 활성화

- 실용적 평생교육을 통한 창조적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역량기반사회를 구축하고 일-학습-역량의 연계와 통합을 통한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로 발전되어야 함
- 실무역량 개발형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지역 평생교육체계에 사회와 직장에 일-학습-역량이 양립 가능한 실무적용 중심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이 요구됨
- 특히,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고용(사회참여 포함)-학습복지의 연계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확충 및 복지서비스 확대 효과를 동시에 유도

3-2. 현장수요 기반 평생학습 운영의 특성화

- 제주지역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주도형의 평생학습문화가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한정된 학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장점·기회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현장수요 기반의 평생학습 운영의 특성화를 목표로 욕구, 특질, 행동에 따라 진단·평가하여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구체화되어야 함

3-3. 사회적 자본의 증진 및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대내·외적으로 환경변화가 체감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재정·자원 등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청, 지역 대학(교), 유관기관·단체 등의 전문가·실무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 이를 토대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식·정보를 널리 공유,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함
- 공동생산(co-production) 개념의 평생학습 활동을 통해 자원의 중복투자 방지로 비용을 절감하고, 평생학습 참여주체들 간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선의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너지를 확보함

3-4. 평생학습의 기반구축을 위한 전방향·다면적 접근

- 학습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내 평생학습 유관기관간 인적·물적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선택·집중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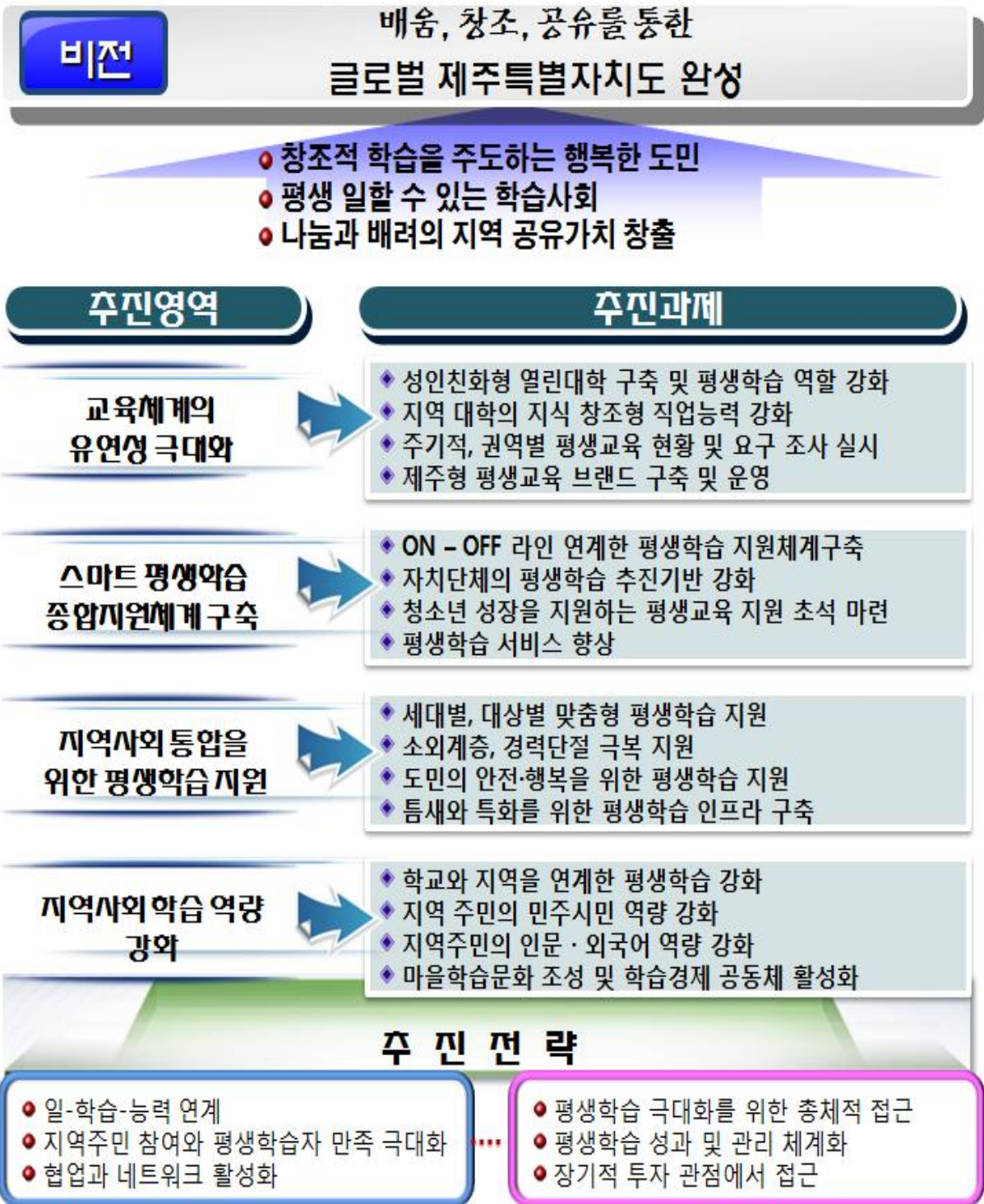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청, 지역 대학(교), 유관기관·단체들 간의 협업체제 구축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전방향의 다변적 접근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결합을 토대로 규모·범위의 경제화 및 시너지를 극대화함
- 단순히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홍보성 행사나 공공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집행보다는 보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평생학습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조성, 학술활동, 행정지원, 기본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3-5. 지역 현장특성 지향의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 평생학습 환경변화 및 평생학습 수요자 욕구변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학습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진단을 통해 지역주민과 현장 수요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탐색·식별하고, 이를 제주지역의 평생학습 추진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 정부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모색,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현장특성 지향의 평생교육을 통한 학습문화의 조성으로 제주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유익한 평생 학습 편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특히 교육은 개인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역량강화로서, 고용은 인적자원의 관리·활용을 통해 지속적 고용유지와 활동으로, 그리고 복지는 일과 학습을 통한 개개인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 개인의 성장·발전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3-6. 단기적 비용 개념을 탈피한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

- 평생학습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반투자와 재정투입을 지속해 나가야 하며, 평생학습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인적자원 확충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 비용이 아닌 장기적인 자본적 투자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학습 성과평가는 손익계산에 의한 단기적 성과 평가보다는 합리성 및 효과성 원리에 근거하여 수행해 나갈 필요가 큼. 즉, 일회성 참여로 만족하는 학습이 아니라 평생학습자 관점에서 이들의 만족도·효용성 및 '학습편익'을 제고하고, 총체적으로는 지역·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장기 지향적 관점이 강조됨



[그림 3]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비전 및 추진전략

4. 계획의 범위 및 주요 영역

4-1.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2017년(1개년 시행계획 중심)
- 사업의 특성상 부분적으로는 전년도 실적 등도 포함하고 있음

2)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3) 내용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중심으로 평생교육진흥 관련 사업

4-2. 계획의 주요 영역 및 과제

1) 사업 총괄현황

구 분	단위사업(개)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	교육청	소계
I.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25	11	11	0	47
II.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계 구축	27	31	18	3	79
III.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 학습 지원	143	38	19	0	200
IV.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34	8	7	4	53
합 계	229	88	55	7	379

2) 사업비 총괄현황

구 분	소요예산(백만원)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소 계
I.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4,492	646	639	0	5,777
II.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계 구축	3,633	1,947	1,202	491	7,273
III.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 학습 지원	23,866	1,347	2,740	0	27,953
IV.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1,874	348	193	529	2,944
합 계	33,865	4,288	4,774	1,020	43,947

3) 세부 영역별 과제 현황

구분	추진 기관명	주요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I. 교육 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지원조정과	I -1	21세기 시민그린대학 운영	25,000
			I -2	최고농업경영자 운영	50,000
			I -3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50,028
			I -4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60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I -5	노인대학원 운영	70,000
		도립미술관	I -6	미술관 대학 운영	12,000
			I -7	미술관 대학	4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I -8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14,000
		미래에너지과	I -9	현장기반형 에너지 융·복합 전문기업 인력양성사업	150,000
			I -10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사업 인력양성사업단 지원	1,685,000
		민속자연사박물관	I -11	박물관 제주학 아카데미 운영	25,000
		보훈청	I -12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15,000
		세계유산문화재부	I -13	제15기 향교재단 평생교육 유림대학운영	10,000
			I -14	유네스코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5,000
		세정담당관	I -15	세정대학 교육 운영	50,000
		전략산업추진단	I -16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100,000
		정보융합담당관	I -17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320,000
		축산과	I -18	제주 한돈대학 운영지원사업	57,200
			I -19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600,000
		평생교육과	I -20	인문학최고지도자 과정 지원 사업	40,000
	해양산업과	I -21	해녀박물관 해녀문화 아카데미 운영	10,000	
	해양수산연구원	I -22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123,300	
	환경자산물관리과	I -23	곶자왓 생태 체험관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350,000	
	환경정책과	I -24	제주환경대학 프로그램 지원	20,000	
		I -25	고급환경전문가과정 교육	50,000	
	제주시청	경로장애인지원과	I -26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15,200
			I -27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4개소)	140,000
		농정과	I -28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	150,000
		문화예술과	I -29	제주시 문화대학 운영	18,000
			I -30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운영	30,000
		여성가족과	I -31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35,000
		지역경제과	I -32	시민경제대학 운영	35,000
		탐라도서관	I -33	도서관 대학 운영	30,000
		구좌읍	I -34	해녀전통문화 체험교실	27,000
		자치행정과	I -35	비정규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44,000
	해양수산과	I -36	한수풀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22,000	
	서귀포	경로장애인지원과	I -37	노인대학원 운영비	70,000
			I -38	노인대학 운영	177,000
		문화예술과	I -39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15,000
			I -40	서귀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15,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요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시 청	여성가족과	I -41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35,000
	지역경제과	I -42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 위탁	100,000
	평생교육지원과	I -43	서귀포 시민대학 운영	30,000
	관광진흥과	I -44	제주올레아카데미 운영	10,000
		I -45	친절 관광 아카데미 운영	12,000
		I -46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사업	125,000
	해양수산과	I -47	법환해녀학교 운영지원	50,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요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II.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계 구축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기술지원조정과	II -1	FTA대응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사업	4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II -2	노인대학원 강의실 개·보수 공사	200,000
		복지청소년과	II -3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	10,000
			II -4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10,000
			II -5	지역아동센터체험놀이마당 프로그램지원	10,000
			II -6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	15,000
			II -7	글로벌 인재육성 교류 사업	15,000
			II -8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40,000
			II -9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활동 등 지원	45,000
			II -10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	50,000
			II -11	청소년 정서치유 힐링캠프	63,000
			II -1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12,820
			II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225,000
		세계유산문화재부	II -1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전승 활성화 사업	272,500
		여성가족과	II -15	장애아동·청소년성인원교육 운영	15,000
			II -16	중도입국 자녀 교육 프로그램 운영	40,000
			II -1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정적 기반 구축	104,816
		자료보존팀	II -18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93,950
		정보융합담당관	II -19	코딩교육프로그램 확산 사업	500,000
		평생교육과	II -20	제주평생교육정보 시스템 운영	35,000
			II -21	행복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	10,000
			II -22	전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20,000
			II -23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30,000
			II -24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600,000
		환경정책과	II -25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285,714
			II -26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200,000
			II -27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추진	590,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제 주 시 청	문화예술과	Ⅱ-28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20,000
	여성가족과	Ⅱ-2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지원	12,000
		Ⅱ-3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27,494
		Ⅱ-31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	246,502
		Ⅱ-32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333,476
		Ⅱ-33 화북청소년 문화의집 음악교실 프로그램 운영	10,000
		Ⅱ-34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2,000
		Ⅱ-35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15,000
		Ⅱ-36 청소년특별지원사업	16,002
		Ⅱ-37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토요일 체험 및 캠프운영비	16,560
		Ⅱ-38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9,850
		Ⅱ-39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47,964
		Ⅱ-40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80,000
		Ⅱ-41 청소년수련시설 주말체험프로그램 운영비	80,000
		Ⅱ-42 참사랑문화의집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59,440
	자치행정과	Ⅱ-43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0,000
		Ⅱ-44 제주시 평생학습대회 개최	12,000
		Ⅱ-45 비정규학교 성인문해교육	13,020
		Ⅱ-46 비정규학교(제주장애인야간학교)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22,214
		Ⅱ-47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63,000
		Ⅱ-48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130,000
		Ⅱ-49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230,209
	정보화지원과	Ⅱ-50 읍면지역 정보화 교육	10,800
	제주시	Ⅱ-5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25,000
	주민복지과	Ⅱ-52 노형동 관내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	15,000
		Ⅱ-53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지원	18,000
		Ⅱ-54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토요일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0,000
		Ⅱ-55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0,000
		Ⅱ-56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육구지원	61,000
	축산과	Ⅱ-57 학생승마체험	120,000
		Ⅱ-58 청소년 승마 정응 프로그램 운영	20,000
서귀 포 시청	효돈동	Ⅱ-59 청소년미디어 영상교육 & 가족힐링캠프	11,120
	영천동	Ⅱ-60 영천아카데미운영	10,000
	표선면	Ⅱ-61 표선면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사업	20,000
	문화예술과	Ⅱ-62 서귀포문화원 문화동아리 지원사업	10,000
	여성가족과	Ⅱ-6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9,942
	자치행정과	Ⅱ-64 주민자치센터 운영	425,000
		Ⅱ-6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80,000
		Ⅱ-66 우수문고 독서문화교실 운영	20,000
Ⅱ-67 새마을문고 운영비		86,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정보화지원과	Ⅱ-68	찾아가는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36,000	
		평생교육지원과	Ⅱ-69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20,000
			Ⅱ-70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30,000
			Ⅱ-71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성인문해교육지원	10,000
			Ⅱ-72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성인·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지원	23,000
			Ⅱ-73	서귀포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27,600
			Ⅱ-74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63,000
			Ⅱ-75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60,000
	Ⅱ-76	대학전공 탐색하기 운영	10,000		
	교육청	미래인재육과	Ⅱ-77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259,147
			Ⅱ-78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 운영	61,650
			Ⅱ-79	평생학습관 운영(제주도교육청)	169,99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Ⅲ.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감사과	Ⅲ-1	지방감사 아카데미 추진	30,000
		경제정책과	Ⅲ-2	노동교육상담소 직무능력 향상교육	10,000
			Ⅲ-3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30,000
			Ⅲ-4	제주형 인력양성과정 운영지원	200,000
			Ⅲ-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536,450
			Ⅲ-6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690,000
			Ⅲ-7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기업	1,530,000
			Ⅲ-8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10,400,000
			고용총괄과	Ⅲ-9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Ⅲ-10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29,000
		교통관광기획단	Ⅲ-11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 지원	20,000
			Ⅲ-12	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지원	21,500
			Ⅲ-13	버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80,000
			Ⅲ-14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 운전 체험교육 지원	100,000
			Ⅲ-15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및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100,000
		교통안전과	Ⅲ-16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	15,000
			Ⅲ-17	화물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	25,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Ⅲ-18 자동차 정비업체 정비요원 전기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55,000
		Ⅲ-19 택시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지원	80,000
		Ⅲ-20 화물 운수종사자 연수기간 위탁교육 지원	88,000
	균형발전과	Ⅲ-21 마을지원 전문가 교육 및 행사참가 보상	10,000
		Ⅲ-22 정착주민 제주의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20,000
		Ⅲ-23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33,000
	기술지원조정과	Ⅲ-24 미래후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교육	16,000
		Ⅲ-25 여성농업인 제주농업발전 교육지원	18,000
		Ⅲ-26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27,000
		Ⅲ-27 원예치료사 양성과정 운영	30,000
		Ⅲ-28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30,000
		Ⅲ-29 농업인단체 현장 시찰 및 교육	100,400
		Ⅲ-30 취약계층을 위한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	33,300
		기업통상과	Ⅲ-31 제주 여성CEO 경영프로그램 지원
	Ⅲ-32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30,000
	Ⅲ-33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지원		270,000
	Ⅲ-34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지원		569,000
	조인장애인복지과	Ⅲ-35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40,000
		Ⅲ-36 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 보급	30,000
		Ⅲ-37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31,000
		Ⅲ-38 자폐성 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40,000
		Ⅲ-39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41,000
		Ⅲ-4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50,000
		Ⅲ-41 안마사 교육사업 운영	90,000
		Ⅲ-42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118,250
		Ⅲ-43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120,000
		Ⅲ-44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육 사업 지원	220,640
		Ⅲ-45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운영	508,000
	동부농업기술센터	Ⅲ-46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25,000
		Ⅲ-47 농기계 안전교육	10,000
		Ⅲ-48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기술교육	14,000
		Ⅲ-4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54,000
		Ⅲ-50 농기계교육장 시설장비 유비	20,000
		Ⅲ-51 농업인교육용 기자재 구입	84,000
		Ⅲ-52 농기계 안전교육 장비구입	120,000
		Ⅲ-53 농기계 안전교육	10,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요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디자인건축지적과	Ⅲ-54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20,000
	문화정책과	Ⅲ-55	마을미디어 스토리텔링 영상콘텐츠 제작 및 교육	50,000
	민속자연사박물관	Ⅲ-56	창의마당생태교실 운영	13,634
		Ⅲ-57	역사기행교실	15,000
	방호구조과	Ⅲ-58	교육용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스템 구입	39,000
		Ⅲ-59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 위탁	13,600
	보건위생과	Ⅲ-60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사업	12,600
		Ⅲ-6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15,110
		Ⅲ-62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669,000
	보훈청	Ⅲ-63	회원 만남의 날 행사 및 안보교육 지원 사업	10,000
		Ⅲ-64	나라사랑 안보교육	12,000
		Ⅲ-65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 사업	30,000
	복지청소년과	Ⅲ-66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15,000
		Ⅲ-67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15,000
		Ⅲ-68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사업	30,000
		Ⅲ-69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59,000
		Ⅲ-70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	19,000
	사회교육과	Ⅲ-71	도민학습교육 강사수당	50,000
		Ⅲ-72	제주리더스아카데미 운영	50,000
		Ⅲ-73	도민친절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순회교육	60,0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Ⅲ-74	귀농영농정착 교육	14,000
		Ⅲ-75	농업인단체 교육 활동지원	14,400
		Ⅲ-76	초중등교사대상 농업농촌 직무교육 운영	20,000
		Ⅲ-77	귀농현장실습교육 지원	54,000
		Ⅲ-78	농촌교육농장 육성	36,000
		Ⅲ-79	농기계 교육 장비구입	80,000
서부농업기술센터	Ⅲ-80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	54,000	
	Ⅲ-81	농촌교육농장 육성	36,000	
	Ⅲ-8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54,000	
	Ⅲ-83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84,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Ⅲ-84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운영	16,000	
	Ⅲ-85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워크숍	20,000	
	Ⅲ-86	여성전문교육 운영	189,500	
	Ⅲ-8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야간·주말 운영지원	1,622,544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소방정책단	Ⅲ-88 고압가스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반 위탁교육비	11,778
		Ⅲ-89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물품 구입	15,110
	수산정책과	Ⅲ-90 수산생물 질병 방역교육	16,000
	식품원예특작과	Ⅲ-91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200,000
	여성가족과	Ⅲ-92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12,000
		Ⅲ-93 WISET(이공계여성 인재육성지원)	18,000
		Ⅲ-94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20,000
		Ⅲ-95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사업	20,000
		Ⅲ-96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30,000
		Ⅲ-97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40,000
		Ⅲ-98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	50,000
		Ⅲ-99 이주여성 전문 인력 컨설팅 지원	100,000
		Ⅲ-100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100,000
		Ⅲ-101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100,000
		Ⅲ-102 지역 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150,000
		Ⅲ-103 아동·여성안전교육 문화사업	28,000
		Ⅲ-104 지역안전프로그램 지원	45,184
		Ⅲ-105 다문화가정 제주 바로 알기	17,000
		Ⅲ-106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30,000
		Ⅲ-107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	50,000
	Ⅲ-108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80,000	
	자치경찰단	Ⅲ-109 어린이교통공원 교통 안전 교육	14,400
자치행정과	Ⅲ-110 북한이탈주민 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운영	10,000	
	Ⅲ-111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도민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	22,300	
	Ⅲ-11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74,700	
정보융합담당관	Ⅲ-113 고령자 정보화교육 지원	12,400	
	Ⅲ-114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109,524	
제주농업기술센터	Ⅲ-115 여성농업인·소비자단체 교육 운영	35,000	
	Ⅲ-116 귀농귀촌 교육 운영	62,000	
	Ⅲ-117 농기계 교육 실습 재료	10,000	
	Ⅲ-118 농업인전문교육 장비	14,000	
	Ⅲ-119 농기계교육장 기반조성	70,000	
	Ⅲ-120 농촌교육농장 육성	72,000	
	Ⅲ-121 교육용 농기계 구입	94,000	
친환경농정과	Ⅲ-122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43,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카지노감독과	Ⅲ-123	카지노 종사원 윤리의식 강화 교육 이수제 운영	33,000	
	특별자치법무과	Ⅲ-124	도민 법 교육 운영	18,000	
	평생교육과	Ⅲ-125	내외국인 문화 프로그램 운영	15,000	
		Ⅲ-126	청년 갭이어(Gap year) 체험 사업	20,000	
		Ⅲ-127	청년 '트멍나멍' 배움 지원 사업	30,000	
		Ⅲ-128	청년 우수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30,000	
		Ⅲ-129	청년시설(청년광장) 프로그램 운영	30,000	
		Ⅲ-130	청년 갭이어(Gap year) 체험 사업	40,000	
		Ⅲ-131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운영	50,000	
		Ⅲ-132	청년활동 지원(청춘열기 프로젝트) 사업	200,000	
		해양산업과	Ⅲ-133	크루즈산업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30,000
	Ⅲ-134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지원	64,000	
	Ⅲ-13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100,000	
	Ⅲ-136		신창 다이버 체험학습장 조성	400,000	
	Ⅲ-137		수상안전 인명교육 및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훈련 지원	143,000	
	해양수산연구원	Ⅲ-138	수산기술 전문교육과정 운영	30,400	
		Ⅲ-139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78,571	
		Ⅲ-140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15,000	
	해운항만물류과	Ⅲ-141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15,000	
	환경자산물관리과	Ⅲ-142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10,000	
	환경정책과	Ⅲ-143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추진	71,430	
	제 주 시 청	경로장애인지원과	Ⅲ-144	농아인협회 사회적응프로그램	10,000
			Ⅲ-145	장애인 연합 프로그램지원	10,000
			Ⅲ-146	지체장애인 사회학습훈련	12,000
			Ⅲ-147	경로당 순회교육	18,000
			Ⅲ-148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00
			Ⅲ-149	장애인운전면허 취득교육지원	18,250
Ⅲ-150			취미교실 운영비	20,000	
Ⅲ-151			노숙인 자활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0,000	
Ⅲ-152			노인교실 운영비	67,000	
관광진흥과		Ⅲ-153	찾아가는 친절교육 운영	30,000	
기초생활보장과		Ⅲ-154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10,000	
		Ⅲ-155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지원	36,000	
마을활력과		Ⅲ-156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협치 지원 프로그램	20,000	
		Ⅲ-157	주민주도형 소통프로그램 공모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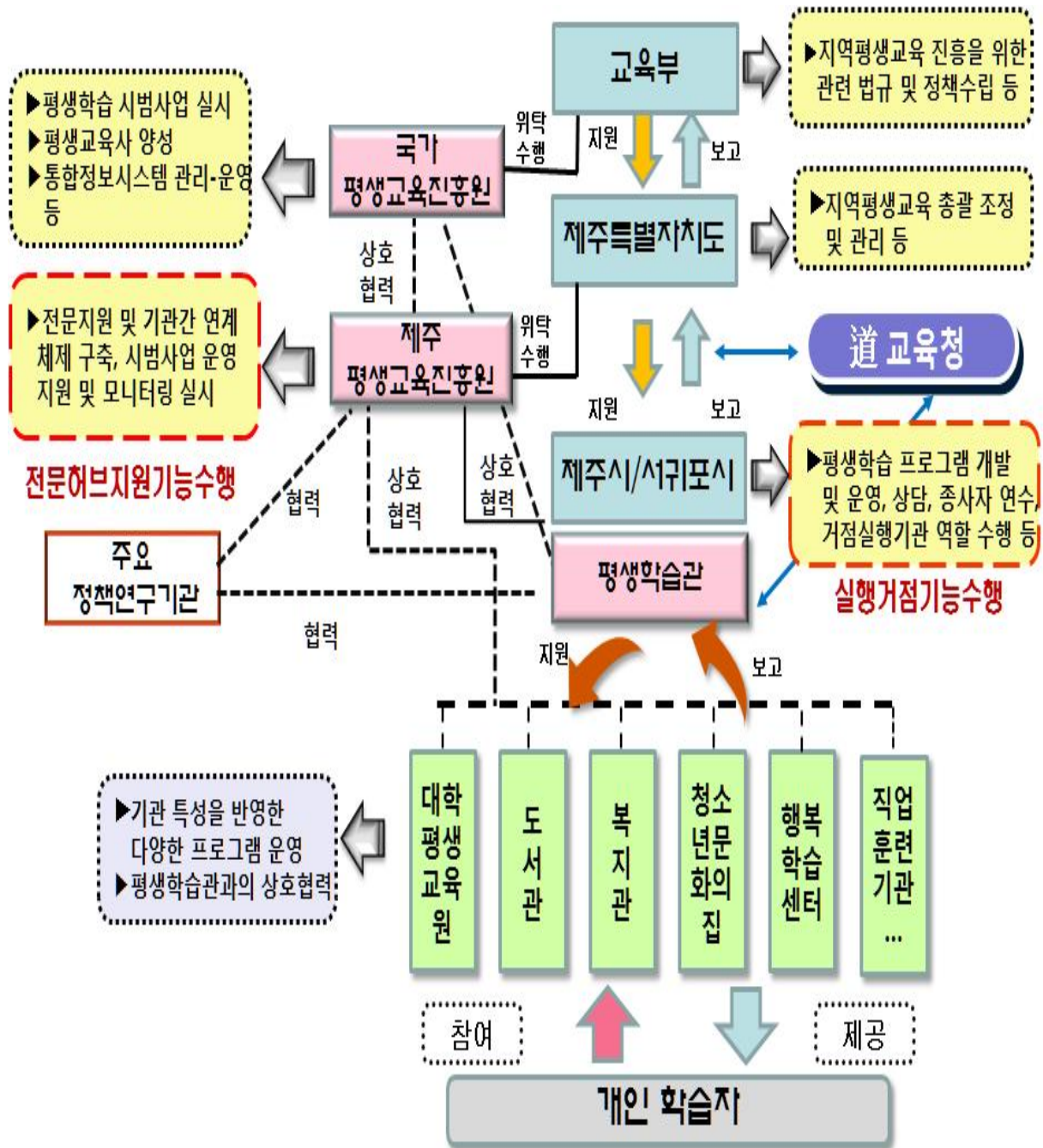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애월읍	Ⅲ-158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시정참여 프로그램 운영	50,000	
	여성가족과	Ⅲ-159 보육교직원 아독학대예방교육	10,000	
		Ⅲ-160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0	
		Ⅲ-161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10,200	
		Ⅲ-162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15,000	
		Ⅲ-163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문학 특강	15,000	
		Ⅲ-164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78,058	
		Ⅲ-165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80,000	
		Ⅲ-16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223,650	
	자치행정과	Ⅲ-167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20,000	
		Ⅲ-168 제주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75,000	
		Ⅲ-169 제주등하학교 차량구입비 지원	29,700	
		Ⅲ-170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차량구입비 지원	45,200	
	정보화지원과	Ⅲ-171 시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10,000	
	주민복지과	Ⅲ-172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조천읍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0	
		Ⅲ-173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34,000	
	지역경제과	Ⅲ-174 생활과학교실 운영	15,000	
	체육진흥과	Ⅲ-175 아쿠아로빅교실 운영	10,560	
		Ⅲ-176 복싱교실운영	10,560	
		Ⅲ-177 수영교실운영	10,560	
		Ⅲ-178 스포츠클라이밍교실운영	15,000	
	축산과	Ⅲ-179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40,000	
		Ⅲ-180 가족사랑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48,000	
		Ⅲ-181 승마 아카데미 운영	50,000	
	서귀포시청	경로장애인지원과	Ⅲ-182 경로당 충효한문교실운영 및 입교생 생활학습비 지원	10,000
			Ⅲ-18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어울림터, 평화의마을, 에코소랑)	15,000
			Ⅲ-184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20,000
			Ⅲ-185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운영	30,000
		마을활력과	Ⅲ-186 귀농귀촌 창업연계교육과정	30,000
생활환경과		Ⅲ-187 쓰레기 줄이기 교육	10,000	
서귀포예술의전당		Ⅲ-188 문화예술교육 운영	27,000	
안정총괄과		Ⅲ-189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16,000	
여성가족과		Ⅲ-19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10,000	
		Ⅲ-191 시 어린이집 연합회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70,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요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Ⅲ-192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향상	1,440,464
		Ⅲ-193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14,000
		Ⅲ-194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26,900
	주민복지과	Ⅲ-195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사회통합지원사업	10,000
		Ⅲ-196 자활사업 민간위탁	879,940
	지역경제과	Ⅲ-197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15,000
	축산과	Ⅲ-198 승마아카데미운영	84,000
	평생교육지원과	Ⅲ-199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20,000
	효돈동	Ⅲ-200 쇠소깍 서핑교실 운영	11,2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요 사업명	소요예산 (천원)
IV.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경제정책과	IV-1 사회적경제 프로그램지원사업	30,000
		IV-2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아카데미 사업	100,000
	기술지원조정과	IV-3 미래후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교육	16,000
		IV-4 기초 농업기술 교육 제작 홍보	28,500
		IV-5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30,000
		IV-6 농어촌관광 경영자과정 운영	50,000
		IV-7 농업인 전문교육	219,500
		IV-8 4-H 도 본부 교육지원	20,000
		IV-9 4-H회 교육 행사	35,000
	동부농업기술센터	IV-10 농업인 전문교육	52,000
		IV-1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54,000
	사회교육과	IV-12 탐라의 얼 아카데미 국내답사	13,000
		IV-13 맞춤형 도민외국어 교육	96,000
		IV-14 도민 중국어아카데미	270,0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IV-15 도민사회교육 강사지원	32,000
		IV-16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58,000
	서부농업기술센터	IV-17 4-H교육 및 행사운영	10,000
		IV-18 농산물 가공교육	18,000
	서부농업기술센터	IV-19 농업인 전문교육	34,000
		IV-2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54,000
		IV-21 생활문화 체험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운영	101,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IV-22 제주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프로그램	10,000
		IV-23 제8기 탐라종묘문화재단 탐라문화아카데미 교육	15,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IV-24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전통교육체험프로그램	18,000	
		IV-25	해설이 있는 역사탐방-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0,000	
		여성가족과	IV-26	학교에서의 성인원교육	22,000
			IV-27	거주외국인 대상 제주문화 이해교육	20,000
		제주농업기술센터	IV-28	농촌지도자 농업경쟁력강화 교육 지원	216,000
			IV-29	농업인전문교육 운영	70,000
			IV-30	제주시4-H본부 농업발전 역량강화 교육 사업	14,400
		친환경농정과	IV-31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사업	40,000
		평생교육과	IV-32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강좌	30,000
		환경정책과	IV-33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38,000
	IV-34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 운영	40,000	
	제주시청	농정과	IV-35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지원	19,400
		도시재생과	IV-36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43,499
		마을활력과	IV-37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50,000
			IV-38	마을만들기 단계별 준비 교육프로그램 지원	60,000
			IV-39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기반 조성사업	72,000
		여성가족과	IV-40	한국어교육 운영	22,162
		자치행정과	IV-41	제주시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등	70,000
		해양수산과	IV-42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11,000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IV-43	농어촌 민박업체 교육	19,400
		대정읍	IV-44	"마늘 체험교실" 시설	45,000
		여성가족과	IV-45	한국어교육 운영	22,162
			IV-46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59,957
		자치행정과	IV-47	차세대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15,000
		주민복지과	IV-48	저출산 대응 시민인식개선	15,000
	지역경제과	IV-49	창업아카데미 운영	16,000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IV-50	초등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 운영	8,180
			IV-5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172,330
			IV-52	검정고시 운영	172,880
			IV-53	학교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75,966

5. 제주지역 평생교육 추진체계





Ⅱ. 2017년 영역별 시행계획

- 제 1 장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 제 2 장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 구축
- 제 3 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제 4 장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제 1 장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I-1. 21세기 시민그린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도민으로서 청정제주의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 이해 및 1차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도민들에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여 농촌지역 사회활동 참여 및 평생학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개요

- 건 명 : 21세기 시민그린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제주대학교)
- 사 업 량 : 1개과정 5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세부 운영계획 수립 : 1과정 50명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교육강사 초청 교육프로그램 운영 : 3월 ~ 11월

기대효과

- 1차산업의 중요성과 제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 증진 도민 역량강화

I-2.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들에게 농업정책, 첨단기술, 최신정보 학습기회 제공
-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농업경영인 육성
 -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개요

- 건 명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제주대학교)
- 사 업 량 : 1개과정 50명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8년 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계획 수립
- 경영·회계·마케팅 등 경영기법, 리더쉽 과정 등 경영교육 및 해외농업동향 교육 등 과정 운영

기대효과

- 제주지역의 농축산업과 1차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 국내외 선진지역 견학 및 도내 현장학습을 통하여 성공적인 영농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선진영농기술 습득 효과

I-3.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의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 국외 선진농업현장 실습교육을 통한 전문농업마이스터 자질 함양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농업마이스터대학 국외현장교육 운영지침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제주대학교)
- 사 업 량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국외현장실습 4과정 80명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50,028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100%)

향후 추진계획

- 농업마이스터대학 국외현장교육 운영지침을 근거로 한 사업운영

기대효과

- 국내외 전문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농업마이스터 양성

I-4.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에 맞는 품목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농업인 육성
- 농업인의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및 제주대학교
- 사업량 : 7개 품목전공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제5기(2017년~2018년) 제주농업마이스터 교육생 모집 및 교육운영

기대효과

- 제주의 지역특화를 살린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특화된 농업개발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I-5. 노인대학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노인들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노인복지법제47조

사업개요

- 대 상 : 서귀포시 노인대학원(1~3학년)
- 사 업 량 : 1개소, 대학원생 187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인건비, 강사료, 입학졸업 등 학사운영 경비 지원
- 총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노인들의 평생교육장 육성을 위한 노인대학원 운영비 지원 : '17년 1월

I-6. 미술관 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민의 문화수준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술관 대학' 운영으로 미술에 대한 이해력 및 문화의식 증진

사업개요

- 건 명 : 미술관 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시 1100로 2894-78 제주도립미술관
- 사 업 량 : 미술관 대학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7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제5기 미술관 대학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2월
- 수강생 모집 공고 및 대상자 확정 : 2017년 3월
- 제5기 미술관 대학 운영 : 2017년 4월

기대효과

- 미술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강의를 통해 현대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이해하고 창의적 사고를 신장시켜 도민의 문화 만족도 상승

I-7. 미술관 대학 프로그램 운영(실비보상)

사업의 필요성

- 고품격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술관대학 추진에 따른 강좌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임

사업개요

- 건 명 : 미술관 대학 실비 보상
- 위 치 : 제주시 1100로 2894-78 제주도립미술관
- 사업량 : 미술관 대학 실비 보상 1식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7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제5기 미술관 대학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2월
- 수강생 모집 공고 및 대상자 확정 : 2017년 3월
- 제5기 미술관 대학 운영 : 2017년 4월

기대효과

- 미술관 대학 운영에 따른 실비 보상으로 원활한 강좌 운영 및 행사 추진에 이바지

I-8.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박물관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인 사회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 수행
- 전통문화·공예, 박물관 교실, 상설체험장을 운영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사업개요

- 건 명 :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 사 업 량 :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 2017년 1월~12월 :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별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

기대효과

- 공립박물관으로서 사회적 역할 제고 및 박물관 기능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 제공

I-9. 현장기반형 에너지융복합 전문기업 인력양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의 지속적인 연계 활용과 관련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실무형 인력 양성
- 스마트그리드 관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원화된 인력양성체계 구축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현장기반형 에너지융복합 전문기업 인력양성
- 지원대상 : 제주도내 스마트그리드 관련기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17년 총사업비 : 150,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홍보 : '17년 1월
- 에너지융복합 관련 지역기업 인력양성 교육 운영 : '17년 2월 ~ 12월

- 에너지융복합 기술현황 및 정책동향 세미나 개최 : '17년 3월 ~ 12월

I-10.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사업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창의형 인재 및 청정에너지 산업의 기술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고급 인력양성
- 현장밀착형 융복합산업 교육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 전문인력 양성 필요
 - ※ 2014년도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대상 확정('14.7월)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사업단 지원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사업단)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17년 총사업비 : 1,685,000천원(국비 1,485,000천원, 도비 2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4차년도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17년 1월 ~ 12월
 - 풍력, 전기차 등 도내 관련 기관·기업 등과 연계, 현장 밀착형 및 고급인력 양성

I-11. 박물관 제주학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민들에게 유구한 세월동안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제주 역사문화의 이해와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김만덕기념관(객주터 재현)과 구도심을 연계한 문화의 거리 체험탐방, 탐라순력도 체험기행 등을 통해 제주의 고유한 전통과 자연을 이해하고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 ※ 사업시행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사업개요

- 건 명 : 2017년 박물관 제주학 아카데미
- 위 치 :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2동) 민속자연사박물관

- 사업량 : 박물관 제주학 아카데미 14회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0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일반 도민들이 박물관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문화정체성 확립에 기여
-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주 역사·자연 교육으로 발전

기대효과

- 박물관 전문 문화소양 강좌 프로그램 개설로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박물관 이미지 제고

I-12.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국가유공상이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다양한 여가 선용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지식, 교양, 문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활기찬 노후 생활 영위

※ 사업시행 근거 :

- 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3조
- 나.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사업량 :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노년의 무료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행복한 노후를 누리는데 도움
- 체험, 문화 등을 접할 수 있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사회적 소외계층이 될 수 있는 노년기 삶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

I-13. 제15기 향교재단 평생교육 유림대학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유학을 이끌어나가는 청·장년 대상의 유교 경전 교육을 실시하여 유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 양성
 - 지역주민에게 유학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회복하여 세대간·계층간 갈등 완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림지도자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3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이도1동
- 사업량 : 청·장년 대상 강좌 교재비 및 강사비 1식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 유림대학 운영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17년 2월
- 2017년 유림대학 유학지도자과정 운영 : '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및 유림지도자 양성
- 사회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및 도덕성 함양 계기 마련

I-14. 유네스코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유네스코학교로 지정된 학교 및 유산지역에 속한 학교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3관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네스코3관왕에 대한 자긍심 및 보전 의식 고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도 일대
- 사 업 량 : 도내 유네스코학교 및 유산지역 인근 학교 10개 학교
- 사업기간 : 2017년 2월 ~ 11월
- 사 업 비 : 25,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 2017년 2월
-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 운영 : 2017년 4월 ~ 11월

기대효과

- 유네스코학교로 운영되는 학생들에게 유네스코3관왕 관련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미래의 유네스코 전문가 양성

I-15. 세정대학 교육 운영

필요성

- 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도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 도민생활에 필요한 조세상식과 사업체 경영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
- 전국 최초 세정대학(제9기) 운영 활성화로 세정분야 개선사항 발굴

운영개요

- 교육기간 : 2017년 3월 ~ 2018년 2월(1년 과정)
- 교육대상자 : 제주도민 60명 내외
- 교육방법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위탁교육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2월 : 제9기 업무협약 체결, 세정대학 원생 모집
- 2017년 3월 ~ 2018년 2월 : 제9기 세정대학 운영, 세정분야 개선사항 발굴

기대효과

- 도정이해 및 세정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함으로써 도민의 행정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요 인력 등 기본 역량강화에 기여

I-16.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의 필요성

- 풍력산업을 선도해 나갈 기술력과 인재가 절실한 실정이나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이 취약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20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풍력 전문인력 양성(석·박사과정 운영, 실증기술 등 교육실시)
- 지원대상 : 제주대학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17년 총사업비 : 10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도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 및 사업비 교부(제주대학교) : 2017년 1월
- 대행사업비 정산실시 : 2017년 12월

I-17.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IT융합산업을 기반으로 한 국제자유도시 실현 및 첨단화를 선도할 특성화된 전문인력 양성
- 공학교육혁신을 통한 혁신인프라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공학교육인증 획득을 통한 우수한 엔지니어 양성
※ 사업시행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사업'선정 ('12년 4월)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
- 사업량
 - 지역 산업과 대학의 핵심역량을 고려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정착 및 활성화
 - 기업 수요자 중심의 산학 협력 맞춤형 교육으로 우수 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
 - 국내외 대학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경진대회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 2012. 3. ~ 2021. 2.(10개년 사업)
- 사업비 : 320,000천원(국가직접지원 200,000, 자체재원 20,000, 기타 100,000)
 - ※ 사업비 부담비율 : 국 62.5%, 자 6.3%, 기타 31.2%

향후 추진계획

- 6차년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 '17년 3월
-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 : '17년 3월 ~ '18년 2월

기대효과

- 산업체 및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 확보에 기여

I-18. 제주 한돈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최근 세계각국과의 FTA체결 등으로 개방화됨에 따라 양돈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으나, 축산분뇨처리 및 가축전염병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
- 미래 양돈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식개혁을 위한 양돈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 한돈대학 운영지원사업
- 위 치 : 도 일원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12월
- 총사업비 : 57,200천원(자체재원 40,000, 자부담 17,200)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70%,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미래 양돈산업을 주도할 양돈 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방안 마련
-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 양돈산업 구축을 위해 양돈 후계자 육성 추진

기대효과

- 도민과 공존할 수 있는 제주 주축산업으로서의 양돈산업 발전기반 조성
- 미래 양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으로 1차산업의 롤모델 제시

I-19.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경마의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말 전문 기능인 부족한 실정
- 말산업 기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 사업시행 근거 :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사업개요

- 위 치 : 도 일원
- 사 업 량 : 2개 학교(제주한라대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00천원(기금 300,000, 도비 300,000)
 - 사업비 부담비율 : 기금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각 학교별 세부계획에 의거 실습기자재 및 교육시설 개보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말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I-20. 인문학최고지도자 과정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인문학 열풍, 인문학 대중화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문학적 콘텐츠에 기반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 제고
- 제주 지역 사회를 견인하는 지도자 및 제주도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지혜를 함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제주산업 발전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 배양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2조 및 제16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사업개요

- 건 명 : 인문학최고지도자 과정 지원 사업
- 위 치 : 제주대학교(인문대학)
- 사 업 량 : 60명(총 30강)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학년도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협약체결 : '17년 2월
- 2017학년도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입학식(60명) : '17년 3월
- 총 30강(학기별 15강) 및 공개강좌(특강) 별도 실시 : '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지역사회-대학-지자체의 협력체제 구축 및 지역거점대학의 지역사회 역할 제고
- 교육생들이 지역사회 내 역할 인식 및 가치 확립을 통한 사회공헌 기여

I-21. 해녀박물관 해녀문화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해양 전문가 교육을 통해 해양문화유산 탐방 기회 제공

-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이론과 실기가 결합된 해녀문화 전문가 양성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개요

- 건 명 : 해녀박물관 해녀문화 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해녀문화 아카데미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7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해녀문화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 '17년 3월
- 해녀문화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17년 4월 ~ 5월
- 해녀문화 아카데미 운영 : '17년 6월 ~ 7월
※ 일반인, 전문가, 청소년 등 연령 및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

기대효과

-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이론과 실기가 결합된 해녀문화 전문가를 양성하여 해녀 문화 홍보 및 교육 확산

I-22.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사업의 필요성

- 수산업경영교육을 통하여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어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사업시행 근거: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해양수산업전문인력 양성)

사업개요

- 건 명: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 위 치: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사 업 량: 약 60명
- 사업기간: 2017년 1월 ~ 12월(계속사업)
- 총사업비: 123,300천원(국비35%, 도비65%)

향후 추진계획

- 교육생 모집: 2017년 1월
- 교육 개강: 2017년 3월
- 교육 수료: 2018년 2월

기대효과

- 제주 지역의 수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육성 및 어업인 권익보호
-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

I-23. 꽃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꽃자왈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통한 보전·관리 의식 고취

사업개요

- 건 명 : 꽃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 사 업 량 : 꽃자왈 생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위탁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350,000천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꽃자왈 생태체험관 전시실 정비 및 생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대효과

- 꽃자왈 생태체험관 운영을 통한 도민 공감대를 확대 및 환경자산 가치 효과 거양

I-24. 제주환경대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의 환경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환경보전 운동을 선도할 환경전문가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2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환경대학 운영지원(환경보전지도자과정 운영)(정액)
- 사 업 량 :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환경정화활동, 환경보전과 이용 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제20기 환경보전지도자과정 수강생 모집 : '17년 1월
- 환경보전지도자과정 운영 : '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제주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대한 기본적 이론교육으로 환경의식 고취
-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생활현장에서 환경보전실천 유도

I-25. 고급환경전문가과정 교육

사업의 필요성

- 환경지식과 가치관 배양 및 자발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고 지역의 환경운동을 선도할 인력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간 협약

사업개요

- 건 명 :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 사 업 량 : 환경관련종사자, 단체회원 등 80명내외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제16기 고급환경전문가과정 2017년도 신입생 모집 : '17년 1월
-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운영 : '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세계환경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환경전문가로서의 자질개발
- 제주 환경보전 활동을 리드하고 실천하는 환경전문

I-26.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전문적인 노인대학 및 대학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 노인대학 기능 혁신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전담관리자 1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200천원(자체재원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비 교부

기대효과

- 노인대학 및 대학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I-27.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4개소)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교양, 오락 등 배움의 기회제공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비로서 운영에 필요한 교육교재, 강사료 등 필요경비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소 (노인대학 3개소, 대학원 1개소)
- 제주시노인대학, 동부노인대학, 서부노인대학, 제주시노인대학원
- 운영주체 :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운영비 보조금 교부

기대효과

- 고령시대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I-28.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FTA 대응 방안 모색 및 농업소득 향상
- 수요자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 교육 욕구에 부응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지역농협 협조)
- 사업량 : 교육인원 500명(농협별 50명)
- 사업기간 : 2017년 1 ~ 12월
- 총사업비 : 214,290천원(자체재원 150,000, 자부담 64,290) ※ 보조율 70%
- 지원내용 : 지역농협 농업성공대학 운영 경비 지원(강사료, 교재비 등)

향후 추진계획

- 농업성공대학 지원계획 수립 : 2017년 2월
- 농업성공대학 교육생 모집 및 선발 : 2017년 3월
- 농업성공대학 운영 및 사업비 정산 : 2017년 4 ~ 12월

기대효과

-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FTA 대응 방안 모색 및 농업소득 향상

I-29. 제주시 문화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지식과 소양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 교육의 장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사업개요

- 사업량 : 문화대학 운영(주관: 제주문화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주요 프로그램
 - 제주의 역사, 제주지명의 유래, 제주 신화전설, 제주문화의 이해 등 강좌 운영
 - 현장 유적답사 등
- 총사업비 : 18,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연간 대학 강좌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2월 : 수강생 모집 등
- 2017년 3월 ~ 12월 : 문화대학 운영

I-30.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전통문화 및 향토사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애호사상을 함양시키는 시민 문화 교육으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재구성으로 신 문화가치 창달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사업개요

- 건 명 : 역사문화박물관 대학 운영(주관: 제주대학교 박물관)
- 위 치 : 제주시 관내
- 사 업 량 : 30강좌(수강생 12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2월 : 위탁협약(운영계획 수립 및 협약)
- 2017년 3월 ~ 12월 : 박물관대학 운영 및 정산

I-31.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여성들의 교육함양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동법시행령 제17조

사업개요

- 사 업 량 : 여성대학 수강생 80명
- 보조사업자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5,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2월 : 여성대학 계획수립 및 모집
- 2017년 3월 ~ 12월 : 여성대학 운영

기대효과

-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여성인재 양성

I-32. 시민경제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급변하는 금융환경 등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경제활동과 연계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향상
- 시민 경제의식 제고로 지역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경제 활력이 넘치는 도시구현
※ 사업시행 근거 : 경제교육지원법 제4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시민경제대학 시민강좌 운영
- 사업방법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
- 총사업비 : 35,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16. 12월 :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준비
- '17년 1월 ~ 2월 : 수강생 모집
- '17년 3월 ~ 12월 : 시민경제대학 운영 및 정산

기대효과

- 시민경제대학 강의의 양적(학기제 운영)·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높아진 시민들의 지적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소통문화 확산으로 수강자 만족도 제고

I-33. 도서관 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전통문화 및 향토사를 바르게 알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은 물론 책 읽는 시민의식 함양
- 세계 속의 제주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평생교육의 장 마련

사업개요

- 건 명 : 도서관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시 정원로 50(노형동 3812-1)
- 사 업 량 : 품격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 중심 운영 32강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연중)
- 총사업비 : 3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100%)

향후 추진계획

- 도서관대학 종합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1~2월
- 도서관 대학 프로그램 운영 : 2017년 3~12월

I-34. 해녀전통문화 체험교실

사업의 필요성

- 해녀 종사자가 점점 줄어들고 해녀문화가 사라질 위기임
- 사라져가는 해녀문화의 전승보존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홍보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개요

- 건 명 : 해녀 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
- 위 치 : 구좌읍 일원
- 사 업 량 : 해녀노래 기능보유자 노래체험, 해녀양성교실 운영, 해녀를 소재로 스토리텔링 체험, 불턱체험 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기대효과

-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전통 제주해녀 체험공간 조성과 젊은 해녀육성 교육장 운영으로 해녀문화융성 발전 기여

I-35. 비정규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사업의 필요성

- 비정규학교의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학습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습욕구 고취 및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비정규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 위 치 :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사 업 량 : 문해교육기관 시설 개보수, 교육 기자재 구입 및 교육시설 정비 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비정규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기대효과

- 비정규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생학습 내실화 진작

I-36. 해녀전통문화 체험교실

사업의 필요성

- 해녀 종사자가 점점 줄어들고 해녀문화가 사라질 위기임
 - 사라져가는 해녀문화의 전승보존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홍보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개요

- 건 명 : 해녀 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
- 위 치 : 구좌읍 일원
- 사 업 량 : 해녀노래 기능보유자 노래체험, 해녀양성교실 운영, 해녀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체험, 불턱체험 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
- 총사업비 : 30,000천원 (보조금 27,000, 자부담 3,000)

기대효과

-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전통 제주해녀 체험공간 조성과 젊은 해녀육성 교육장 운영으로 해녀문화융성 발전 기여

I-37. 노인대학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노인들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노인복지법제47조

사업개요

- 대 상 : 서귀포시 노인대학원(1~3학년)
- 사 업 량 : 1개소, 대학원생 187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인건비, 강사료, 입학졸업 등 학사운영 경비 지원
- 총사업비 : 7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 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노인들의 평생교육장 육성을 위한 노인대학원 운영비 지원 : '17년 1월

I-38. 노인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노인들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노인복지법제47조

사업개요

- 대 상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부설노인대학
- 사업량 : 6개소(읍면 노인대학 5, 시노인대학 1), 대학생 605명(1~2학년)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학사운영 경비지원
- 총사업비 : 177,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 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노인들의 평생교육장 육성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 '17년 1월

I-40. 서귀포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주민 밀착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 사업량 : 문화학교(7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운영비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문화원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및 운영 : 2017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문화학교의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을 통한 건전여가문화 분위기 조성

I-41.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여성들의 자기개발 및 리더십, 국제정세, 문화, 관광,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능력함양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서귀포시 거주 여성 100여명 /24주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0월
- 총사업비 : 35,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여성대학 지속 운영(수요자 중심 강좌 구성으로 학습 만족도 향상)
- 주요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수료생들과의 참여형 워크숍 추진

I-42.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1차 산업 종사자 전문 경영인 양성 및 선진 사례 공유를 통한 경쟁력 향상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 위탁
- 사업량 : 4개 대학·200여명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1월
- 주최/주관 : 서귀포시/ 농협서귀포시지부, 모슬포수협, 서귀포시축협, 서귀포시산림조합
- 총사업비 : 10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대학 운영 세부 계획 수립 : 2016년 12월
- 대학 개강 및 강의 운영 : 2017년 3월 ~ 11월

기대효과

- 현장 중심, 선진 사례 공유를 통한 1차산업 종사자 및 산업 경쟁력 강화

I-28. 서귀포 시민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 능력 개발 및 지역인재 양성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 시민대학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업량 : 2개 과정 · 1,200명(12회)
- 사업기간 : '17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대행 협약 및 계획 수립 : '17년 2월
- 2017년 시민대학 운영 : '17년 3월 ~ 11월
- 2017년 시민대학 운영에 따른 대행기관 성과보고회 : '17년 12월

기대효과

- 글로벌 마인드 및 인문학적 교양 함양 등 시민역량 강화

I-44. 제주올레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올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보제공을 통해 제주올레 관광객 유치
※ 사업시행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
- 사 업 량 :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연3회)
-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1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율 90%, 자부담 10%)

향후 추진계획

- '17년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 : 연 3회

기대효과

- 제주문화 및 올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보제공을 통해 제주올레의 자생력 향상

I-45. 친절 관광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관광사업체 대상 친절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여 서귀포 방문 관광객을 위한 수준 높은 환대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사 업 량 : 친절 관광 아카데미(숙박업소, 음식점 등)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친절 관광 아카데미 기본계획 수립 : '17년 1월
- 친절 관광 아카데미 대상 관광사업체 모집 : '17년 2월
- 친절 관광 아카데미 운영 : '17년 3월 ~ 6월

기대효과

- 관광객 만족도 및 서귀포 지역 관광업계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

I-46.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 및 관광업계의 필요를 충족하고 제주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
※ 사업시행 근거 : 2015년 창조지역사업 선정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도 전역
- 사 업 량 :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 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7년 12월(3개년)
- 총사업비 : 460,000천원(지특 368,000, 도비 92,000)
- 사업비 부담비율 : 국 80% , 도 20%

향후 추진계획

- '16년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16년 11월 ~ 12월
- '17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 : '17년 1월
- 4기·5기 교육 운영 : '17년 1월 ~ 10월
- 3개년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17년 10월 ~ 12월

기대효과

-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관광분야 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인적서비스 제공

I -47. 법환해녀학교 운영지원

사업의 필요성

-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해녀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육성 및 해녀문화 보존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8조

사업개요

- 건 명 : 법환해녀학교 운영지원
- 위 치 : 서귀포시 법환로 1, 법환해녀학교
- 사 업 량 : 해녀학교 운영지원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해녀학교 사업운영계획 수립 : 2017년 1월
- 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 : 2017년 2월 ~ 12월
- 성과평가 : 2017년 12월

기대효과

- 신규해녀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육성 및 해녀문화 세계화 기반 마련

제 2 장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 구축

II-1. FTA대응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사업의 필요성

- 농산물 유통, 재배현황 등 국제적 감각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우수농업인 육성
- FTA , TPP 등 세계농업동향에 신속히 대응하고 준비하는 제주농업 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FTA 대응 농업인 경쟁력 향상 해외연수 사업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5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유통 현장 등 제주농산물의 새로운 판로 가능성 모색을 위한 연수 추진

기대효과

- 농업분야 전문 연수로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정시책 수립, 발전적 방안 모색
- 제주농업이 세계농업이라는 농업인 자긍심 고취로 농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II-2. 노인대학원 강의실 개·보수

사업의 필요성

- 도 노인복지회관 대강당을 노인대학원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신축(1991년) 당시 천정을 타원형(옥상과 맞닿음)으로 시공함에 따라 천정이 너무 높아 냉·난방 비효율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물 노후로 빗물이 창틀로 유입되어 노인대학원 이용에 지장 초래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노인대학원 강의실 개·보수 공사(도 노인복지회관)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 7길 3(삼도이동)
- 사 업 량 : 강의실 천정가림시설 설치, 창틀 교체, 천정 냉·난방 시설 보강(6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0월
- 수행주체 : (사)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경화)
- 총사업비 : 200,000천원(사업비 부담률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강의실 천정가림시설 설치, 창틀 교체, 천정 냉·난방 시설 보강 : '17년 1월 ~ 10월

기대효과

- 노인대학원 강의실 개·보수 공사 실시로 노인대학원생들의 수업 환경개선

II-3.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전통문화가 청소년 문화활동에 구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2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소중한 전통문화를 전승 보급 하는 계기 마련

II-4.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요보호아동에 대한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로 아동의 자립 의지 함양 및 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 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자립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 사 업 량 : 아동양육시설 4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 사업수행 주체 : 아동복지시설 4개소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4개시설

II-5. 지역아동센터체험놀이마당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재능발표의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우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아동센터 한마음대회 지원
- 위 치 : 제주도내 일원
- 사 업 량 :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꿈을 펼치고 화합의 장을 위한 정기적인 행사 마련

기대효과

-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교사, 가족들이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가족에 형성 및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통해 건강한 사회 조성 기여

II-6.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청소년지도자들이 타시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에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청소년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타시도 전문기관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도내 기관 등과 연계 실시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수련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II-7. 글로벌 인재육성 교류사업

사업의 필요성

-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교류의 일환으로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 증진과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인드 함양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사업개요

- 건 명 : 한일해협연안 청소년 포럼 참가
- 사업량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10여명
- 사업기간 : 2017년 1. ~ 2017년 12.
-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국제적 전문확대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II-8.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자원봉사 의미 및 활동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사업 등을 운영하여 더 나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1. ~ 2017년 12.
- 총사업비 : 40,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과 자기주도적 진로교육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미래세대 리더로서의 역량강화에 기여

II-9. 청소년 문화·예술·체험활동 등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들이 밝은 꿈과 희망을 갖고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을 깨닫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문화·예술·체험 활동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1. ~ 2017년 12.
- 총사업비 : 45,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건강한 성장 지원

II-10.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

사업의 필요성

-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의 글로벌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어 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를 얻기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균형적인 교육기회 제공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사업개요

- 건 명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
- 위 치 : 제주도내 일원
- 사 업 량 : 지역아동센터 70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

기대효과

- 원어민 외국어 강사를 통한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II-11. 청소년 정서치유 힐링캠프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보호시설로 보내지거나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외의 장소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수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0명에 이르고 있으나,
 - 이들에 대한 지원이 보호, 치료, 교육, 자립 등 개별적·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종합적·전문적 기능 부재
- ※ 사업시행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개요

- 수탁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양명희)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3,000천원(자체재원100%)
- 주요내용
 - 기숙형 시설에서 생활습관, 사회적응 행동, 대인관계기술 습득
 - 상담, 치료, 보호 병행 실시 및 수료 후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진로탐색, 체험활동 등 실시

기대효과

-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회복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리매김

II-1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위기 청소년과 지속적인 상호교류, 정서적 지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동반자가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9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사업개요

- 수탁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양명희)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12,820천원(중앙기금 50%, 지방비 50%)

기대효과

- 지속적인 청소년 교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정서적 지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동반자가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 만족도 향상

II-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활용하여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사회진입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9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

사업개요

- 사업량 :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 및 학업지원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총사업비 : 78,000천원(국비 70%, 도비 30%)

향후 추진계획

- 학업 복귀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 상담 및 개인 심층상담, 분노조절, 스트레스 대처훈련, 자기표현 향상 등 지원
- 진로 목표 설정 및 일상생활 훈련을 위한 진로목표 동기화, 자립생활준비, 진로 설계 구체화 등 지원

기대효과

-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II-1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전승 활성화 사업

사업의 필요성

-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 공연 공간인 전수교육관의 전략적 이용을 강화하고, 지역 무형문화재의 활용 및 향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성화 방안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 제31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량 :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관 8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72,500천원 (국비 40%, 도비60%)

향후 추진계획

- 민간협력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17년 1월
- 사업별 업무수행자 선정 및 착수 : '17년 2월

기대효과

-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전통문화 향유의 거점 공간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확대

II-15.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인지력 등이 상대적으로 느린 장애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인권교육을 통해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예방 제고
- ※ 사업시행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지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 1 ~ 2017년 12. 31
- 총사업비 : 15,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100%)

향후 추진계획

- 장애아동·청소년대상 성인권교육 체계적 실시를 통해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기대효과

- 장애특성에 맞게 성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아동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올바른 성예절을 습득함으로써 건전한 육성도모

II-16. 중도입국 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들의 재혼으로 인한 중간입국 자녀와 지역사회 및 학교부적응에 따른 학교이탈 자녀에 대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자아실현 및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교육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 비행예방 문제 해소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중도입국 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 직업체험교육 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해 수학능력을 향상시켜 제도권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성교육과 진로탐색 지원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 육성 도모

II-1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원으로 여성일자리 창출
 - ※ 사업시행 근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 센터의 지정)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위 치 : 제주도 중양로 165, 서귀포시 부두로 3, 중산간 서로 212
- 사업량 : 3개소
- 총사업비 : 932,58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1%, 도비 29%)

기대효과

- 육아가사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을 위한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증진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유치로 농어촌지역 여성 취·창업 활성화

II-18.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활발한 전개로 '책 읽는 제주' 만들기 운동에 적극 앞장 서고자 함.
- 제주 지역 공공+작은도서관과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양한 행사 개최로 독서생활화 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도서관법 제28조(업무),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독서의 달 행사 등)

사업개요

- 건 명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오남로 221(한라도서관)
- 사 업 량 : 도서관 책 잔치 프로그램, 독서의 달 행사, 제주 북 콘서트, 제주인문독서아카데미, 어린이·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93,95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도서관 주간+독서의 달 책축제 행사 : '17년 4월, 9월
- 도내의 유명 문학가 초청 북콘서트 운영 : '17년 3~11월
- 인문독서 아카데미 등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독서교육 추진 : 연중

기대효과

- 차별화된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
-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책 읽는 제주” 만들기 운동 기반구축 및 도내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 강화

II-19. 코딩교육프로그램 확산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코딩교육

확산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체계적·창의적 사고 증진 도모

사업개요

- 건 명 : 코딩교육 프로그램 확산
- 사업대상 : 도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 사업량 : 코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교육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비 : 50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16년 코딩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 평가 : '16년 12월 ~ '17년 1월
- '17년 확산사업 계획수립 및 민간위탁 : '17년 2월 ~ 3월
- 코딩교육프로그램 확산사업 추진 : '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차별화된 코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확산으로 미래의 SW융복합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제주의 창의적 인재양성 기반 마련

II-20. 제주평생교육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민들에게 평생교육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평생교육정보 시스템 운영
- 사업량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5,000천원(자체재원 100%)
※ 2012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구축 176백만원(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들의 편리성 제공 및 이용 확대
-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내 자료 확충 및 유관기관 연계 확대

기대효과

-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여 도민들에게 평생교육 정보 습득을 실시간으로 제공

II-21. 행복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필요성

- 교육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2015년도)되어 국비지원 계속사업(3년)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공모시 대응투자 조건의 이행 필요
- 행정시별 거점센터 및 행복학습센터간 정보공유 및 사업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네트워크 활동 및 운영인력에 대한 직무역량강화 지원으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평생교육법』 제21조의 3,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행복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
- 위 치 : 제주시·서귀포시 행복학습 거점센터 2개소 및 읍면 센터 8개소
 - (거점 2개소) 제주시·서귀포시 평생학습관
 - (읍면 8개소) 제주시(5개소) : 한림·애월·구좌·조천·한경
 - 서귀포(3개소) : 대정·남원·성산읍
- 사 업 량 : 행정시 행복학습 거점센터 및 읍면 센터 네트워크 구축 1식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연간 행복학습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사례공유·평가실시 : 2017년 12월

기대효과

- 국가-도-행정시-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확립
- 도민생활권 단위 평생교육 권역화 및 읍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통한 평생 학습 접근성 강화 및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II-22. 전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교육부 주최(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로 매년 전국단위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도 및 도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시의 평생교육을 종합한 통합 홍보·체험관을 운영하여 제주지역의 자료전시·체험프로그램을 홍보·제공
- 타 지역의 우수사례와 정보를 상호 교류로 제주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발굴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제주지역 통합 홍보·체험관 운영
- 위 치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행사장 내(미정)
 - * 2016년도 : 경상남도 거창(공모 등의 방법으로 개최지 선정)
- 사 업 량 : 제주통합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7년 9월 ~ 10월중(3~4일)
- 총사업비 : 20,000천원(사업비 부담률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운영성과 평가 및 발전과제 도출을 통하여 홍보·체험관 운영의 내실화 및 홍보 효과 극대화

기대효과

- 전국단위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제주형 평생교육 진흥의 정책·프로그램 개발자료 수집 및 활용

II-23.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사업의 필요성

- 도민욕구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기반 조성
- 직업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특화형 프로그램 우선 지원으로 일반 교양·취미성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평생교육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 사 업 량 : 평생교육기관(단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
- 공모내용
 - 4050세대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를 위한 생활적응 및 취·창업교육, 제주바로 알기 인문학 강좌, 학습-고용연계, 직업능력개발 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 도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발적·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육성
- 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비문해자들에게 실질적 교육기회 제공

기대효과

- 평생학습 기반 조성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로 평생교육 진흥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

II-24.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지역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조정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지정·운영(2012. 7. 18)함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 사업비 지원

- 도민의 평생교육 수혜권 보장과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등 다양한 사업 시행을 통한 지역평생교육의 기반 조성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 제11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위 치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 사 업 량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인건비·운영비 및 기본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도 출연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 추진으로 기능강화 : 2017년도

기대효과

-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다양한 연구·조사·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정보 제공과 도내 평생교육기관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

II-25.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환경문제해결 능력 배양
- 환경교육시범도에 맞는 생활속 친환경실천을 위한 중점 환경교육 운영
※ 사업시행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및 자연 환경 연수원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침(환경부)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량 : 환경학교, 환경이동체험장, 청소년녹색캠프 등 2만명 내외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85,714천원(사업부담율 : 국비 70%, 도비 30%)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17년 2월
-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친환경생활 유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환경교육 거점으로 적극 활용

II-26.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기후변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도민역량을 강화하고,
- 특화된 기후변화교육 모델구축으로 아시아지역 기후변화 교육·연구·조사 등 세계적 교육센터로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②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교육·홍보)
- ③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2조(재정지원 등)
- ④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사업개요

- 건 명 :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 위 치 : 제주시 회천동 환경기초시설 내
- 사업량 : 기후변화 교육 19천명
 - 그린리더 등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 IUCN/ICLEI 공동운영 프로그램 개발
 - 기후변화 국제포럼 등 개최 및 교육센터시설 운영·관리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비 : 20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계획 수립 : '16년 12월
-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 : '17년 1월
- 기후변화교육사업 추진 : '17년 2월 ~ '17년 12월(사업비정산 '18년 1월)

기대효과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

II-27.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추진

사업의 필요성

-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추진
- 지역의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협력 사업 및 지역 환경발전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추진
- 사 업 량 : 환경기술개발연구사업, 기업환경기술지원사업, 환경교육홍보사업 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90,000천원(자체재원 100%) ※ 국고보조매칭(직접지원)

향후 추진계획

- '17년 사업계획(안) 행정협의회 심의 : '17년 2월
- 연구책임자 선정 및 연구협약 체결 등 : '17년 3월
- 연구수행과제 평가 : '17년 12월

기대효과

- 제주지역의 환경오염 현상을 조사·연구를 통하여 환경정책 및 환경기술개발
-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및 환경전문교육을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

II-28.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민들에게 예술, 교육, 문화 등 인문학과 실생활을 접목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활력소 제공
- 도내·외 유명 강사 초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명 :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 위치 : 제주시일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운영 공모
- 2017년 1월 ~ 12월 : 인생학교 운영

기대효과

- 도민 누구나 쉽게 예술, 문화, 교육 등을 결합한 인문학 강좌 수강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교육강화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

II-2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방문교육지도사의 농촌형 교통비 지급기준(1회 왕복 3,500원)이 읍·면지역 교통비(최대 6,600원)와의 차이 등 현재 실정과 맞지 않아 교통실비로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
- ②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 2, 12호

사업개요

- 사업량 : 방문교육 지도사 16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총사업비 : 12,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교통비 보조금 신청접수 및 지원

기대효과

- 전문지도사(한국어교육지도사, 생활지도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한국어능력향상 도모 및 자녀 양육 역량강화

II-3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제주시)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업·특별활동 등 종합적인 공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사업개요

- 사업량 :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직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7,494천원(사업비 부담률 : 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건전 성장 도모

기대효과

- 전문 강사진 구성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향상 및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

II-31. 청소년방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업·특별활동 등 종합적인 공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사업개요

- 사업량 : 방과후아카데미(3개소) 청소년지도사 9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46,502천원(국비 39% 도비 39%, 자체재원 22%)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 및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기대효과

- 전문 강사진 구성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 향상 및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

II-32.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민간 2개소)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업·특별활동 등 종합적인 공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사업개요

- 사업량 : 방과후아카데미 2개소(민간)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YWCA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제주YMCA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총사업비 : 333,476천원(국비 45%, 도비 45%, 자체재원 10%)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건전 성장 도모

기대효과

- 전문 강사진 구성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향상 및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

II-33.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음악교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사업개요

- 사업량 :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음악교실 프로그램 강사료, 운영물품 구입
- 사업기간 : 2017년 1월~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2월 : 음악프로그램 모집 및 홍보
- 2017년 3월 ~ 11월 : 음악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음악 프로그램(색소폰, 플루트, 클라리넷) 운영을 통하여 바른 연주 주법 이해 하고 청소년들의 악기에 대한 수준 높은 자질과 능력 함양에 기여

II-34.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역량과 덕목을 함양하는 창의적 청소년 활동의 장 제공
 -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초석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제주시청소년수련관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도 교육운영 계획 수립 및 청소년 모집 : 2017년 1월

기대효과

- 지역청소년들의 활동 증진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문강사를 통한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

II-35.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언어 및 문화부적응, 학습·진로 문제, 정서적문제 등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을 지원해 줄 프로그램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사업개요

- 사업량 : 다문화가족 자녀 15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총사업비 : 15,000천원(기금 100%)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활동지원 등 수행

기대효과

○ 지역사회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성장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자녀들의
 원만한 성장 도모

II-3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사업의 필요성

○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사업개요

○ 대 상 : 만9세 ~ 만18세 이하 긴급 돌봄 필요한 청소년

○ 사업내용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 8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6,002천원(기금 70%, 도비 30%)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지속 발굴

기대효과

○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

II-37.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토요체험 및 캠프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업·특별활동 등 종합적인 공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사업개요

- 사업량 :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직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6,650천원(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건전 성장 도모

기대효과

- 전문 강사진 구성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향상 및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

II-38.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들이 자립적·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계발·체험하고 인성과 사회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

사업개요

- 사업량 : 청소년수련시설 11개소 동아리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9,850천원(국비 40%, 도비 60%)

향후 추진계획

- 지역청소년들의 활동증진및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대효과

- 청소년수련시설 소속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 활성화

II-39.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동반자)가 직접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상담, 정서적 지원, 필요기관 연계 등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
-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협력자원을 발굴·연계하며, 그들과 지속적인관계를 형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자기개발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총사업비 : 47,964천원(기금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고위기 청소년 발굴과 관계유지를 통한 서비스 연계 확대,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대효과

- 청소년 동반자가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문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II-40.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의 필요성

-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제공 및 문화·체험 활동 기회제공
-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전성장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청소년공부방 8개소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도 용해로 55(용담2동) 성화청소년공부방 등 8개소
- 총사업비 : 80,000천원(사업비 부담률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건전육성 도모

기대효과

- 지역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상담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II-41. 청소년수련시설 주말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들의 열정과 창의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청소년문화의집 10개소 주말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 사업기간 : 2017년 1월~1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사업비 부담률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의 끼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대효과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활성화 및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청소년 육성에 기여

II-42. 참사랑문화의집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민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운동을 통해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사업개요

- 사업량 : 12개 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9,440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작품전시회 개최 : 2016년 12월
- 2017년도 교육운영 계획 수립 및 수강생 모집 : 2016년 12월 ~ 2017년 1월

기대효과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기개발 극대화 및 평생학습 기회 확대

II-43.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제주시)

사업의 필요성

- 매년 전국단위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제주시 홍보체험관을 운영하여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홍보 및 전국 평생학습기관과의 정보교환과 네트워크 구축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6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및 견학
- 위 치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행사장(미정)
※ 2016년 개최지 : 경남 거창군(거창 스포츠파크)
- 사업기간 : 2017년 9월 ~ 10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6월~ 8월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계획수립 및 참가기관 모집
- 2017년 9월~ 10월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기대효과

- 전국 평생학습도시와 네트워크 형성 및 제주시 평생학습 추진사례 홍보

II-44. 평생학습대회 개최(제주시)

사업의 필요성

- 제주시 평생학습 추진사업 중 영역별로 특성화 하여 체험·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제주시 평생학습 성과공유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2017년 제주시평생학습대회 개최
- 위 치 : 제주시 평생학습관

- 사업량 : 연1회 개최
 ※ 2016년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와 연계 개최(격년제 공동개최)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중
- 총사업비 : 12,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체험·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제주시 평생학습 공유 및 축제의 장 마련

기대효과

- 평생학습대회 개최를 통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정립 및 평생학습발전에 기여

II-45.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가정환경의 어려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인해 학업의 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문자해득능력 및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조직화된 학습프로그램을 편성 및 운영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생활 실현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 위 치 :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30,209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인문소양·문화예술, 학력취득반 등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기대효과

-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학력취득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기회의 평등 실현

II-46. 비정규학교(제주장애인야간학교)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안정적인 이동지원을 통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 위 치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사업량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2,214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중증장애인 평생학습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기대효과

- 한정된 장애인의 생활범위 확대로 활발한 평생학습 참여와 개인의 궁극적 자립실현

II-47.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기회 제공을 통한 근거리 학습권 보장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행복에 기여

* 교육부 지원 방침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2017년도에는 자체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교육부 지원 2014년 ~ 2016년, 3년)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 위 치 : 제주시 관내
- 사 업 량 : 읍·면지역 행복학습센터 5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3,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행복학습센터운영사업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2월 : 평생학습센터 매니저 채용 및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선정
- 2017년 2월 : 읍·면 행복학습센터 지정(5개소)
- 2017년 3월 ~ 12월 : 행복학습센터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읍·면 생활권내 근거리 학습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행복 증진
- 연중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평생학습 기회 제공 기반 마련

II-48. (제주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민자치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편의 복지 증진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자치기능 강화
-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통합적 기능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7조5항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26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등)
- 위 치 : 도두주민자치센터 외 25개소
- 사 업 량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1식 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마을별 및 기존 프로그램 수강생을 대상으로 희망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 후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프로그램 기획·심의 등 주민자치위원의 참여를 통한 운영

기대효과

- 마을별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 지역주민들의 희망 프로그램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만족도 향상

II-49. (제주시)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사업의 필요성

- 주민자치센터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특색 있는 주민자치구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주민 화합공동체 조성, 귀농·귀촌인, 은퇴이주민 등의 안정적 제주 생활 지원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참여계층 다변화

사업개요

- 건 명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사업량 : 26개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 '17년 1월 ~ 2월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선정 및 센터별 사업 추진 : '17년 3월 ~ 10월
- 특화프로그램 사업결과보고 및 우수센터 인센티브 부여 : '17년 11월

기대효과

- 지역의 특성과 현안이 반영된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II-50.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가정환경의 어려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인해 학업의 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문자해독능력 및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조직화된 학습프로그램을 편성 및 운영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생활 실현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 위 치 :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30,209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인문소양 · 문화예술, 학력취득반 등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

기대효과

-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학력취득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기회의 평등 실현

II-51. 읍면지역 정보화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정보화교육장 접근이 다소 어려운 읍면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과정 및 장소(시간대)에서 정보화 교육
-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농어촌 어르신들의 정보화 학습 기회 제공

사업개요

- 건 명 : 읍면지역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 위 치 : 읍면지역 주민이 원하는 장소

- 사업량 :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활용 등 시민이 원하는 과정운영
- 지원 : 교재, 강사료(필요시 PC, 빔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12월
- 총사업비 : 10,8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읍면지역 정보화 교육 추진 : 2017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

II-52. 노형동 관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역 내에서 안전한 보호와 교육지도,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절실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59조

사업개요

- 위 치 : 노형동 관내 지역아동센터
- 사업량 : 노형동 지역아동센터 4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3월 : 보조사업공모 및 대상자 선정
- 2017년 3월 : 지방보조금 심의 의결
- 2017년 4월 ~ 12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기대효과

- 지역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아동 성장 도모

II-53.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복합적 요구를 가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의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2016년 드림스타트사업안내(보건복지부)

사업개요

- 사업량 : 2개 영역별 프로그램 5건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000천원 (국 100%)

향후 추진계획

- 연중 프로그램 계획 : 1월 중
- 가족지원 및 정서/행동프로그램 운영 : 연중

기대효과

-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

II-54.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토요일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주 5일 사업시행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돌봄 공백 없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요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부 체험 및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2호

사업개요

- 사업량 : 지역아동센터 17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토요프로그램 지원 보조내시 : 2017년 1월
-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토요프로그램 신청 및 지출 : 2017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토요일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임을 방지하고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II-55.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방학중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공백 해소 및 건전아동 육성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59조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프로그램비 지원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지역아동센터 26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1,2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26개소에 대한 방학중 프로그램비 지속 지원

II-56.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욕구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아동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부모/가족 지원 영역별 프로그램운영으로 맞춤형 욕구서비스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2016년 드림스타트사업안내(보건복지부)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영역 프로그램 12건 (48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1,000천원 (사업비 부담률 : 국비 100%)

향후 추진계획

- 연중 프로그램 계획 : 2017년 1월 중
-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 : 연중

기대효과

- 맞춤형 육구서비스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II-57. 학생승마체험

사업의 필요성

-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 말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인구 발굴 및 승마활성화 동력 확보
- ※ 사업시행 근거 : 말산업육성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사업개요

- 건 명 : 학생승마체험 지원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량 : 100명
- 총사업비 : 30,000천원(기금 9,000, 도비 12,000, 자담 9,000)
- 사업비 부담비율 : 기금 30%, 도비 4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초·중·고등학생 승마체험 비용 일부 지원

향후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공모 : 2017년 1월 ~ 2월
-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청소년 승마 체험교실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학교 적응 모델을 제시하고 말과 교감을 통한 인성교육 및 자기관리 능력향상
- 청소년들의 승마라는 레저스포츠 보급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 통로 조성 및 잠재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승마대화중에 기여

II-58. 청소년 승마 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대상 승마 체험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 청소년 승마체험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고 승마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승마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일원 말 관련 단체 및 등록 승마장
- 사업량 : 1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50%, 자부담 50%)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승마운동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협동심과 모험심을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건강한 육체를 배양하여 바람직한 인격 형성에 도움

기대효과

- 건전한 승마체험을 통해 인터넷, 게임 중독 등 폐해 예방 및 건강 증진
- 말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승마인구 저변 확대

II-59. 청소년미디어영상교육 & 가족힐링캠프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청소년들에 창의성과 화합을 위한 교육
-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캠프를 통하여 청소년들에 정신건강과 청소년과 학부모들 간의 소통의 장 마련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영상미디어교육 & 가족힐링캠프
- 위 치 : 서귀포시 효돈동 관내
- 사 업 량 : 청소년 참가자 32명 4개조 기준 / 캠프 200명 참가
- 사업기간 : 2017년 5월~10월
- 총사업비 : 11,12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비90%, 자부담 10%)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접수 : 2017년 4월 ~ 5월
- 사업추진 및 평가 : 2017년 8월

기대효과

- 미래에 자산 지역 청소년들에 인성, 창의성, 협동심, 책임감 고취
- 청소년들과 부모, 그리고 지역 청년들과에 소통과 화합으로 건강 지역 사회에 기여

II-60. 영천아카데미운영

사업의 필요성

- 영천동 지역 출신 출향 인사를 초청하여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축적된 지식·경험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소통의 장 마련

사업개요

- 건 명 : 영천아카데미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영천동 일원

- 사업량 : 강의, 교류행사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100%)

향후 추진계획

- '17년 2월 ~ 10월 : 2017년 영천아카데미운영(강의2회, 교류행사 2회)

기대효과

-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 및 마을비전 토대 마련

II-61. 표선면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사업

사업의 필요성

- 음악·미술 동아리 활동으로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삶의질 향상, 마을 특색을 담은 찾아가는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표선면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사업
- 위 치 : 표선면 표선리 일원
- 사업량 : 음악·미술 교육프로그램, 벽화그리기, 특강실시 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자체재원 18,000천원 / 자부담 2,000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 음악·미술 교육프로그램, 벽화그리기, 특강실시

기대효과

- 다양한 음악·미술창작활동을 위한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교육 갈증 해소 및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 벽화그리기 등 지역봉사활동을 통한 향토애 제고

II-62. 서귀포문화원 문화동아리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역의 문화동아리 육성으로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량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 사 업 량 : 관내 6개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관내 문화동아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2017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지역의 문화동아리 활성화 및 문화예술 인력 양성

II-63.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동반자)가 직접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 정서적 지원 및 필요기관 연계 등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중앙로 94, 3층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사 업 량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9,942천원(국비 29,971 도비 29,971)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II-64. (서귀포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자치역량강화는 물론 지역발전 계기마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위 치 : 제주지역 17개 주민자치센터
- 사 업 량 : 주민자치센터별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25,000천원(사업비 부담률 자체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연중 운영 : 2017년 3월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II-65. (서귀포)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의 필요성

- 프로그램 발굴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량 :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주민자치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대효과

- 주민주도의 프로그램 발굴과정운영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실현

II-66. 우수문고 독서문화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의식수준 향상과 독서생활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 전달 및 문화욕구 충족
- ※ 사업시행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태평로 18
- 사업량 : 독서문화교실 40개 강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우수문고 독서문화교실 운영비 교부 및 운영지원 : 2017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독서분위기 확산 및 새로운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문화시민의식 수준 향상

II-67. 새마을문고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의식수준 향상과 독서생활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 전달 및 문화욕구 충족
- ※ 사업시행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태평로 18
- 사 업 량 : 새마을문고서귀포시지부 1개소(상근인력 2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6,000(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16년 지원경비 정산 및 평가 및 '17년 운영계획 수립 시행

기대효과

- 새마을문고에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문고 운영 활성화로 독서문화분위기 조성에 기여

II-68. 찾아가는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함양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추진
-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23조(정보화 교육)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 교육기간 : 2017년 2월 ~ 12월
- 교육대상 : 지역 시민 300여명
- 교육장소 : 시 본청 정보화교육장, 마을정보사랑방,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등
- 총사업비 : 36,000천원 (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 '16년 12월
-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과정 개설 및 교육 강화 : 연중

기대효과

- 계층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수준 향상
- 정보화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쟁력 강화

II-69.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관내 청소년(중학생)과 우수 대학생을 연계하여 수준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력을 일깨워줌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지역의 우수한 대학생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공헌 및 학비 지원 기회 제공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 위 치 : 서귀포시 소재 중학교
- 사업기간 : '17년 1월 ~ 7월
- 사업내용 : 학습지도, 고충상담 및 인성지도, 진로상담 등
- 총사업비 : 2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멘토링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멘티 모집 : '17년 3월
- 2017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17년 4월 ~ 7월

기대효과

- 지역인재를 활용하여 개별적 학업지도 및 상담을 통해 잠재력을 일깨워줌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

II-70.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민 필요에 의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발굴·지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평생학습 참여 유도로 평생학습 문화 정착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사업량 : 4개 기관
- 사업기간 : '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재원 100%)
- 주요내용 : 시민제안 프로그램을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확대 운영 및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 시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신청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역량 강화

향후 추진계획

-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세부지원기준 수립 : '17년 1월
-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 : '17년 2월
-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민제안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자발적 운영으로 창의적인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
-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

II-71.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의 필요성

-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 활동 참여기회 확대

- 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생애 능력 향상 지원으로 교육 안전망 구축 및 사회통합 증진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성인문해교육지원(정액)
- 위 치 : 서귀포오석학교
- 사업기간 : '17년 1월 ~ 12월(2012년도 이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 주요내용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반, 문해반, 백일장, 시화전 등

※ 성인문해교육 수요 집단

- 20세 이상 초등·중학수준 미만 저학력 성인
- 비문해자(19세 이상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거나 문장이해 능력이 거의 없는 성인)
- 반문해자(19세 이상 낱글자나 단어를 읽을 수 있으나 문장이해 능력은 거의 없는 성인)
-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결혼이민자, 한국국적취득자 등 외국인 주민

향후 추진계획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비 교부 : '17년 1월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17년 1월 ~ 12월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정산 : '17년 12월

기대효과

-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 활동 참여기회 확대

II-72.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성인·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지원

사업의 필요성

-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교재비 등) 지원을 통해 정규학력 미취득 성인·결혼이주민에게 학습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성인·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지원
- 위 치 : 서귀포오석학교
- 사 업 량 : 학력보완교육(주5회 / 10개월 / 50명)
- 사업기간 : '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3,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성인·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지원 보조금 교부 : '17년 1월
- 성인·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지원 사업 추진 : '17년 1월 ~ 12월
- 성인·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지원 사업 정산 : '17년 12월

기대효과

-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 향상 도모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II-73. 서귀포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사업의 필요성

- 지역평생학습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학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기관·단체에게는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배우고 나누고 참여하는 평생학습의 장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사 업 량 : 서귀포시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운영

- 사업기간 : '17년 9월 ~ 11월중(2일간)
- 총사업비 : 27,6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 서귀포시평생학습박람회 계획 수립 : '17년 8월중
- 2017 서귀포시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17년 9월 ~ 11월중

기대효과

- 평생학습 축제를 통한 배우고, 나누고, 참여하는 평생학습 문화 전파
- 평생교육 기관·단체·학습자들이 유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화 및 학습교류를 증진시키고, 시민들에게는 평생학습 동기부여 기회 제공

II-74.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내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생적 지역학습 공동체로서의 성장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교육부 공모 선정사업(3개년 지원) 연계

사업개요

- 건 명 :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행복학습센터 5개소)
- 사업기간 : '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3,000천원(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행복학습센터 정산 및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결과보고 : '17년 1월
- 면단위 행복학습센터 추가 확대 지정 관련 협의 : '17년 2월
- 2017년 행복학습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 수립 : '17년 3월
- 평생학습센터 매니저 채용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수요조사 : '17년 5월
- 행복학습센터별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추진 : '17년 6월 ~ 8월

기대효과

- 생활권내 근거리 학습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행복 증진
-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II-75.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급속한 사회변화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 위 치 :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서귀포시 서문로29번길 10)
- 사업량 : 5개 분야 · 116개 과목 · 217개 과정
- 사업기간 : '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6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분야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16. 12월
- 2017년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17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질적·양적 향상은 물론 시민의 자발적인 평생학습 참여 유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적 욕구해소 및 창업·재취업을 위한 학습기회 마련

II-76. 대학전공 탐색하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대학별 교육봉사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대학생활과 다양한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업시행 근거 : 진로교육법

사업개요

- 건 명 : 대학전공 탐색하기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학교
- 사업기간 : '17년 7월 ~ 8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대학전공 탐색하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17년 4월
- 프로그램 참여대학 모집 : '17년 5월
- 프로그램 운영 : '17년 7월 ~ 8월

기대효과

- 대학생들이 직접 대학생활과 전공 선택 등을 조언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학과) 탐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설계 동기 부여

II-77.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유도
-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이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

사업개요

- 대 상 : 청소년,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7년 1. ~ 2017년 12.

- 사업비 : 259,147천원
- 사업주관 : 제주도서관, 서귀포학생문화원, 한수폴도서관, 동녘도서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 주요내용
 - 제주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문화 함양을 위한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공공 도서관 활용을 통한 평생학습 불균형 해소에 기여

2016년도 추진실적

- 프로그램수 : 157개
- 참여인원 : 32,226명
- 예산집행액 : 221,119천원

2017년도 추진계획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1월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2017년 1월 ~ 12월
- 도서관별 자체 사업 평가 : 2017년 12월

II-78.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기회 제공

사업개요

- 대상 : 제주도민, 학부모, 교직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사업비 : 61,650천원
- 사업주관 : 제주학생문화원
- 주요내용
 - 평생교육강좌 운영
 - 평생교육동아리 운영
 - 평생교육프로그램 종합발표회

□ 2016년도 추진실적

- 평생교육강좌 운영 : 10개(각 15회)
 - 상반기 : 한국무용, 인문학글쓰기, 쿼트, 스케치, 오카리나
 - 하반기 : 한지공예, 갈천염색, 수채화, 스포츠댄스, 하모니카
- 평생교육동아리 운영 : 8개(각 25회)
 - 두드림난타, 사물놀이, 제주합창단, 예울림실용음악, 클라미띠에, 해피바이러스 밴드, 먹그림 문인화, 청소리 대금
- 평생교육프로그램 종합발표회 : 12월
- 참여인원 : 348명
- 예산 집행액 : 54,812천원

□ 2017년도 추진계획

- 평생교육강좌
 - 개설 강좌 선정 : 2회(2월, 8월)
 - 강사 모집 : 2회(2월, 8월)
 - 홍보 및 접수
 - 상반기 : 2017년 2. 20.(월) ~ 2. 23.(목)
 - 하반기 : 2017년 8. 14.(월) ~ 8. 17.(목)
 - 대 상 : 제주도민, 학부모, 교직원
 - 프로그램 운영
 - 상반기 : 3. 27.(월) ~ 7. 8.(토), 4개 강좌, 강좌별 15회(30시간) 운영
 - 하반기 : 8. 28.(월) ~ 12. 9.(토), 4개 강좌, 강좌별 15회(30시간) 운영
 - 발표회 : 2017년 7. 8.(토), 12. 9.(토)
- 평생교육동아리
 - 동아리 등록 : 2017년 2월
 - 대 상 : 제주도민, 학부모, 교직원
 - 평생교육동아리 운영 : 2017년 3. 6.(월) ~ 12. 9.(토)
 - 7개 동아리, 동아리별 25회(50시간) 운영
 - 8월 여름방학 기간 미 운영
 -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봉사활동 : 2회(7월, 11월)
 - 발표회 : 2017년 12. 9.(토)

II-79. 평생학습관 운영(제주도교육청)

사업의 필요성

- 지역의 특색을 살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사회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
-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의욕 고취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

사업개요

- 대 상 :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사업비 : 169,990천원
- 사업주관 : 제주교육박물관, 서귀포학생문화원, 한수폴도서관, 동녘도서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 주요내용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성인의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습동아리 활동 확대 및 지역문화 사랑방 역할 수행

2016년도 추진실적

- 프로그램수 : 75개
- 참여인원 : 10,179명
- 예산 집행액 : 155,240천원

2017년도 추진계획

- 학부모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6개 평생학습관, 연중 운영
-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 6개 평생학습관, 연중 운영

제 3 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III-1. 지방감사 아카데미 추진

사업의 필요성

- 지방감사 이론 및 실무 강좌에 대한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감사기구 간 상호 협력 및 감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추진

사업개요

- 건 명 : 지방감사아카데미 운영
- 사 업 량 : 지방감사아카데미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 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도 지방감사 아카데미 교육운영 계획 수립 : 2017년 1월
- 지방감사 아카데미 운영 : 2회(2017년 2월, 10월)

기대효과

- 맞춤형 전문 교육으로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지방감사 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감사기관과의 교류 확대

III-2. 노동교육상담소 직무능력 향상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전국지역상담소의 직원을 교육강사로 위촉, 지역별 노동 현안사항 공유를 통한 업무활성화
- 지역 근로자 대상으로 각종 생활법률 교육으로 서비스 향상
※ 사업시행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상담직무 능력향상 교육, 간부 워크숍 등

- 지원대상 :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 사업기간 : 2017년 7월 ~ 12월
- '17년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17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III-3.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사업의 필요성

- 취업시즌을 앞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명강사를 활용, 인문학, 경영학 등을 포함하는 직업교육 추진 및 멘토링으로 취업역량 강화
 - ※ 사업시행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철학, 문학, 과학/기술, 경영경제를 망라하는 전문가 수업 및 현장실습
 - 기획, 관리, 영업 분야별 기업실무 과제연습을 통한 종합적 업무능력 배양
 - 도내 중견 직장인 1:1 멘토그룹 형성하여 학습, 진로, 취업 상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17년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17년 1월)
- 2017년도 사업시행('17년 3월)

III-4. 제주형 인력양성과정 운영지원

사업의 필요성

-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현재 수요가 있음에도 국비과정이 개설되지 않고 있는 건설분야(미장,타일 등) 인력양성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제주형 인력양성과정 운영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제주형 인력양성과정 운영지원
(건설분야 인력양성과정(미장, 타일, 조적 등))
- 지원대상 : 인력양성과정 운영기관(공모)
- 사업기간 : '17년 1월 ~ 12월
- '17년 총사업비 : 20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인력양성과정 운영 계획 수립 : '17년 1월
- 사업자 공모 및 선정, 사업추진 : '17년 2월 ~

III-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역 내 기업의 인력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인력양성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선정·관리해 최종적으로 지역산업계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 취업으로 청년과 도민 취업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22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법시행령 제145조제3항제1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령 제52조제2항제4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 기업수요조사, 교육훈련기관선정, 맞춤형 인력양성, 취업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주체 : 제주상공회의소(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17년 총사업비 : 536,450천원(국가직접 436,450 자체재원 100,0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제주지역 인력양성계획 수립 : '16년 12월
- 2017년 인력양성교육 실시 : '17년 1월 ~

III-6.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 대학·기업·행정간의 협력체계 강화로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게 취업활로 개척 및 기업 맞춤형 고급 기술인력 양성 공급
※ 사업시행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8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모바일시스템 및 디바이스유지보수, 전기차 운영 및 정비실무, 외식산업전문가 등 성장유망 직종 인재양성 하여 취업연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대학교 졸업예정자(미취업 졸업자 포함)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17년 총사업비 : 69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침개정 및 사업 실시 : '17년 1월

III-7.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지역단위 비영리단체(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포럼, 연구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

※ 사업시행근거 :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55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모사업 신청 선정기관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17년 총사업비 : 1,530,000천원(국비 1,224,000 도비 306,0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도 정부예산 확정 후 특화, 연구, 포럼사업 및 프로젝트 사업 등 공모 추진
· 사업공모 : '17년 1월, 3월, 5월 / 사업추진 : '17년 1월 ~ 12월

III-8.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사업의 필요성

- 특성화고, 대학, 지역의 기능인들에 대한 양성지원을 강화하여 기술인이 대접 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과 제주의 숙련기술인 수준 향상
-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통해 도내 학생들이 숙련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이를 계기로 도내 우수 기능인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능인들의 경쟁력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숙련기술장려법 제5조, 제6조, 제20조, 시행령 제25조, 제33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내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및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 지원대상 : 한국산업인력공단제주지사

- 사업기간 : 2017년 1 ~ 2017년 12
- '17년 총사업비 : 10,40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대행협약서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17년 1월
- 숙련기술인 양성지원사업 추진 : '17년 1월 ~ 12월
-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개최 : '17년 9. 4. ~ 9. 11

III-9.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사업의 필요성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능력 제고 및 신속한 취업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신규실업자 177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17년 총사업비 : 306,000천원 (국비 306,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 모집 및 사업홍보 지속 : 2017년 1월
- 사업 참여자 신청접수 및 훈련상담 보조인력 2명 운영 : 2017년 1월

III-10.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를 필요로 하는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에 대한 시기 적합한 직업능력개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능력 제고 및 신속한 취업 지원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사업개요

- 사업량 : 내일배움카드제 홍보 및 상담 보조인력 운영(2명)
- 사업기간 : 2017년1월 ~ 12월
- '17년 총사업비 : 29,000천원(국비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내일배움카드카드제 상담 보조인력 채용 및 운영 : 2017년 1월

III-11.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최근 급변하는 관광산업에서 제주 관광의 질(質)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고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하여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신뢰 증진
- ※ 사업시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제34조

사업개요

- 건 명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지원
- 대 상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500여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1월
- 보조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 교육내용
 - 관광객 등에 대한 친절서비스 소양교육
 -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을 위한 외국어 기본 회화 교육
 - 안전운행 수칙 및 탑승객을 위한 안전운전 교육 등
- 사업비 : 2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70%,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교육 지원 사업계획 수립: 2017년 1월
-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교부: 2017년 2월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 실시(보조사업자): 2017년 3월 ~ 7월

-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등: 2017년 10월
- 교육 실시여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점검 등 행정지도 실시(연중)

기대효과

- 서비스 의식전환을 통한 고객 맞춤형 응대 서비스 향상
- 관광객 등 이용객에게 안전운행 및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이미지 개선

III-12. 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교통사고 예방 등 대중교통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들의 능력 함양이 요구됨에 따라 안전운전 체험교육 지원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운전 행태 개선으로 안전운전 의식 함양
- ※ 사업시행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

사업개요

- 건 명 : 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지원
- 대 상 : 버스 운수종사자 650여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1,5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70%,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지원 협의: 2017년 2월
-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교부: 2017년 3월
- 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체험 교육(보조사업자): 2017년 3월 ~ 6월중
- 운수종사자에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교육 점차 확대

기대효과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제고
- 관광객 및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III-13. 버스 운수종사자 위탁교육

사업의 필요성

- 운송사업자 주관으로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매년 시행되고 있으나 교육효과 미흡 등으로 버스 불친절 사례가 지속 증가
- 운수종사자 교육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교통관련 법규, 안전수칙, 친절 서비스 향상 등 내실있는 교육실시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34조

사업개요

- 건 명 : 버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 교육대상 : 650명(버스 운수종사자)
- 교육장소 :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 교육시간 : 신규교육 16시간, 보수교육 4시간, 수시교육 4시간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버스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계획 수립: 2016년 12월
- 버스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업무협약 및 추진 : 2017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운수종사자 교육 일원화를 통한 안전운행 및 친절서비스 개선 효과 증대

III-14.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 운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전세버스는 관광 및 통학버스 등 주로 단체이용객 수송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고예방이 최우선적으로 필요
- 전세버스 운전자 대상 현장 실습위주의 안전운전 체험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 실시를 통한 안전운행 유도로 이용객 안전확보 및 위험 대처능력 향상
※ 사업시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제34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운전 체험 교육 지원
- 대 상 : 전세버스 등 운전자 163명
- 보조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 교육시기 : 2017년 1월 ~ 11월
- 교육내용
 - 대형버스의 자동차 특성 이해 및 운행시 유의사항
 - 도로환경별 주행코스 운행 실습 등 안전운행 요령 교육 등
- 총사업비 : 10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70%, 자부담 30%)

□ 향후 추진계획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 및 체험 교육 지원 사업계획 수립: 2017년 1월
-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교부: 2017년 2월
- 일정별 안전 및 체험교육 실시(보조사업자): 2017년 2월 ~ 9월
-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등: 2017년 11월

□ 기대효과

- 체험 및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으로 관광객 등 이용객 안전확보, 안전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

III-15.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및 서비스 역량강화

□ 사업의 필요성

- 항공노선 확대 및 대형크루즈 입항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선진지 서비스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 및 친절 마인드 향상 필요
- 선진지의 교통안전문화 연수를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직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고품격 관광서비스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4조

사업개요

- 건 명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및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 사 업 량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5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1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50%, 자부담 50%)

향후 추진계획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사업계획 수립: 2017년 1월
-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교부: 2017년 2월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보조사업자): 2017년 3월 ~ 4월중
-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등: 2017년 5월

기대효과

-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의식 함양 및 운수종사자 전문적 역량강화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제주 관광이미지 제고

III-16.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

사업의 필요성

-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현장 실습위주의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위험 대처능력 향상으로 관광객 안전 확보 및 국제적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조례」 제2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운수종사자 30명)
- 교육시기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지원방법 : 교육(연수)비 70% 지원
- 교육장소 :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센터 교육(경북 상주)
- 교육내용
 - 자동차 특성 이해 및 운행시 유의사항
 - 도로환경별 주행코스 운행실습 등 안전운행 요령 교육
 - 친절서비스 소양교육

- 총사업비 : 15,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70% ,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점차적으로 확대추진

기대효과

- 체험교육 실시로 교통사고 줄이기 효과가 발생되어 국제적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

III-17. 화물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

사업의 필요성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대상 현장실습 위주의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운행 습관 조성 및 위험회피 능력 향상으로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개요

- 건 명 : 화물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사 업 량 : 화물 운수종사자 5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70%,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 2017년 4월 중
- 안전운전체험교육 시행 : 2017년 5월 중
- 교육성과 및 만족도 분석 후 안전운전 체험교육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

기대효과

- 실제 도로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 화물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

III-18. 자동차 정비업체 정비요원 전기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정비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으로 교통사고 예방
- 자동차정비업체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기자동차 정비 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개요

- 건 명 : 자동차 정비업체 정비요원 전기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사업량 : 도내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및 정비 종사원 200명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55,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전기자동차 정비 위탁 교육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 '17년 1월 ~ 2월
- 전기자동차 정비교육 추진 : '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의 자생력 강화 및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정비수요 사전대응으로 전기자동차 운행에 따른 불안감 해소
-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으로 탄소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관광지 위상 제고

III-19. 택시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신규·보수교육을 위탁 시행하여 도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제공
- 택시 운송질서 확립, 안전운행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한 제주관광 이미지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사업개요

- 건 명 : 택시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지원
- 교육대상 : 택시운수종사자 950명 (신규 250명, 보수 700명)
- 교육장소 :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 교육시간 : 신규교육 16시간, 보수교육 4시간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2월 : 2017년 보수교육 대상 명단 확정
- 2017년 1월 : 2017년 택시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교육 위·수탁 협약
- 2017년 1월 ~ 12월 : 2017년 신규 및 보수교육 추진

기대효과

- 도내 택시의 운송질서 확립, 안전운행 및 이용서비스 개선 효과 증대

III-20. 화물 운수종사자 위탁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타 시·도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교통연수원을 설치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연수기관이 없어 교육기회 부족 및 교육여건 열악
-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안전운행 의식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
 - ※ 사업시행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9조,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사업개요

- 건 명 : 화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지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사업량 : 도내 화물 운수종사자 약 1,500명
- 사업기간 : 2017년 2월 ~ 2017년 11월
- 총사업비 : 88,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16년 12월 : 교통안전공단과 위·수탁협약 체결
- '17년 1월 : 연간 교육계획 수립
- '17년 2월 ~ 11월 : 화물 운수종사자 대상 교육 시행

기대효과

- 화물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제고
-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기여

III-21. 마을지원 전문가 교육

사업의 필요성

- 마을발전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타 중앙단위 행사 참여로 마을사업에 대한 시야 확대와 마을관련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로 마을발전사업의 질 향상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마을지원 전문가 교육 및 행사 참가 보상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 업 량 : 마을 리더 및 지역 주민 등 중앙단위 행사 등 참여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지원 계획 수립 : 2017년 1월
- 교육(포럼), 행사 참가 지원 : 2017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선진지 마을사업 행사 및 교육을 통한 도내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기여

III-22.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정착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 등 독특한 제주문화에 익숙지 않아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경제활동 등 정착화 과정에 어려움을 호소
- 제주문화를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지역주민과 정착주민 간의 심리적 괴리감 등을 해소

사업개요

- 건 명 :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량 : 4개 읍면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읍면 대상 의견수렴 : '17년 1월
-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 '17년 2월
- 읍면 정착주민 대상 제주이해 프로그램 운영 : '17년 3월 ~ 5월

기대효과

- 제주문화 이해를 통한 정착주민 안정적 정착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강화

III-23.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상생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안정적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제4조(지원 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기간 : 2017년 2월 ~12월
- 사업량 : 160명
- 사업자 : 도내 귀농귀촌교육 가능 단체
- 총사업비 : 33,000천원(자체재원 90%, 자부담 10%)
- 사업대상 : 도내 예비 귀농인
- 사업내용 :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비, 임대료 등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17년 2월
- 상·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 : '17년 4월 ~ 9월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정산 : '17년 5월 ~ 12월

기대효과

- 귀농가족의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 적응 교육 실시로 조기 정착에 기여
-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인 자립기반 기틀 마련
- 농촌인구 유입으로 농촌 고령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III-24. 미래후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4-H이념교육으로 농심 배양 및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
- 학교4-H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사 대상 교육, 4-H 이념확산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지원조례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미래후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교육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량 : 20회 1,0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6,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4-H지도교사 현장교육 : 1회 30명
- 4-H연합회 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지도 : 2회

기대효과

- 청소년 4-H이념교육으로 농심 배양 및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기여
- 학교4-H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사 대상 교육, 4-H 이념 확산 기여

III-25. 여성농업인 제주농업발전 교육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제주농업을 이끌어가는 여성 지도자로서의 정보공유 및 전문적인 능력향상으로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자로 육성
- 농촌 문화와 농업경영개선을 접목한 교육운영으로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캠페인 전개로 농촌의 활력과 지역경제의 발전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 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 11조
- ②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농업인 제주농업발전 활동지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업량 : 1개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70%,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지역 농산물과 농촌자원 활용 제주지역 생산제품 소비확대 캠페인 지속 추진

- 농촌문화의 주체자는 물론 지역사회 여성농업인 권위향상 및 지도자로 양성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자긍심 고취로 농촌 삶의 질 향상

III-26.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농촌교육농장, 농가소규모 수제품사업장 등 제주농업의 6차산업 사업장의 주체로 제주농업의 다원적 가치 제고 및 공동브랜드 「수다뜰」 활성화
- 농촌 자원 발굴과 소비층에 걸맞은 우리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수요창출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제 14조

사업개요

- 건 명 :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사업량 : 10회 3,0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7,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100%)

향후 추진계획

-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2,3차인 가공, 체험, 유통, 판매 중심의 일관시스템 구축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직거래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 조성

기대효과

- 농촌체험을 통한 지속적인 농업 농촌의 가치 인식과 농업 이외의 소득원 창출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
- 농가 소득원으로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시 오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III-27. 원예치료사 양성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실버산업의 최적지로 부각되면서 원예치료에 대한 관심 고조
- 원예생활과 기술교육을 통한 원예치료사 전문인력 양성으로 고령화 시대 복지 농촌 구현

사업개요

- 건 명 : 원예치료사 양성과정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개과정 70명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원예치료사 양성과정 운영계획 수립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강사 초청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원예활동을 통한 대체의학의 발굴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 농업의 새로운 영역 개발로 미래 제주농업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

III-28.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친환경농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용적 활용방안을 모색
- 친환경농업 전문가 육성을 통한 청정 제주농업 이미지 제고

사업개요

- 건 명 :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 사 업 량 : 1개소 50명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계획 수립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커리큘럼 마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교육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III-29. 농업인단체 현장 시찰 및 교육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단체의 의식교육으로 제주농업의 방향성 제시 및 농정시책 동반자 양성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할 지역 선도 농업인단체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지원조례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지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량 : 9개회 13개 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4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70%,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제주 농업 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기대효과

- 농업인단체의 의식교육으로 제주농업의 방향성 제시 및 농정시책 동반자 양성 기여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할 품격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 기여

III-30. 취약계층을 위한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식물 및 원예활동을 매체로 한 정신적, 육체적 재활을 실행할 수 있는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및 화훼류의 소비촉진에 기여

사업개요

- 건 명 : 취약계층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3,3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90%, 자부담 1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원예치료 프로그램 보조사업 운영 계획 수립 : 2017년 1월
- 보조금 교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연중

기대효과

-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에게 원예치료 프로그램 실시로 원예활동의 공익성과 효과성 인식 제고

III-31. 제주 여성CEO 경영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여성경제인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 경영애로사항해소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여성기업 역량 강화 및 경영안정화 제고
- 제주 여성 기업 CEO 포럼 및 경영연수를 통해 여성기업 경제적 자립과 경쟁력 강화 등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4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제주 여성 CEO 포럼 및 경영 연수 개최
- 지원대상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9월(포럼 및 경영연수 : 2박 3일)
- '17년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재원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주 여성 CEO 포럼 및 경영 연수 사업계획 수립 : '17년 1월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17년 2월
- 사업추진 : '17년 2월 ~ 12월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18년 1월

III-32.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의 필요성

-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청년 무역 전문 인력 양성
으로 무역인프라 구축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3

사업개요

- 운영기관 : 제주대학교(GTEP*사업단)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위탁) 한국무역협회, (운영) 제주대학교
- 교육기간 : 2017년 1월 ~ 12월
- 교육대상 : 제주대학교 2~4학년 재학생
- 주요내용 : FTA 및 무역 전문교육, 무역관련 자격증 취득 및 외국어 강좌 지원,
국내외 현장실습, 전시박람회 참가 등
- '17년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재원 100%)
※ 사업비 부담비율 : 국 118백만원(한국무역협회에서 직접 제주대학교 지원),
자체 30백만원, 제주대학교 3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사업 정산 및 평가 : '17년 1월
- 2017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17년 2월

III-33.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청년일자리 부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여건의 도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지역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인재 수급에 부합하기 위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현장 맞춤형 기술 인력으로 육성,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및 청년 실업난 해소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사업개요

- 건 명 :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
- 시행기관 :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 사업량 : 5개교 25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사업시행 최초년도 : 2011년)
- '17년 총사업비 : 270,000천원(자체재원 150,000천원, 교육청 1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기업-특성화고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성과보고회 : '17년 2월
- 인력양성프로그램 사업설명회 및 참여학교 신청·접수 : '17년 3월
-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고 선정 : '17년 4월
-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채용협약 등 사업 추진 : '17년 4월~12월

III-34.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특성화고-전문대-기업이 연계한 맞춤형 인재 체계적 육성,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시 기업이 원하는 고용시장 불균형 문제점 해소
- 제주관광대학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지원대상자로 선정,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사업개요

- 건 명 :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지원
- 시행기관 : 제주관광대학교(기술사관육성사업단)
- 사업량 : 관광대(메카트로닉스과) 및 한림공고 재학생 130여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17년 총사업비 : 569,000천원
(국가직접 404,000천원, 자체재원 80,000천원, 기타 8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기술사관 육성사업 8차년도 사업 과정 수료자(관광대, 2학년) 기술 인력 취업
- 특성화고 졸업자 대학 입학 기술인력 양성 심화교육 : 관광대(2년간)
- 중소기업과 연계 협력 창의적 사고와 다기능 기술인재 양성 지속 추진

III-35.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장애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단체에서 직장체험 연수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연수기관 :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사업량 : 동계 및 하계방학 취업연수(연 2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장애학생 '17년 동계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수립

기대효과

- 일반인보다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학생들에게 직업탐색 및 취업현장 체험기회 제공

III-36. 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 보급

사업의 필요성

- 경로당회원 중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을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경로당 등에서 강사로 자원봉사 활동으로 프로그램 보급
- ※사업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항

사업개요

- 건 명 : 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 보급
- 사업량 : 60명 (프로그램 보급요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경로당광역지원센터)
- 총사업비 : 30,000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1경로당 1강사양성 교육 및 강사 활동 추진

기대효과

- 재능을 기부하는 강사 어르신의 자원봉사를 통한 성취감 고취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III-37.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장애 당사자의 예술적 잠재력과 소통능력을 인큐베이팅하고, 문화예술과 접목한 발달장애인의 대안적 교육시스템 도입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① 장애인복지법 제63조
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사업개요

- 건 명 :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수행기관 공모(단체 및 복지관 등)
- 대 상 자 : 성인 발달장애인
- 총사업비 : 31,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발달장애 예술교육 조력자 그룹 지속 확장 및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진행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III-38. 자폐성 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자폐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①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②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자폐성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공모 후 수행기관 선정
- 총사업비 : 4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자폐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

기대효과

- 자폐성장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사회 참여 및 삶의 질 제고

III-39.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과 단체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대응방안과 자립능력 배양
 - ※ 사업시행 근거
 - ①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②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12월
- 수행주체 : 공모 후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
- 총사업비 : 41,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사회적응력 강화 및 종사자의 역량을 높힐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장애인 및 단체종사자의 역량교육을 통해 자립능력을 배양 및 역량강화

III-4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 전담 케어 부담 해소 및 평생학습기회 보장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보장 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 ②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공모 후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

향후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보장 및 가족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사업으로 추진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돌봄 체계 구축

III-41. 안마사 교육사업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 재활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 2

사업개요

- 건 명 : 안마사 교육사업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사)대한안마사협회 제주지부(지부장 김두홍)
- 총사업비 : 9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재활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사업운영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III-42.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사업의 필요성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계약으로 역량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 대 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도내 등록 여성장애인 현황('16. 11월말) - 15,424명(제주시 10,579 / 서귀포시 4,845)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2개소(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
- 총사업비 : 118,250천원(국비 82,775 도비 35,475)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30%

향후 추진계획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추진 및 평가 실시

기대효과

- 여성장애인의 자기계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

III-43.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사업의 필요성

-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등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등 맞춤형 복지시책 필요

※ 사업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항

사업개요

- 건 명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 사업량 : 경로당별 월 1~3개 → 월 2~4개로 확대 보급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경로당광역지원센터)
- 총사업비 : 12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실태 및 설문조사(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통한 프로그램 보급 경로당 선정 및 추진

기대효과

-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III-44.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육 사업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장애아동이 언어·심리 및 특수 조기교육을 원하고 있으나 치료교사 및 공간의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대기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①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②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육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외 4개소
- 총사업비 : 220,64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장애에 대한 고착화 지연 유도를 위한 조기 특수교육 지원사업 지속적 추진

기대효과

- 정서·행동언어 및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동의 자기표현 및 문제해결 능력 증진

III-45.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 상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계속 교육(훈련)을 통한 평생교육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돌봄 체계 구축

※ 사업시행 근거

-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3조
- ② 도지사 공약사항

사업개요

- 건 명 :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8,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구체적인 계획 수립

기대효과

-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의 계속 교육(훈련)을 통한 평생교육 기반마련

III-46.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의 필요성

- 특색있는 문화행사로 문화예술의 대중적 접근기회 제공
- 독특한 문화예술 기획행사로 문화예술의 관광자원화
- 전시와 관련된 체험해이사를 추진, 대중과 예술이 소통기회 마련

사업개요

- 건 명 :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5
- 사 업 량 : 음악회, 아트캠프, 투어버스, 생태미술관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특색있는 문화예술 체험행사에 따른 계획 수립 : 2016년 11월 중
- 문화예술 체험 행사 개최 : 2017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특색있는 문화행사로 문화예술의 대중적 접근기회 제공
- 독특한 문화예술 기획행사로 문화예술의 관광자원화
-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기획으로 미술관 홍보마케팅 강화

III-47.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의 농기계 조작 및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경비
- 농기계 사용요령 교육으로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사업개요

- 건 명 : 농기계 안전교육

- 위 치 : 동부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5월, 10월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추진
- 4월, 9월 신청안내 및 홍보

기대효과

-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및 경영비 절감
- 적기영농실천 및 계획적인 농업경영으로 농가소득 향상

III-48.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기술교육

사업의 필요성

- 신규 농업인 및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기술교육
- 위 치 :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우도면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교육

기대효과

-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수준별 교육을 통한 영농정착에 도움

-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으로 활력 있는 농촌건설

III-4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동부)

사업의 필요성

- 신규농업인 및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위 치 :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우도면
- 사업량 : 9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4,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III-50. 농기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동부)

사업의 필요성

- 2012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농가들의 요구사항에 의하여 농기계 임대장비 교육과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농기계교육장 및 시설장비 유지로 대농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사업개요

- 건 명 : 농기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
- 위 치 : 동부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비수리를 신속하게 하여 농업인 서비스 강화
- 적기 영농실천 및 임대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효과

- 적기 영농실천에 따른 농업인의 신뢰도 증가 및 농가 소득 향상
- 효과적인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도모

III-51. 농업인교육용 기자재 구입(동부)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으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및 확대
- 쾌적한 농업인교육 기반조성을 통한 농업인교육 질 향상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교육용 기자재 구입
- 위 치 :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구좌읍 세화리)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4,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농업인교육관 기자재 구입
-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 : 연 2,000명

기대효과

- 신규농업인 영농기초 교육, 전문교육 등 농업인 교육확대로 서비스 향상
-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으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및 소득증대 기여

III-52. 농기계 안전교육 장비구입

사업의 필요성

-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농가 교육용 장비 구입
- 농기계 사용요령 교육으로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사업개요

- 건 명 : 농기계 안전교육용 장비구입
- 위 치 : 동부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굴삭기 4대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인 서비스 질 향상

기대효과

- 농기계 자가 운영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경영비절감으로 농가 소득 향상

III-53.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의 농기계 조작 및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경비
- 농기계 사용요령 교육으로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사업개요

- 건 명 : 농기계 안전교육
- 위 치 : 동부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5월, 10월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추진
- 4월, 9월 신청안내 및 홍보

기대효과

-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및 경영비 절감
- 적기영농실천 및 계획적인 농업경영으로 농가소득 향상

III-54.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에게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도시미관, 안전 등의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광고사업 종사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 학습과 토론을 통한 건전한 광고문화 발전방향 모색
- ※ 사업시행 근거 :
-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 ②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4조

사업개요

- 건 명 :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 위 치 : 제주도내 일원
- 사 업 량 :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 수립: '16년 11월
- 2017년 간판디자인학교 운영계획 수립: '17년 3월

기대효과

- 옥외광고사업종사자 자질향상으로 도시미관 향상
- 옥외광고물 표시방법(디자인, 색채, 안전 등) 교육으로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

III-55. 마을미디어 스토리텔링 영상콘텐츠 제작 및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최근 전국적으로 마을 단위 미디어(마을 라디오 방송국 등)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제작 기술 및 장비 부재 등으로 쉽게 접근을 못하는 상황임
- 이에 방송 제작 기술 및 장비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별로 특색 있는 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사업개요

- 건 명 : 마을미디어 스토리텔링 영상콘텐츠 제작 및 교육
- 사업주체 :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
- 위 치 : 도 일원
- 사업량 : 영상 콘텐츠 제작(공모), 일반인 및 학교 대상 미디어교육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영상콘텐츠제작 지원공모 시행 : 2017년 3월~4월
- 마을미디어 교육 지원교육(1~5차시) : 3월
- 영상콘텐츠제작 지원공모 심사 : 2017년 4월
- 영상콘텐츠제작 지원 : 2017년 5월 ~ 11월
- 마을미디어 교육 지원교육(6~10차시) : 9월
-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 연중

기대효과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드는 지역 매체를 통하여 소통 활성화
- 지역의 문화다양성과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마을민주주의 실현

III-56. 창의마당·생태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가족이 함께 하는 토요일 학교 밖 체험 활동으로 생활과학, 자연생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의력과 인성교육을 높여주고자 함

※ 사업시행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사업개요

- 건 명 : 창의마당·생태교실 운영
- 위 치 : 제주도 삼성로 40 (일도2동) 민속자연사박물관
- 사업량 : 연10회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1월
- 총사업비 : 13,634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박물관적 요소를 벗어나 과학, 미술, 음악, 마술, 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복합하여 점차 확대 운영하고자 함

기대효과

- 토요일체험프로그램 개설로 어린이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박물관 이미지 제고
- 학교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자연생태, 과학 등의 교육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 증진

III-57. 역사기행교실

사업의 필요성

-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역사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 역사 교육이 필요
- 문화 소외지역 초등학생들에게 특성화된 창의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박물관 관람문화 학습 및 전시실 관람, 박물관에 대한 문화체험 학습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사업개요

- 건 명 : 역사기행교실
- 위 치 :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2동) 민속자연사박물관
- 사 업 량 : 역사기행 10회
-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1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체험형 창의학습'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
- 매년 초등학교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할 제주지역 역사와 관련된 테마를 선정하여 주제에 맞는 명승·고적 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기대효과

- 체험형 창의학습 프로그램 개설로 어린이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박물관 이미지 제고
- 학교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제주지역 역사 등의 교육으로 제주지역 향토에 고취

III-58. 교육용 자동화 재탐지설비 시스템 구입

사업의 필요성

- 자유학기제 추진관련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체험세트 구입
 - ※ (’13. 6. 11.국무회의) “각 부처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체험 인프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협력”
- 후속조치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사업개요

- 건 명 : 교육용 자탐설비 구입
- 사 업 량 : 교육용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스템 구입 26set
- 사업기간 : 2017년
- 총사업비 : 39,000천원

기대효과

- 소방관의 진로탐색과 직업체험을 통해 학생 스스로 안전을 익히며, 나아가 타인의 안전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미래 소방관을 육성

III-59.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 위탁

사업의 필요성

- 소방업무와 관련된 전문자격취득 기회로 전문의용소방대원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재능기부 등 의용소방대 활동 영역 확대

사업개요

- 건 명 :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 위탁
- 사 업 량 : 136명 전문교육 위탁(68개대 대별 2명)
- 사업기간 : 2017년
- 총사업비 : 13,600천원

기대효과

- 의용소방대의 활동영역을 재난현장 단순 보조 역할에서 전문기술 지원영역으로 확대 민간 재난예방 중심조직으로 육성

III-60.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사업

사업의 필요성

-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이해증진 및 오·남용 방지를 통한 건전사회 육성 도모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사업
- 위 치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사 업 량 : 5,000명(아동, 청소년)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6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속 추진

기대효과

- 약물 정보의 올바른 이해, 상담 및 예방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분위기 마련

III-61.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물품 구입

사업의 필요성

-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따른 운영물품을 구입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건 명 :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물품 구입
- 사업량 : 심폐소생술 교육 시 감염방지 및 실습용 소모품 구입
- 사업기간 : 2017년
- 총사업비 : 15,110천원

기대효과

- 실습위주의 교육 운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인 대처능력 향상

III-62. 응급의료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실 전담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 ※ 사업시행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사 업 량 : 도내 응급의료기관 5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69,000천원(기금 100%)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기대효과

- 응급실 전담인력의 안정적인 인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응급실 인력의 전문화

III-63. 회원 만남의 날 안보교육 지원 사업

사업의 필요성

-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배양하고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의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 ※ 사업시행 근거
 - ①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②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사 업 량 : 회원 만남의 날 행사 1식(회원 200여명)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0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보훈시책 홍보 및 회원단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음

III-64. 나라사랑 안보교육

사업의 필요성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 및 국가관과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워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업시행 근거 :

- 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 ②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사업량 : 나라사랑 안보교육(30회) 및 안보결의대회
- 사업기간 : 2017년 5월 ~ 11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나라에 대한 애국애향심 고취

III-65.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최근 남북관계 현안을 파악하고 호국안보의식을 함양하며, 이를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나라사랑시민 육성
- 지역사회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와 호국안보의지 확산을 위하여 각 지역, 대상 별로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 실시

※ 사업시행 근거 :

-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 ②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

사업개요

- 사업량 : 나라사랑 체험한마당 행사 1식 및 나라사랑 교육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 효과

- 현장학습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 각인 시키는 한편 남북 관계의 이해 및 자라나는 세대 호국안보 고취
- 호국 안보의식 저변확대와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 하는 기회 제공
- 답사를 통한 나라사랑정신 함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확산

III-66.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선도인력 대상으로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복지리더를 육성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 인적 안전망으로서 중추적 역할수행
- ※ 사업시행 근거 : 도 사회복지기본조례 제17조(협의체 운영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2월 ~ 7월
- 사업량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선도그룹 위원 120명
- 총사업비 : 15,000천원 (자체재원 100%)
- 추진방법 : 도내 대학교에 위탁 교육
- 사업내용 : 사회복지의 이해, 클라이언트를 위한 대화기법 강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법, 지역협의체위원 역할 정립

기대효과

- 복지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로 지역복지 문제해결에 선도적 역할 수행
- 복지대상에게 민·관 협업 서비스 활성화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III-67.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초기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고 부모 자녀간, 부부간의 상호 올바른 관계형성을 이루기 위한 교육으로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

※ 사업시행 근거 :

-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②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3조

사업개요

- 건 명 :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0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예비부모 교육 활성화로 행복하고 당당한 부모 되기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속 지원

기대효과

- 부모의 육아 편의 기회 제공으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 장려 및 함께 하는 보육 문화 조성

III-68.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자라나는 세대의 올바른 나눔 가치관을 함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나눔교육 추진으로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 도모

※ 사업시행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 및 제33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주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고승화)
- 총사업비 : 총 30,000천원(자체재원 100%)
- 사업내용 : 희망나눔 교육사업 운영

기대효과

- 자라나는 세대의 올바른 나눔 가치관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통하여 나눔 문화 확산 도모

III-69.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을 통한 전문성 유지로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복지 질적 수준 제고
- ※ 사업시행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제42조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임태봉)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9,000천원(자체재원 100%)
- 사업내용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법정지정교육 및 특별교육 등

기대효과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법정지정교육, 특별교육)을 통한 우수 사회복지 인력 양성 및 직무의 전문성 강화

III-70.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사회복지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성향상, 실무능력제고, 다변화시대의 복지적 대응력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 ※ 사업시행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제42조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임태봉)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9,000천원(자체재원 100%)
- 사업내용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복지아카데미 등 사업 추진

기대효과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

III-71. 도민학습교육

사업의 필요성

-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걸 맞는 다양한 도민학습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 소양 함양과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개요

- 건 명 : 도민학습교육 강사수당
- 사 업 량 : 도민전문역량강화과정 등 19개 과정
- 사업기간 : 2017년 2월 ~ 2017년 11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2월 중 : 2017년 도민사회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1월 ~ 12월 :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실시

기대효과

- 도민 맞춤형 교육 및 교육환경에 걸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도민 전문역량 강화 및 소양 함양으로 도민 개인능력 향상 도모

III-72. 제주리더스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특별자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지역사회리더 양성에 기여
- 새로운 국내외 정보 습득과 제주의 현안 문제 등 토론과 과제 해결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인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리더스아카데미 운영
- 사 업 량 : 1개 과정 · 60명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2월 : 제주리더스 아카데미 계획 수립 및 시행
- 2017년 3월 ~ 12월 : 제주리더스 아카데미 추진

기대효과

- 새로운 국내외 정보 습득과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제주지역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III-73. 도민친절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순회교육

사업의 필요성

- 친절강사에 의한 듣는 교육에서 콘서트를 통한 보는 교육으로 전환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 교통 및 쓰레기 등 제주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려 제주의 문제점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사업개요

- 건 명 : 도민친절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순회교육
- 사 업 량 : 교육 콘텐츠 1건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
- 추진방법 : 위탁교육
- 총사업비 : 60,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2월 : 2017년 도민사회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1월 : 콘텐츠 위탁계약 체결
- 2017년 2월 ~ 12월 : 콘텐츠 개발 및 순회교육

기대효과

- 주입식 교육을 탈피한 참여형 교육으로 교육 분위기 조성에 기여
- 교육환경 변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수혜자의 기대에 부응

III-74. 귀농영농정착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신규농업인(귀농, 귀촌인)에게 농촌생활적응 및 영농기초기술교육으로 농업 ·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성공적인 농촌정착 유도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귀농영농정착 교육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5회 1,2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 2017년 2월
- 귀농인 대상 감귤 기초과정 프로그램 운영 : 2017년 2월 ~ 10월

기대효과

- 신규농업인 대상 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운영으로 성공적 영농정착 유도
- 영농단계별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및 농촌의 활력화 도모

III-75. 농업인단체 교육 활동지원(서귀포)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단체 농업경쟁력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핵심지도자로 육성
- 농업·농촌의 기능적 가치 홍보 및 확산 활동 전개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단체 교육 활동지원
- 사업대상 : 농업인단체(농촌지도자)
- 사 업 량 : 1개회
- 사업기간 : 2017년 1 ~ 12월
- 총사업비 : 14,4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70%,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세부 일정 및 세부 계획 수립 : 2017년 2월
- 단체별 교육 및 행사 추진 : 2017년 3월 이 후

기대효과

- 농업·농촌의 핵심지도자로 육성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

III-76. 초중등교사대상 농업·농촌 직무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초·중등교사의 농업·농촌의 이해 및 중요성 인지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 심리제고 촉진
- 교육계의 농업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교사 직무교육 개설 확산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초중등교사대상 농업·농촌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3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접수 : 2017년 1월 ~ 2월
- 농업·농촌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7년 2월 ~ 10월

기대효과

- 초·중등교사의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 인식제고 및 농업 활용계층 다양화
- 농업관련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계의 농업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확산

III-77. 귀농현장실습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자 및 귀농희망자에게 지역 선도농업인 연계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과 단계별 영농현장실습을 통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귀농현장실습교육 지원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관할지역내
- 사업량 : 귀농 영농현장 실습지원 18명(선도농가 9명, 실습생9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4,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사업계획 수립 : 2017년 1월 ~ 2월
- 귀농인 영농현장 실습 지원 사업 실시 : 9팀, 2017년 4월 ~ 11월
- 연수생과 선도농가 네트워크 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자율 모임체 운영 지도

기대효과

-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 등 농장에서 현장실습교육 지원으로 영농분야 등에 대한 기술습득, 정착 과정 상담·멘토 등 지원을 통한 농촌지역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III-78. 농촌교육농장 육성(서귀포)

사업의 필요성

- 농촌자원을 교과과정과 연계,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 16조

사업개요

- 건 명 : 농촌교육농장 육성
- 위 치 : 서귀포시 동지역, 남원읍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6,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35%, 도비 35%,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2017년 1월
- 대상자선정 및 사업추진 : 2017년 2월 ~ 11월

기대효과

- 농촌자원을 교육적 관점에서 활용함으로써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제고
- 농업·농촌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III-79. 농기계 교육 장비구입

사업의 필요성

- 농기계 사용기술 및 경정비, 안전사용 등의 실기교육으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
- 신기종 농기계 확보로 농업인 기계이용 기술 보급 및 교육 내실화 기여

사업개요

- 건 명 : 농기계 교육 장비 구입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교육용 장비구입 6대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농기계 사용 및 자가정비 수리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이용기술교육 추진
- 농기계 교육장비 구입 : 2017년 3~5월

기대효과

- 농기계 안전사용 실기교육으로 농기계 사용 증대
-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습득 및 교육내실 향상

III-8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기술교육
- 위 치 :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 사 업 량 : 9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4,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현장실습교육 참여 귀농인 사후관리 및 현지지도

기대효과

- 체계적인 농업기술 습득 희망자에 대한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 제공
- 단계별 현장실습을 통한 성공적인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III-81. 서부 농촌교육농장 육성(서부)

사업의 필요성

- 농촌에서 발굴한 유무형 자원을 학교 체험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 증대
- 청소년에게 농촌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의 농업·농촌의 역할 및 이해증진 필요

사업개요

- 건 명 : 농촌교육농장 육성
- 위 치 :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6,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35%, 도 35%, 자담 30%)
- 사업내용 : 농촌체험 교육장비 및 기자재 구입, 프로그램 개발 등

향후 추진계획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속적 개발
-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홍보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III-82.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서부)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기술교육
- 위 치 :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 사 업 량 : 9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4,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현재까지 추진상황

- 귀농·귀촌인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 5개월, 4명

향후 추진계획

- 현장실습교육 참여 귀농인 사후관리 및 현지지도

기대효과

- 체계적인 농업기술 습득 희망자에 대한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 제공
- 단계별 현장실습을 통한 성공적인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III-83.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서부)

사업의 필요성

- 신기종 농기계 확보로 농업인 최신 기술 습득 및 교육 내실화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사업개요

- 건 명 :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구입
- 위 치 :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서부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12대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4,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16년 구입 기종 하반기 교육 및 임대 활용

기대효과

- 구입 기종 교육 활용으로 최신 기술 습득 및 교육 내실 기여

III-84.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여성을 지역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의 자존감 고취 및 미래제주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인재 육성
- 생활체감형 교육을 통한 제주여성의 정체성 확립으로 지역사회 변화 주체로서 여성인재의 체계적 양성

사업개요

- 사업량 : 도내여성 200여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6,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멤버십 심화교육생 대상 정보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2016년 여성멤버십 교육운영 평가 및 2017년 교육계획 수립

기대효과

- 제주미래를 견인해 나갈 지역의 여성리더 발굴 및 체계적인 양성기반 구축으로 미래제주의 지속성장을 위한 여성인재 양성

III-85. 제주여성 멤버십 워크숍

사업의 필요성

- 제주여성을 지역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의 자존감 고취 및 미래제주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인재 육성
- 생활체감형 교육을 통한 제주여성의 정체성 확립으로 지역사회 변화 주체로서 여성인재의 체계적 양성

사업개요

- 사업량 : 도내여성 80여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멤버십 심화교육생 대상 정보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2016년 여성멤버십 교육운영 평가 및 2017년 교육계획 수립

기대효과

- 제주미래를 견인해 나갈 지역의 여성리더 발굴 및 체계적인 양성기반 구축으로 미래제주의 지속성장을 위한 여성인재 양성

III-86. 여성전문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교육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소통 공간 형성으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여성의 숨은 재능을 재발견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 운영으로 도민의 만족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사업개요

- 사업량 : 70여개 과정·2,000여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9,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교육관련 기관 간 상호보완 및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위한 워크숍
- 2016년 여성전문 교육운영 평가 및 2017년 계획 수립

기대효과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으로 여성의 자아실현 및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

III-8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야간·주말 운영지원

사업의 필요성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BTL)에 따른 임대료(정부지급금) 지급
※ 사업시행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 및
제주종합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 협약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2월 ~ 2029. 11월(15년)
- 총사업비 : 1,622,544천원

향후 추진계획

- 시설관리운영 성과평가 위원회 개최 : 분기별 1회
- 관리운영 수준 확인 시정조치 및 개선 : 매월
- 시설관리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임대료 지급
- 야간·주말교육 계획 수립('16년 12월)

기대효과

-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으로 도민의 교육·문화욕구 충족

III-88. 고압가스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반 위탁교육비

사업의 필요성

- 현장활동용 공기충전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전관리자 위탁교육비
※ 사업시행 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12조

사업개요

- 건 명 : 고압가스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반 위탁교육
- 사 업 량 : 소방공무원 13명 위탁교육
- 사업기간 : 2017년
- 총사업비 : 11,778천원

기대효과

- 현장활동용 공기충전기의 체계적 관리로 현장활동 직원 건강관리 강화

III-89.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물품 구입

사업의 필요성

-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따른 운영물품을 구입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건 명 :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물품 구입
- 사 업 량 : 심폐소생술 교육 시 감염방지 및 실습용 소모품 구입
- 사업기간 : 2017년
- 총사업비 : 15,110천원

기대효과

- 실습위주의 교육 운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인 대처능력 향상

III-90. 수산생물 질병 방역교육

사업의 필요성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질병

방역에 관한 교육 실시

- 질병관리 능력 함양 및 위생의식 제고를 통한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8조

사업개요

- 건 명 : 수산생물 질병 방역교육
- 위 치 : 도내 전양식장 경영인 및 종사자
- 사 업 량 : 양식어업인 500여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5월
- 총사업비 : 16,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 계획 수립 : '16년 12월
-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 시행 : '17년 3월 ~ 5월

기대효과

- 신속한 질병대응 체계 확립으로 폐사율 저감하여 소득증대 도모
- 방역교육을 통한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능력 함양

III-91. 바른식생활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식생활에 대한 도민적 인식 향상으로 생활속에서 바른 식생활 실천 및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
-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활성화 및 인프라 강화
※ 사업시행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텃밭체험, 농어촌체험, 체험학교 등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향후 추진계획

- '17년 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수립 : '17년 1월
- '17년 사업추진 등 : 3월

기대효과

-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III-92.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의 필요성

-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
 - ※ 사업시행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 사 업 량 : 120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여성·아동 폭력피해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확대 추진 및 지속적으로 폭력피해 예방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기대효과

- 여성·아동 폭력예방 교육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범죄예방 도모

III-93. WISET(이공계여성 인재육성지원)사업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이공계 과학기술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출 촉구

※ 사업시행 근거 :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이공계여성 인재육성지원 사업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 업 량 : 제주대학교 WISET 제주지역센터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이공계 과학기술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기술분야로의 관심 제고

III-94.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중간관리자 및 오피니언 리더그룹 등 여성지도자 발굴·육성
- 리더가 갖추어야 할 커뮤니케이션 역량, 가치와 윤리 등 교육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 사업대상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여성단체 등 중간관리자, 청년여성 등
- 사 업 량 : 매월 1회(7h)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자체재원)

기대효과

- 여성 지도자의 역할 및 비전 제시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도모
- 지역의 정책형성과정,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력 증진과 민관협력 능력배양

III-95.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예비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전공필수과목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정·운영하여 향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시 학생들에게 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 현장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시민성 함양

※ 사업시행 근거 :

-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 ②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교육대학교 다문화 이해과목 전공필수화 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예비초등교사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를 통해 학교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수용성 확대 및 다문화 시민성 함양 교육 확산

III-96.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여성지도자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배양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 사업주체 : 언론사,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 여성단체
- 사업량 : 2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재원)

기대효과

- 제주미래를 이끌어갈 제주여성들의 권익향상 및 제주여성의 역할 재정립

III-97.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 전문강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서울 소재 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시간과 비용 등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도내에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추진하여 교육 실시

※ 사업시행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 사업량 : 2개사업(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강사 보수교육)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교육 후 중앙 전문강사 자격 부여
- 교육활동 의무적 수행 및 교육활동 실적 관리

기대효과

- 폭력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 확보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서의 전문성 및 강의 실전 능력 배양

III-98.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여성·아동폭력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 고취를 위해 도민 성인권 교육 실시
-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29조

사업개요

- 건 명 :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
- 위 치 : 도내 일원
- 사업량 : 200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폭력피해 예방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기대효과

- 여성·아동 폭력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및 성인지적 감수성 고취 등으로 폭력 예방 도모

III-99. 이주여성 전문 인력 컨설팅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이주여성의 전문성(문화, 예술, 교육 등)을 활용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할 중간 관리자(선주민+ 이주민 협업) 양성 및 마을공동체 사업 확산을 통한 지역융합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이주여성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공모사업)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업규모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및 추진(5개분야) 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다양한 이주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창의적 마을공동체 일자리 모델 창출

III-100.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맞벌이 가구 수의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유형별 교육 필요

- 가족관계 증진 향상 정책 지원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로 건전가정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36조

사업개요

- 건 명 :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 사업내용 : 맞춤형 아버지(부모) 교육, 가족학교(직장체험 및 가족체험 프로그램 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시행주체 : 가족친화사업 수행 전문기관
- 총사업비 : 10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부모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확대
- 다양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가족문화 대축제 개최

기대효과

- 남성의 역할 정립 인식개선 및 가족관계 개선으로 건강가정 강화 도모

III-101.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필요성

- 여성 결혼 이민자의 국내 장기거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초기 적응에서 일자리 교육 및 연계서비스 정책 수요 증가
- 결혼이민자 희망직종과 지역내 기업 구인직종을 연계한 취업교육으로 일자리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 과정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 취업 연계 취업교육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 지원 효과 확보

III-102. 지역 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업체 및 투자기업 등 지역 수요 맞춤형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 사업시행 근거 : 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 수요 맞춤형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 사 업 량 : 지역 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6개분야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운영계획

- 도내 사전 여성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체계적 취업연계 서비스 마련

기대효과

- 도내 기업 맞춤형 여성 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도민 고용 창출 극대화

III-103. 아동·여성안전교육 문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인식개선 도모

※ 사업시행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아동·여성 안전교육 문화사업(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28,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상시적인 점검 실시로 교육 실효성 강화

기대효과

-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도민들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III-104. 지역안전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여성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 ※ 사업시행근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안전프로그램 지원
- 사업량 : 2개 사업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안전사업 및 아동안전 지도 제작)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45,184천원(국비 22,592, 지방비 22,592)
 - 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안전프로그램 추진하여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역안전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확대

기대효과

- 지역주민 및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프로그램 운영으로 위험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아동 안전의식 고취

III-105. 다문화가정 제주 바로 알기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들이 진정한 제주도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의 자연환경, 문화, 역사를 바로 알고 선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정 제주 바로 알기
- 사업내용 : 결혼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제주의 자연, 문화, 역사를 소재로 한 교육, 토크콘서트 등 소통·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17,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제주의 자연, 문화, 역사를 소재로 한 소통·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틀 마련

III-106.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자녀

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 지원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사업량 : 주 1회, 아동 1명당 반기별 총 26회 / 제주시 20명, 서귀포시 10명
-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자녀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응능력 배양

III-107.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간 관계강화 및 자녀의 정체성, 사회성 발달 지원사업으로 건강한 가정 기틀마련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사업
- 사업내용
 -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모-자녀 심리상담 등 가족구성원간 관계증진 프로그램
 - 예비 학부모 및 학부모 교육 등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통해 가족관계 증진 등 건강한 가정의 기틀 마련

III-108.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문화적 이질감, 언어문제 등으로 입국 후 생활적응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동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조성 프로그램 등 공모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자체재원)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 당사자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함께 하는 다문화사회 조성

III-109. 어린이교통공원 교통 안전교육

사업의 필요성

- 교통안전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강사 및 자원봉사자 활용 교육 실시 필요

사업개요

- 건 명 : 어린이교통공원 행사실비보상금
- 위 치 : 제주시 명림로437(4.3평화공원 앞)
- 사 업 량 : 행사실비보상금 (교통안전교육교사 실비보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400천원(도 100%)

향후 추진계획

- 교통안전교육교사의 주기적인 각종 안전사고예방교육 실시
- 타 교육기관을 견학하여 교통안전교육 내실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

기대효과

- 2017년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III-110. 북한이탈주민 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적응 및 직업준비 교육을 비롯하여 지역주민과의 교류, 통일안보 의식함양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내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 북한이탈주민의 소외감 해소, 심리·안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 마련
※ 사업시행 근거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년 1월 ~ 12월
- 사업주체 : 공모로 선정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교류사업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

- '16. 3. 25 ~ 4. 8 :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공모
- '16. 8. 27 : 2016년 하나가족 여름캠프 개최

향후 추진계획

- '17년 1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행
- '17년 1월 ~ 12월 :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문화체험을 통한 이질감 해소 및 제주사회 안정적인 정착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방향 제시로 취업과 연계

III-111.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도민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내 거주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늘어감에 따라 새마을부녀회장과 1:1멘토 자매 결연을 맺어 결혼이주여성들의 언어소통, 가정폭력, 자녀교육 등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부녀회원 등 주민들과의 소통의 기회 제공
-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제3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년 1월 ~ 12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
- 총사업비 : 22,300천원(자체재원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결혼이주 여성과 부녀회장 1:1멘토 결연, 한국문화 적응교육, 다문화 가정 및 어려운 이웃 김장 나누기 등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도민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보조금 교부
- 2017년 2월 ~ 3월 : 새마을부녀회장 및 결혼이주여성, 1:1 결연
- 2017년 4월 ~ 11월 : 도민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지역의 새마을부녀회장과 결혼이주 여성들과 상호 방문, 교류로 도민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
- 결혼이주 여성들의 올바른 한국문화 체험으로 문화적 갈등 해소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계기 마련

III-11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2010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하나원 수료 이후 지역에 배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집중교육 등 고유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사무 추진 운영비 지원으로 지역 사회 조기 정착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년 1월 ~ 12월
- 위탁운영 : 제주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 총사업비 : 74,700천원(국비 100%)
- 사업내용 : 인건비(2명), 초기집중교육, 지역교류사업 프로그램운영 등

향후 추진계획

- '17년 1월 ~ 2월 : 하나센터 민간위탁금 교부

기대효과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 도모

III-113. 고령자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고령자 인구수의 계속적 증가에 따라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사업개요

- 건 명 : 고령자 정보화교육 지원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 업 량 : 고령자 정보화교육 기관·단체 2개소 지원
- 사업기간 : '17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2,400천원(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세부추진계획 수립 : '17년 1월
- 사업공고 및 사업기관 선정 협약체결 : '17년 2월
-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실시 : '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고령자 체감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사회활동 동참 기회 부여
- 고령층의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제공으로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Ⅲ-114.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정보화소의 계층인 장애인등에 대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 업 량 : 장애인 정보화교육시설 기관단체 5개소 지원
- 사업기간 : '17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09,524천원(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세부추진계획 수립 : '17년 1월
- 사업공고 및 사업기관 선정 협약체결 : '17년 2월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실시 : '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장애인 체감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사회활동 동참 기회 부여
-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제공으로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Ⅲ-115. 여성농업인·소비자단체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안목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 습득 기회 마련
- 농업 및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전문능력 함양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농업인·소비자단체 교육 재료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4,2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5,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100%)

향후 추진계획

- 농촌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소비자의 요구 파악 및 도시소비계층을 겨냥한 여성농업인의 능력함양
- 지역농산물의 가공 및 서비스상품화 기회 모색

III-116. 귀농귀촌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및 농업정보 제공을 통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 유도
- 선도농가 농장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귀농귀촌에 대한 사전 체험과 영농기술 습득 기회 제공

사업개요

- 건 명 : 귀농귀촌 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 위 치 : 애월읍, 조천읍, 시내동
- 사 업 량 : 귀농귀촌교육 2과정 및 현장실습교육 8명(5개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2,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기대효과

- 귀농귀촌 영농초보자 체계적인 영농기술 습득 및 현장실습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Ⅲ-117. 농기계 교육 실습 재료

사업의 필요성

- 농기계 교육훈련으로 기능인력 양성 및 활용 극대화
- 농기계 사용 및 자가 정비수리 교육 통해 기계화영농 선도 농업인 양성

사업개요

- 건 명 : 농기계 교육 실습 재료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농기계 현장실용교육 13회, 325명
- 사업기간 : 2017년 5월 ~ 10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농기계 교육훈련 추진 : 13회, 325명

기대효과

- 농기계 민간 위탁 농작업 대비 교육 통한 직접 농기계 운용으로 경영비 절감
- 농기계 운전, 관리능력 제고로 농작업 생력화 촉진 및 안전사고 예방

III-118. 농업인 전문교육 장비

사업의 필요성

- 노후화된 농업인전문교육장비 교체 확보로 농업인 교육 질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전문교육 장비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장비 구입 등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에 활용

기대효과

- 최신 장비 활용으로 농업인서비스강화 및 영농기술교육 확대

III-119. 농기계 교육장 기반조성

사업의 필요성

- 농기계교육장 정비실 및 보관장소 바닥 노후로 분진발생 방지 등 시설물 청결 위해 농기계교육장 바닥 보수(방수공사) 필요
- 농기계 교육 실습포장에 우수로 흙, 돌 등 유실이 심해 유실 방지 위한 경계 구역 설치 공사 필요

사업개요

- 건 명 : 농기계교육장 기반조성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농기계교육장 시설 및 실습포장 보수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6월
- 총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시설공사 추진 : 2017년 1월 ~ 2017년 6월

기대효과

- 농기계교육장 환경 개선으로 시설물 청결 유지 및 농업인 만족도 제고
- 실습포장 환경 개선으로 실습포장 흙, 돌 등 유실 방지

III-120. 농촌교육농장 육성

사업의 필요성

- 농업, 농촌 자원을 학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 가능한 농가를 체계적으로 선발 육성
- 농촌체험 학습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농업의 가치 확산

사업개요

- 건 명 : 농촌교육농장 육성
- 위 치 : 애월읍, 조천읍, 시내동
- 사업량 : 2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2,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지특) 35%, 도 35%,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농촌교육농장 품질 인증 기준에 의한 프로그램 및 시설보완
- 교육농장 실정에 맞는 초, 중, 고 학년별 교육운영 프로그램 개발
- 교육농장 간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농장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기대효과

- 지역의 농업, 농촌자원을 토대로 한 체험교육 및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
-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교육장 창업으로 농가소득 및 일자리 창출

III-121. 교육용 농기계 구입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 임대 및 교육훈련용 첨단 장비 확보로 원활한 농촌지도사업 추진
- 첨단 장비 지원으로 농업인 현장서비스 강화 및 교육훈련 효과 극대화

사업개요

- 건 명 : 교육용 농기계 구입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94,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경영비 절감 및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 2017년 농기계 교육훈련 추진 : 13회 325명

기대효과

- 신기종 농기계 확보 지원으로 농업인 만족도 제고 및 현장서비스 강화
-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로 농작업 생력화 촉진 및 경영비 절감

III-122.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도전지역 안전농산물 생산지역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희망농가에 대한 친환경농법, 친환경농자재 사용법 교육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4조

사업개요

- 건 명 :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 업 량 : 600명 (3개 기관)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3,000천원 (자체재원 30,000, 자부담 13,000)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70%,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친환경농업교육기관에 대한 공모절차 이행 (연교육계획 징구)
- 2017년 2월 ~ 12월 : 친환경농업 확산교육기관 지정 운영

기대효과

- 친환경인증 취득을 위한 관행농가의 친환경농법, 농자재 등에 대한 교육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III-123. 카지노 종사원 윤리의식 강화 교육 이수제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카지노 종사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윤리교육을 통해 종사원의 공익성, 도덕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켜 건전한 카지노산업 육성
- 카지노 종사원을 통한 위·불법행위 예방과 근절로 신뢰받는 제주 카지노산업 발전 계기 마련

사업개요

- 건 명 : 카지노 종사원 윤리의식 강화 교육 이수제 운영
- 사 업 량 : 도외강사 포함 강사수당

- 사업기간 : 2017년 연중(분기별 실시)
- 총사업비 : 33,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100%)

향후 추진계획

- 카지노 종사원 윤리의식 강화 연간 교육계획 수립 : '17년 1월 ~ 2월
 - 교육기간, 교육분야(3~5개분야) 및 장소선정, 전문강사 선정 등
 - 교육계획 안내 등 카지노 대표자 등 협의
- 도내 카지노 종사원 교육(소규모 맞춤형) 실시 : 분기별
 - 1기당 50명 내외 교육(연 700명이내), 교육자 설문조사 및 교육 수료증 수여
- 교육운영 결과에 따른 평가 분석 : '17년 11월
 - 교육운영의 방식 및 문제점 등 카지노 대표자(실무자) 등과 평가
 - * 향후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와 연계한 모든 종사원 교육 이수 의무화

기대효과

- 카지노 종사원 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위·불법행위 예방
- 건전성 확보 분위기 형성을 통해 제주 카지노업 이미지 개선

III-124. 도민 법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자치법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지식 강화를 통하여 도민 권익 증진
- 「제주특별법」 교육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 공유 및 도민 자긍심 고취

사업개요

- 건 명 : 도민 법 교육 운영
- 위 치 : 도내 전역
- 사 업 량 : 도민 법 교육 운영 1식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18,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2월 : 2017년도 도민 법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교육생 모집
- 2017년 3월 ~ 9월 : 도민 법 교육 실시
- 2017년 10월 ~ 11월 : 도민 법 교육 결과 정리

기대효과

-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법 교육을 통하여 도민 법률지식 향상으로 도민 권익 증대

III-125. 내·외국인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국 문화 이해 증진 및 제주사회 정착 지원
- 내외국인 대상 제주 자연·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제주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제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업개요

- 건 명 : 내외국인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 사업량 : 제주(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자연·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내외국인 문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17년 1월
- 내외국인 문화 프로그램 운영 : '17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외국인 대상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제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강화 및 정주여건 만족도 제고

- 내·외국인 대상 제주 자연·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문화 우수성 홍보 및 정주민들의 소통의 장 마련

III-126. 청년 갭이어(Gap year) 체험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제주의 특성상 섬 밖을 떠나 다양한 삶을 경험할 기회가 적은 도내 청년들이 도외에서의 갭이어(Gap year)를 통해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향후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자아성찰 및 자기성장을 통한 가치관 확립 등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제18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년 갭이어(Gap year) 체험사업 강사료 등
 - ※ 갭이어(Gap year): 학업을 병행 또는 잠시 중단하고 봉사, 여행, 교육, 인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여 이를 통해 향후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을 말함
- 사업량 : 도내 청년 4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0월
- 주요내용 : 다양한 주제(환경체험, 도시재생, 청년창업 성공사례, 문화거리체험 등)로 한 달 이내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총사업비 : 2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갭이어(Gap year) 체험 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컨설팅 : '17년 1월
- 갭이어(Gap year) 체험 참가자 공모 등 사업추진 : '17년 3월 ~ '17년 8월
- 갭이어(Gap year) 체험 사업 결과보고서 결과발표 워크숍 : '17년 10월

기대효과

- 도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설정 및 자아성찰의 기회 제공
- 도외 체류경험을 통한 자립심 및 사회적응력 강화 등 자기성장의 기회 마련

III-127. 청년 '트명나명' 배움 지원 사업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배움 욕구 충족을 위해 ① 소모임(팀)을 구성하고 ② 장소 및 강사를 선정하여 ③ 원하는 강좌(강좌 당 3회 ~ 5회)를 개설하면 강사료를 지원함으로써 팀 공동체 의식 함양과 역량개발 도모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제13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년 '트명나명' 배움 지원 사업
※ 트명나명: '틈날 때 틈내서'를 의미하는 제주어
- 대 상 : 도내 청년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청년들이 학습하고 싶은 다양한 강좌(자격증 과정, 교과과정 등 제외)
-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청년 '트명나명' 배움 지원 사업 공모 및 강좌 운영 : 연 2회

기대효과

- 직접 청년들이 강좌를 계획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청년활동의 기반 마련
- 청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수강생, 시간, 장소, 강사를 선정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소모임(팀)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III-128. 청년 우수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사업의 필요성

-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청년상 모색 및 청년단체의 역량 강화 계기 마련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제13조, 제20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년 우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도내 청년 및 청년단체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보조사업 공모 및 심사 : '17년 1월 ~ 3월
- 보조사업 실시 : '17년 4월 ~ 12월

기대효과

-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의 사회 참여 유도
- 사회적 경험이 비교적 적고,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청년문제와 관련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청년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III-129. 청년시설(청년광장)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등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청년 활동공간(청년시설)에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역량강화 도모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 제2항 제7호

사업개요

- 건 명 : 청년시설(청년광장)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2개소(제주시 이도2동 1개소, 일도2동 1개소)
- 주요내용 : 청년들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청년시설(청년광장)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 수립 : '17년 1월
- 청년시설(청년광장) 프로그램 운영: '17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활력을 기함과 동시에 역량 강화 기회 제공

III-130. 청년 갭이어(Gap year) 체험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제주의 특성상 섬 밖을 떠나 다양한 삶을 경험할 기회가 적은 도내 청년들이 도외에서의 갭이어(Gap year)를 통해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향후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자아성찰 및 자기성장을 통한 가치관 확립 등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제18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년 갭이어(Gap year) 체험사업 참가자 보상
- ※ 갭이어(Gap year) : 학업을 병행 또는 잠시 중단하고 봉사, 여행, 교육, 인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여 이를 통해 향후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을 말함
- 사업량 : 도내 청년 4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0월
- 주요내용 : 다양한 주제(환경체험, 도시재생, 청년창업 성공사례, 문화거리체험 등)로 한 달 이내로 진행되는 갭이어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보상
- 총사업비 : 4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갭이어(Gap year) 체험 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컨설팅 : '17년 1월
- 갭이어(Gap year) 체험 참가자 공모 등 사업추진 : '17년 3월 ~ '17년 8월
- 갭이어(Gap year) 체험 사업 결과보고서 결과발표 워크숍 : '17년 10월

기대효과

- 도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설정 및 자아성찰의 기회 제공
- 도외 체류경험을 통한 자립심 및 사회적응력 강화 등 자기성장의 기회 마련

III-131.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인생 100세시대와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민역량강화 및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수혜기회 균등 보장
 - 중장년층(생애전환), 노년층(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등) 등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3개 과정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민선6기 공약실천 실행계획 및 2015년도 지역평생교육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연차별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계획 수립 및 추진
- '17년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3개 과정 운영

기대효과

- 생애단계별 학습욕구를 충족하는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확대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적극적 평생교육 추진

III-132. 청년활동 지원 (청춘열기 프로젝트) 사업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참여 기회가 적은 청년들에게 팀별 활동과 과제선정 해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역량개발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시민의식을 심어주고자 함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년활동 지원 (청춘열기 프로젝트) 사업
- ※ 청춘열기 : 중의적 표현으로서 '청춘의 뜨거운 열기(熱氣)'와 '청춘을 연다 (OPEN)'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
- 대 상 : 도내 청년, 청년 소그룹(팀)에 참여하는 도민
- 내 용
 - 팀별 소규모 공익사업 활동 지원
 - 팀별 도정 정책과제 해결 프로젝트 참여 경진대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사업설명회(청년 아카데미 포함) 및 컨설팅 개최(2회) : '17년 2월중
- 사업공모 및 선정 : '17년 4월중
- 청년 소규모 공익사업 활동 및 도정 정책과제 해결 프로젝트 참여 경진대회 실시 : '17년 5월 ~ 10월
- 사업결과 평가 워크숍(도, 사업수행기관, 청년 등) : '17년 11월중

기대효과

- 다음세대 주인인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및 의견이 도정에 반영됨으로써 활력 있는 정책 추진 가능
-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청년활동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이 자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III-133. 크루즈산업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사업의 필요성

- 아시아지역 크루즈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제주지역 크루즈 관광산업을 견인차 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필요성 대두
 - 크루즈 관광 활성화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기반 구축 및 고용 창출로 청년실업난 해소
- ※ 사업시행 근거 : 도지사 공약사업(10-9)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크루즈산업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 위탁기관 : (사)창의연구소
- 사업량 : 인재육성 15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17년 1월
- 민간위탁 운영 : '17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크루즈 아카데미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크루즈 업계 취업을 통한 청년 실업난 해소

III-134.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미래 해양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실시로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층 저변확대 및 해양레저산업 인적인프라 확충

※ 사업시행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사업개요

- 건 명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제주국제요트학교),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서귀포국제요트학교)
- 사업량 : 2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4,000천원(국비 32,000 도비 32,000)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 : '17년 1월
- 보조금교부 결정 및 사업 착수 : '17년 2월
- 사업 완료 및 정산 : '17년 12월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요트세일링체험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해양보전의식 함양
 - 요트 동호회 결성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III-13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필요성

- 21세기 새로운 블루오션인 크루즈관광산업을 선도해 나갈 인재육성

- 추후 크루즈 관련 산업에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크루즈 산업 전문인력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① 도지사 공약사업(10-9)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 ② 제주특별자치도-코스타크루즈-(주)롯데관광개발 3자간 MOU

사업개요

- 건 명 :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성인지예산)
- 대행기관 : 제주관광공사
- 사업량 : 전문인력 5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크루즈 전문인력 육성사업 대행협약 체결 : '17년 1월
- 크루즈선상실습 참여학생 선발 : '17년 2월
- 전문인력 양성 교육 : '17년 3월 ~ 5월, 9월 ~ 11월
- 크루즈 선상실습 실시 : '17년 5월 / 10월

기대효과

- 크루즈 인턴쉽과 연계를 통한 청년 고용창출 기회 확대
- 제주지역 크루즈관광 서비스 개선 및 품질향상 도모로 이미지 제고

III-136. 신창 дай버 체험학습장 조성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시험바다목장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제주바다목장 체험관' 인근 부지에 다이버 체험학습장 조성으로 제주서부권역 해양관광벨트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사업개요

- 건 명 : 신창 다이버 체험학습장 조성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항
- 사 업 량 : 다이버 체험학습장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0천원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해역이용협의 : '17년 1월
- 공사발주 및 계약 : '17년 2월
- 공사착수 및 준공 : '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제주 서부권역 미래핵심 공간으로 조성된 '제주바다목장 체험관'과 연계한 다이버 학습체험장 운영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제주바다목장 체험관 방문객 연 5만명, 다이버 학습체험장 이용객(추정) 연 1만명

III-137. 수상안전 인명교육 및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제주바다 목장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제주바다목장 체험관에서 관광객 및 도민 대상의 수상안전 인명교육 및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제주바다목장 활용방안 극대화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16조 및 제22조 제10호

사업개요

- 건 명 : 수상안전 인명교육 및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훈련 지원
- 지원대상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해양스포츠센터)
- 사 업 량 : 교육훈련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3,000천원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70%, 자담 30%)

향후 추진계획

- 사업비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17년 1월
- 보조사업 추진 : '17년 2월 ~ 10월

기대효과

- 청소년 및 도내외 관광객들에게 수상인명 및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을 통해 해양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해양보전의식 함양

III-138. 수산기술 전문교육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전통수산업 환경의 변화와 관계 법령, 전문분야의 세분화로 어업현장에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나
- 도내에는 어업인 대상 수산기술 전문교육기관이 없음에 따라 연구원 내 전문기술 교육 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농어업 교육계획의 수립 등)

사업개요

- 건 명: 수산기술 전문교육과정 시범운영
- 교육대상: 어업경영체 운영(종사)자, 어업인후계자, 수산기관·단체 임직원
- 교육장소: 해양수산연구원 등(현장실습 포함)
- 사업기간: 2017년 1월 ~ 12월(계속사업)
- 총사업비: 30,4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 모집: 2016년 12월
- 교육생 확정, 교육장 정비, 강사진 구성, 기본교재 선정 등: 2017년 1월 ~ 2월
- 강좌운영 및 운영평가회(수료식): 20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어업 경영(종사)자 기술력 신장에 따른 사업장 관리 효율 및 생산성 증대
- 전문 인력 교육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

III-139.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어촌수산업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어촌지도자 및 어업인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 사업시행 근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22조

사업개요

- 건 명 :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어촌계장 및 단체장 등
- 사업량 : 연 3회(회당 10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계속사업)
- 총사업비 : 78,571천원(국비70%, 도비 30%)

향후 추진계획

- 어촌지도자 교육계획 수립: 2017년 1월
- 어촌지도자 교육: 연 3회

기대효과

- 어촌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 어촌지도자를 통한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

III-140.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수산계 고등학교에 취업·창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산 분야 신규 인력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개요

- 건 명 :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위탁교육비
- 위 치 : 성산고등학교
- 사 업 량 : 1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신규사업)
- 총사업비 : 15,000천원(국비 100%)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검토 및 해양수산부 제출 : 2017년 1월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2017년 2월
- 교육과정 운영 : 20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수산분야 신규 인력 육성으로 미래 수산업 발전에 기여

III-141.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의 필요성

- 증가하는 물류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물류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제주지역 물류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물류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설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5,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물류 인력양성 과정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수강생 모집

기대효과

- 제주지역 물류 전문인력 양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 물류 경쟁력 강화

III-142.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사업의 필요성

- 빗물 이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으로 빗물이용을 권장하여 지하수 의존량을 줄임으로써 지속이용 가능한 자원으로써 지하수자원 보전

사업개요

- 사업량 : 빗물이용 활성화 교육자료(홍보물) 제작 1식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9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3월 ~ 9월 : 빗물이용 활성화 교육자료 제작

기대효과

- 빗물 활용으로 지하수 등 절감효과로 수자원 적정관리에 기여
- 도시 물순환 건전성 확보 및 비점오염으로 인한 수질 악화 방지

III-143.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추진

사업의 필요성

-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과 친환경실천의 생활화 유도하기 위한 우수 환경 체험교육프로그램 선정 운영

※ 사업시행 근거 :

- ①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 ②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침(환경부)

사업개요

- 건 명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추진
- 사업량 : 13개 교육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1,430천원(지특 50,000, 도비 21,430, 국 70% : 도 30%)

향후 추진계획

-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단체 선정(환경부) : '17년 2월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청소년과 도민의 자연스러운 환경체험교육으로 환경문화생활화 도모
-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유도

III-144. 농아인협회 사회적응프로그램(일반인 수화교실) 참여지원

사업의 필요성

- 일반인들에 대한 수화교육을 통해 농아인과 일반인 간의 사회통합 기반 마련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아인협회 제주시지회
- 사업내용 :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화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추진계획

-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및 보조금 지원

기대효과

-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 불편해소에 도움제공

Ⅲ-145. 장애인 연합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이 생활체육을 통하여 체력을 증진 시킴과 동시에 삶의 활력 증진
- 여러 장애 유형간의 대회 활동을 통한 교류 활성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장애인 연합 프로그램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들의 단합과 비장애인 서로간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지속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들의 체력 및 삶의 활력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

Ⅲ-146. 지체장애인 사회학습훈련

사업의 필요성

-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장애인들의 사회학습체험을 통해 심신단련과 삶의 의욕고취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부여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지지회
- 사업내용 : 타 지방의 문화체험 및 선진 기술업체 탐방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추진계획

- 지체장애인에게 다양한 사회학습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보조금 지원

기대효과

- 지체장애인의 사회학습체험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

III-147. 경로당 순회교육

사업의 필요성

- 노인의 건강증진과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당별 순회교육을 통한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방안강구 및 노인복지시책 반영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사업량 : 145개소 경로당(300개 경로당 중 격년 실시)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운영방법 : 년 1회 (경로당별 순회방문)
- 사업내용 : 순회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총사업비 : 18,000천원(자체재원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2016년 순회교육 미실시 경로당 대상)

기대효과

- 노인들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기회 제공

Ⅲ-148.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체계적인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를 통해 경로당 프로그램 질 향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 ①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② 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 ③ 도 경로당 지원기준

사업개요

- 사업량 : 1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 운영계획 수립 : '16. 12월 ~ '17년 1월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 및 운영 : '17년 1월 ~ 12월

Ⅲ-149. 장애인운전면허 취득교육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취업 등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도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취득 희망자
- ※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및 생계·의료수급자 중 5~6급 지체·뇌병변·청각

- 장애인은 제외(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 `16.07.01. 시행
- 사업내용 :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1·2종 보통 500천원, 대형 650천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25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

기대효과

-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III-150. 취미교실 운영비

사업의 필요성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취미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사업량 : 300개소 경로당
- 운영방법 : 주 1~2회 운영
- 운영주체 : 읍·면·동별 경로당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2월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수요파악 및 선정
- 2017년 2월 중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 지원

기대효과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생활 향상 및 경로당 활성화 도모

III-151. 노숙인 자활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사업의 필요성

- 노숙인들의 읍주 지양을 위한 절주 프로그램 및 적절한 취미생활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활용 및 대인관계기술 습득으로 자활의지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취미활동 및 여가활용 프로그램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노숙인들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로 노숙생활 탈피 및 사회복귀 도모

기대효과

- 거리 노숙인의 재활의지 강화로 사회통합 도모

III-152. 노인교실 운영비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교양, 오락 등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한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사업개요

- 사업량 : 14개소 노인교실
- 운영 프로그램 : 일반교양, 건강강좌, 지역경제, 시사상식, 취미생활 등
- 운영방법 : 주 1회 이상 / 1일 2시간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7,000천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2월중 노인교실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3월중 노인교실 운영비

기대효과

- 노인교실 운영 지원을 통한 어르신들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노인복지증진 지원

III-153. 찾아가는 친절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친절을 체계화한 교육운영으로 오고,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제주관광 이미지 정착
-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교육 및 평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체계 교육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차별성 있는 교육 실시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친절교육 운영
- 위 치 : 제주시 관내 관광사업체
- 사업량 : 상·하반기 친절모니터링 및 친절 교육(연 2회)
- 사업기간 : 2017년 2월 ~ 10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 상·하반기 친절모니터링 실시 : 반기 1회(연 2회)
- 관광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교육 운영 : 반기1회(연 2회)

기대효과

- 관광객 환대문화 조성으로 관광사업체 글로벌 서비스 마인드 제고 및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III-154.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강·단점을 알아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존감 고취 및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기초생활보장조례 제11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7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역량강화교육 운영비 지급 및 참여자 관리로 체계적인 교육 주도

기대효과

-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자존감 고취 및 긍정마인드 함양

III-155.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 기회제공으로 자활·자립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②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직업훈련 참가자 2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6,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및 대학재학 세대주 직업훈련비 수시 지급

기대효과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도모 및 원활한 사회통합 유도

III-156.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협치 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갖고 있는 정착주민(전문 인력)들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발전의 동력구축 기여
-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정착지원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정착주민 등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협치지원 프로그램
- 위 치 : 제주시 일원
- 사업량 : 프로그램 운영 1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과의 융화·협력 사업 시행
 - 사업 공모(2개 내외) : 2017년 2월 ~ 3월
 - 사업 대상 선정 : 2017년 4월

- 사업 추진 : 2017년 5월~11월
- 사업추진 평가 및 개선사항 정리 : 2017년 12월

기대효과

- 제주바로알기 사업 등 지역문화 교류사업과 지역 소통·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정착주민의 제주 정착 확대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 참여 기회 확대

III-157. 주민주도형 소통프로그램 공모

사업의 필요성

- 급격한 도시화와 이주민의 증가로 이웃과 함께하는 제주의 공동체 문화 약화
- 지역주민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의제 발굴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주민주도의 소통 프로그램 공모(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사업내용 : 5인 이상 소규모 주민 모임에 대한 소통 프로그램 운영 지원(20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지특 35%, 도비 15%, 자체 50%)

향후 추진계획

- 주민주도형 소통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 : 2017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제주다운 공동체 회복도모

III-158.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시정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과의 이야기 장을 마련하여 융화·협력을 통해 애월읍의 발전적 시책 발굴
-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주의 낯선풍습에 대한 불안감 해소

사업개요

- 건 명 :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시정참여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애월읍 정착주민 2,500여명(정착주민 5,000여명의 50%)
- 사 업 량 : 정착주민과의 대화의날 운영 및 시책발굴 추진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1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자체재원 45,000 자부담 5,000)

향후 추진계획

- 정착주민 함께하는 시정참여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1월중
- 정착주민 함께하는 시정참여 프로그램 운영사업자 공모 : 2017년 2월중
 - 1회 : 마을별 정착주민과의 간담회 실시 ☞ 애로사항 등 청취 및 퓨전 토크자 선정
 - 2회 : 마을 퓨전토크자와의 간담회 실시 ☞ 정착주민 눈높이에 맞는 시책 발굴 추진

기대효과

- 애월읍의 정착주민과의 융화 사업을 발굴하여 “이야기가 통하는 애월읍” 공동체 조성에 기여

III-159.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

사업의 필요성

-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교직원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33조의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보육교직원 800명(2회, 회당 4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3월 : 아동학대예방교육 보조사업 신청 안내 및 접수
- 2017년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7년 4월 ~ 12월 : 사업추진 및 정산검사 실시

기대효과

-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

III-160.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집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추진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및 보육의 질 향상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사업량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60명
- 보조사업자 :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3월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신청 안내 및 접수
- 2017년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7년 3월~12월 : 사업추진 및 정산검사 실시

기대효과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III-161.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사업의 필요성

-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보수 교육비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사업개요

- 사업량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18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200천원(기금 50%, 도비 50%)

현재까지 추진상황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 10개소 18명 10,19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체계화된 보수교육 지원

기대효과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으로 상담·지원 서비스 전문성 제고

III-162.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33%이며 한국어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8조의2 ,3호

사업개요

- 사업량 : 다문화관련 프로그램 2개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프로그램 공모후 보조사업자 선정
-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접수 및 보조금 지원
-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기대효과

- 지리적문제로 인하여 소외된 읍면지역 다문화가정에게 자녀교육,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지원으로 가족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III-163.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문학 특강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들이 문학,음악,미술,연극 등의 활동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인문학의 세계를 만나고 자신을 표현하여 자존감과 성취감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8조의2,2·4호

사업개요

- 사업량 : 인문학 프로그램운영 12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프로그램 공모 후 보조사업자 선정
-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접수 및 보조금 지원
-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 부부의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향상하며,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III-164.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필요성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제1호

사업개요

- 사업량 : 언어발달지도사 3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총사업비 : 78,058천원(기금 70%, 도비 30%)

향후 추진계획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홍보 및 초기 언어평가 확대

기대효과

- 아동의 언어발달능력 향상으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자신감 증진에 기여

III-165.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 성폭력 취약계층 대상으로 성교육 파견 의뢰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복과 지속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7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비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 총사업비 : 8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교육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 욕구에 맞는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로 성폭력 예방 도모

III-16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리적 접근성 문제 등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서비스 및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생활지원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감 해소 및 한국사회 조기적응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제1호

사업개요

- 사업량 : 방문교육지도사 21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총사업비 : 223,650천원(기금 70%, 도비 30%)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비 신청 접수 및 분기별 지원

기대효과

-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통합 기여

III-167.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민이 원하는 강좌와 강사를 시민들이 직접 선정하여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학습 접근성 편의 제공 및 시민만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제14조
- * 배달강좌란, 시민이 모여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가정이나 공공장소 등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배달 서비스

사업개요

- 건 명 :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강사비
- 위 치 : 아파트, 마을회관, 복지시설, 기관 및 단체 등 시민이 원하는 학습공간
- 사 업 량 : 배달강좌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배달강좌 공모 및 관계자 설명회 : 2017년 2월 ~3월
- 배달강좌 운영 : 2017년 3월 ~ 11월

기대효과

- 독창성 있는 강좌 선정 및 발굴로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 편견 해소 및 평생 학습 활성화 분위기 조성

III-168. 제주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인생 100세 시대 시민의 평생학습욕구 충족 및 자기개발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 제14조

사업개요

- 건 명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 위 치 : 제주시 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

III-169. 제주등하학교 차량구입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야간 프로그램 학습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 학습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등하학교 차량구입 지원
- 대 상 : 제주등하학교
- 사 업 량 : 차량 1대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9,700천원(자체재원 27,000천원 , 자부담 2,7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학습자 이동수단의 확보를 통해 많은 학습자들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

기대효과

- 안정적인 교육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주시 전 지역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III-170.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차량구입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신체적·거리적 한계로 인하여 학습이 좌절된 중증장애인들의 교육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차량구입 지원
- 대 상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사 업 량 : 장애인용 특장차량 1대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5,200천원(자체재원 40,680천원 , 자부담 4,52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한정된 장애인 생활범위 확대

기대효과

- 성인 중증장애인에게 이동범위를 넓힘으로써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와 지역사회 자립생활 실현 기반 조성

III-171. 시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사업의 필요성

-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보이용을 생활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에 따른 교재 구입

사업개요

- 건 명 : 시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 위 치 :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및 읍·면·동 정보화교육장

- 사업량 : 컴퓨터기초 제대로 배워 실력다지기(윈도우 8), 기초한글 2010 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열린정보센터 및 읍면동 정보화교육장 교육에 맞춰 교재 구입 : 2017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지역 간·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교육 지원

III-172.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조천읍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필요성

-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으로 조천 인근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사업시행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3조의 2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01-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조천읍센터
- 사업량 : 프로그램 운영비 (6개 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사업 계획 수립 및 대상 가정 확정 : 2017년 1월
- 조천읍센터 프로그램 운영 : 2017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조천읍센터 활발한 운영을 통하여 조천읍 지역주민의 복지 서비스 전달 강화

III-173.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복지관 실정에 적합한 특화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여 주민생활서비스 만족도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3조의 2

사업개요

- 사업량 :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4,000천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특화프로그램 7개 선정·지원 : 2017년 1월 ~ 12월
-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관리 점검 : 연중

기대효과

-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로 복지 체감도 제고

III-174.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읍·면·동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학실험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 사업량
 - 생활과학교실 운영 : 창의과학교실(읍·면·동지역 2개, 부모와 함께하는 생활과학 교실 1개), 나눔과학교실, LET's MAKE 과학교실
 - 생활과학교실 재료비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 사업기간 : 2017년 1월~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17년 1월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7년 1월 ~ 12월 : 생활과학교실 운영 및 운영현황 보고
- '17년 12월 말 :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과학체험 및 인식제고로 과학인재 육성에 기여

III-175. 아쿠아로빅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쿠아로빅 교실 무료운영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9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일동) 실내수영장
- 사업량 : 수영장 아쿠아로빅 강사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56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12월 : 실내수영장 아쿠아로빅 교실 무료 운영(기수당 50명 내외)

III-176. 복싱교실운영 강사수당

사업의 필요성

- 복싱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복싱교실 무료 운영으로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9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일동) 복싱장
- 사업량 : 복싱교실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56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12월 : 복싱교실 무료 운영(기수당 50명 내외)

III-177. 수영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수영습득 참여 제공으로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9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일동) 실내수영장
- 사업량 : 수영교실 운영(일반, 어린이)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56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12월 : 수영교실 무료 운영(성인반, 어린이반)

III-178. 스포츠클라이밍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스포츠클라이밍 교실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9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일동) 인공암벽장
- 사 업 량 : 스포츠클라이밍교실 강사
- 사업기간 : 2017년 5월 ~ 10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5월 ~ 10월 : 스포츠클라이밍 교실 무료 운영(기수당 25명 내외)

III-179.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말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시민 건강권 증진
- 승마를 통한 힐링 레저 활동으로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말 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개요

- 건 명 :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제주시승마연합회
- 사 업 량 : 2회(상반기·하반기)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50%, 자부담 50%)

향후 추진계획

- 시민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승마 산업발전을 도모

기대효과

- 승마프로그램 지원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힐링 기회 증진
- 승마인구 저변확대로 승마산업 활성화 및 말산업특구 경쟁력 제고

III-180. 가족사랑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부모·자녀 및 형제 등 가족이 함께하는 승마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는 기회 제공
- 가족 승마체험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 및 가정 내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사업개요

- 건 명 : 가족사랑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일원 말 관련단체 및 등록 승마장
- 사업량 : 1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8,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50%, 자부담 50%)

향후 추진계획

- 가족이 함께하는 승마체험 활동을 통한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지원
- 승마 운동이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주는 힐링 레저스포츠로 정착 학생 승마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승마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생활 속의 건전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기대효과

- 가족이 함께하는 승마체험 활동을 통한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지원
- 말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승마인구 저변 확대

III-181. 승마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말산업 특구에서 아카데미교육 등을 통해 승마산업 활성화 도모
-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화 됨에 승마를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육성

- ※ 사업시행 근거 :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8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사업개요

- 건 명 : 승마 아카데미 운영
- 사 업 량 :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승마 협회, 동호회 등
- 사업내용 : 일반인 또는 학생 대상 승마 교육프로그램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승마가 레저문화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기대효과

- 경마 위주의 말산업을 승마분야로 다변화 함으로써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유도
- 학생, 도민들에게 승마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및 체력 증진 도모

III-182. 경로당 충효한문교실운영 및 입교생 생활학습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방학기간 중 경로당에서 지역노인들이 청소년들에게 한문 및 전통예절 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및 전통미풍 양속 계승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도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 경로당 지원기준

사업개요

- 건 명 : 경로당 충효한문교실 운영 및 입교생 생활학습비 지원
- 사 업 량 : 서귀포시 관내 경로당 10개소
- 지원기준 : 개소 당 500천원 / 반기(년 1,000천원)
- 사업기간 : 2017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 총사업비 : 1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 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경로당 충효한문교실 운영계획 수립 : '17년 2월
- 충효한문교실 지방보조금 공모 실시 : '17년 5월, 10월
- 충효한문교실 운영 지원 및 사업 실시
: '17년 7월 ~ 8월 / '17년 12월 ~ '18년 1월

III-18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
(어울림터, 평화의마을, 에코소랑)

사업의 필요성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재활도모를 위한 서비스 추진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조례 제7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토평동 2개소, 대정읍 구억리 1개소
- 수행기관 : 에코소랑, 평화의 마을, 어울림터(3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 자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직업재활시설 3개소 100명의 근로·훈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III-184.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로당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역할수행 및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영위
※ 사업시행 근거 :
①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② 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 ③ 도 경로당 지원기준

사업개요

- 사업량 : 관내 경로당 25개소
- 지원기준 : 개소 당 800천원 범위
- 사업내용 : 건강체조, 가요, 민요 등 취미·여가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 100%)

향후 추진계획

- 취미교실 프로그램 수요조사 : '17년 1월
-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신청접수 및 선정 : '17년 2월
- 취미교실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 '17년 3월 ~ '17년 10월

III-185.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중증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자립생활을 촉진하여 사회참여 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2항, 제8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62-3(서흥동)
- 수행기관 :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성완)
- 지원내용 : 연극·사진·기타·노래·낚시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 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 문화예술,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속 추진

III-186. 귀농귀촌 창업연계교육과정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인 대상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정착률 제고 및 초기 정착과정의 어려움 해소

※ 사업시행 근거 :

-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②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창업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2012. 1. 1일 이후 서귀포시로 전입 온 귀농귀촌인 중 기본교육 이수자
- 기 간 : 2017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30,000천원(자체재원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연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1월
- 교육프로그램별 세부계획 수립·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 운영 : 1월 ~ 12월

기대효과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기본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심화·창업연계과정 교육운영으로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기반 조성 지원
- 지역주민과 정착이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상생·화합분위기 조성

III-187. 쓰레기 줄이기 교육

사업의 필요성

- 학교, 단체, 각종 회의 시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전담할 시민강사를 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실비의 강사료 지급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전지역
- 사 업 량 : 쓰레기 줄이기 교육 강사료 지출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홍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16년 12월
- 수요자별(어린이, 학생, 어르신용 등) 쓰레기 줄이기 교육자료 작성 : '16년 12월
- 읍·면·동별 쓰레기 줄이기 교육 실시 : 연중

기대효과

- 시민이 주도하는 쓰레기 줄이기 습관화로 감량 및 자원재활용 극대화

III-188. 문화예술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예술 및 아카데미 등 문화예술교육으로 시민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개요

- 건 명 : 문화예술교육 운영
- 사 업 량 : 문화예술교육 4건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7,000천원 (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문화예술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1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7년 3월 ~11월

기대효과

-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생활문화예술교육 활성화

III-189.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사업의 필요성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의식·역량 강화 및 지역안전지수 제고

※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사업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 위 치 : 서귀포시 전 지역
- 사 업 량 : 안전교육운영에 따른 강사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6,000천원(소방안전교부세 100%)

향후 추진계획

- 교육운영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의 : '17년 1월
- 교육강사 인력 구축 및 교육수요 조사 : '17년 1월 ~ 2월
- 교육운영 : '17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시민안전의식 및 역량강화로 시민이 안전한 서귀포시 구축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교육운영으로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제고

III-19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타 지역 우수시설 방문 및 워크숍을 통해 종사자 간의 상호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기반을 공유하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질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III-191. 서귀포시 어린이집 연합회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집 종사자로서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육의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보조 등)

사업개요

- 건 명 : 시 어린이집 연합회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 대 상 : 서귀포시 어린이집연합회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III-192.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향상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능력향상비 지급으로 종사자의 근무의욕 및 자긍심 고취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사업개요

- 사업량 : 1,2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 지원기준
 - 도시지역 보육교사 : 월 190천원,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 월 80천원
 - 원장 및 기타 교직원 : 월 140천원
- 총사업비 : 1,440,464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사업 마무리 및 2017년 지원 계획 수립 시행

III-193.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다문화가족 갈등의 해소를 통한 건강성 증진 및 가정해체방지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 위 치 :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시 중앙로 81)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운영

III-194.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서귀포시 외곽지역 거주 다문화가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문화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시 중앙로 81)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6,9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발굴 운영

III-195.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사회통합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및 상담사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우리문화 이해 증진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법4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사업개요

- 건 명 :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사회통합지원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14-11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다문화가정의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 및 건강한 가족관계 기능 증대

III-196. 자활사업 민간위탁

사업의 필요성

- 근로능력이 있으나 저기술, 저학력 등으로 실직상태인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술습득,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자립 자활 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법 제7조제1항 제7호, 제15조

사업개요

- 사 업 량 : 지역자활센터 2개소 115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79,94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80% : 도 20%)
- 사업내용 :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민간위탁

향후 추진계획

- 자활근로사업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 적극 개발

기대효과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능력배양

III-197.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지역중심의 과학문화 확산 운동 전개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청소년의 과학적 탐구력 증진 및 과학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

사업개요

- 건 명 :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 위 치 : 읍면동 청소년문화의 집 등 6개소
- 사 업 량 : 과학실험·체험프로그램 운영 6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생활과학교실 운영 협약 체결 : 2017년 1월

기대효과

-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과학교육의 활성화

III-198. 승마아카데미운영

사업의 필요성

- 말산업을 친환경 녹색 고부가 산업으로 육성하고 승마교실 운영을 통한 승마인구 저변확대
- ※ 사업시행 근거 : 말산업육성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사업개요

- 건 명 : 승마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량 : 1식
- 총사업비 : 84,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승마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향후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공모 : 2017년 1월 ~ 2월
-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승마교실 운영을 통하여 생활체육 승마인구 저변확대로 승마 대중화에 기여하고 말 이용성 제고를 통한 승마산업 활성화

III-199.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4060세대의 퇴직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은퇴자 및 은퇴 예정자들의 은퇴 후 인생설계를 통하여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서귀포시 서문로29번길 10)
- 사업량 : 은퇴설계 교육 아카데미 운영 1식
- 사업기간 : '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 '17년 1월
- 수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17년 2월
-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및 정산 : '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퇴직 후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과 동기 부여
-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교육 필요

III-200. 쇠소깍 서핑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쇠소깍 검은모래 해변에서는 5월 ~ 10월 경 서핑을 타기에 적절한 파도가 일어 서핑교실을 운영하기에 용이함.
-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서핑 스포츠문화 정착 및 발전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하효동 쇠소깍해변
- 사 업 량 : 수강생 10명, 48회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5월 ~ 10월
- 총사업비 : 11,2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90%, 자부담 10%)

향후 추진계획

- 강사섭외 및 수강생 모집 : 2017년 5월
- 서핑교실 운영 : 2017년 8월 ~9월
- 수강생 “2017년 쇠소깍 서핑 국제대회” 참가

 제 4 장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IV-1.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 및 판매를 통한 자립성장 여건조성
-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 사회적경제 주간행사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인식 확산과 홍보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제4호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지원(사회적경제 주간행사 및 포럼 개최)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단체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17년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계획수립 : 2017년 1월
-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 2017년 3월
- 사업추진 : 2017년 5월 ~ 12월

IV-2.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아카데미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전략 및 마케팅, 조직관리, 자원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 실시로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 ※ 사업시행근거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제5호 및 제24조 제2항 제5호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경영자, 실무자, 전문가, 미래인재(초·중·고·대학생 등) 육성과정 등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17년 총사업비 : 100,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종합아카데미 기본계획 수립('17년 1월 ~ 2월)
- 사회적경제종합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17년 3월~12월)

IV-3. 미래후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교육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4-H이념교육으로 농심 배양 및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
- 학교4-H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사 대상 교육, 4-H 이념확산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지원조례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미래후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교육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20회 1,0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6,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100%)

향후 추진계획

- 4-H지도교사 현장교육 : 1회 30명
- 4-H연합회 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지도 : 2회

기대효과

- 청소년 4-H이념교육으로 농심 배양 및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기여
- 학교4-H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사 대상 교육, 4-H 이념확산 기여

IV-4. 기초 농업기술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신규 농업인을 위한 기초 농업 교육 영상 제작과 인터넷 뉴스 매체 홈페이지에 상시 등재로 신규 농업인 영농 정착 의지 제고

사업개요

- 건 명 : 감귤 기초 재배기술 교육 영상 촬영 및 자체 홈페이지에 등재
- 사 업 량 : 영상촬영, 제작, 자체 홈페이지 탑재 운영 등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8,5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70%,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인터넷 뉴스 매체 공모사업으로 추진
- 신규농업인 위한 감귤재배 기초 기술 교육 동영상 제작 활용

IV-5.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친환경농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용적 활용방안을 모색
- 친환경농업 전문가 육성을 통한 청정 제주농업 이미지 제고

사업개요

- 건 명 :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 사 업 량 : 1개소 50명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계획 수립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커리큘럼 마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교육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육성

IV-6. 농어촌관광 경영자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관광과 농업을 접목시켜 소비자 욕구충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체험지도사 양성
 - 농촌관광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하여 농촌관광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농촌관광의 전문경영인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개요

- 건 명 : 농어촌관광 경영자과정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개소 5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소양과 능력을 갖춘 농촌체험지도사 양성으로 농촌관광 질적 성장을 통한 농촌 관광(마을, 농장)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촌자원 가치 향상
- 제주 관광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영역 개발로 향후 6차산업과 연계한 농업 비전 제시

기대효과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농어촌관광 질적 향상 도모
- 농어촌자원을 활용 농촌관광 전문경영인 육성으로 농촌체험 및 농어촌 관광 활성화

IV-7.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전문농업기술교육 강화로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경영 CEO 양성
 - 첨단 1차 산업을 선도하고 시대변화에 대처하는 지역사회 지도자 역량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 전문교육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농업인전문교육과정 6과정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19,5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영농문제 해결 중심 전문농업인양성교육 및 소비자중심 열린교육과정 운영 : 6과정 2,500명

기대효과

- 제주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육성

IV-8. 4-H 도 본부 교육지원

사업의 필요성

- 지역 4-H본부 교육 활동 지원으로 우수 농업인력 양성과 지역 본부의 역량 향상을 통해 4-H운동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
- 도 본부 교육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지역4-H운동 활성화
- 중앙과 지역간 교육운영의 연계 추진으로 효율적인 성과 거양
※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지원 조례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4-H본부 워크숍 및 교육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0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 도 50%)

향후 추진계획

- 4-H본부 회원 역량강화 현장교육 및 여성회원 교육 등 : 2회

기대효과

- 농업농촌에 기반을 둔 청소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창조적 농업 후계인력 양성에 기여

IV-9. 4-H회 교육 행사

사업의 필요성

-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촌청소년 활동활성화를 위한 기반 제공
- 청소년들이 4-H이념을 바탕으로 농업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는 교육행사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4에이치활동지원조례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4-H회 3대 교육행사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2회 9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5,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4-H 청소년의 달 행사 : 2017년 5월
- 제주특별자치도4-H 아영대회 : 2017년 8월

기대효과

-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촌청소년 활동활성화를 위한 기반 제공 기여
- 농업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인력 육성

IV-10. 농업인 전문교육(동부)

사업의 필요성

-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
- 농업인 애로기술 교육으로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 전문교육
- 위 치 :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우도면
- 사업량 : 5개 과정, 3,0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2,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동부지역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계획 수립
- 2017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 20회 1,000명

기대효과

- 품목별 핵심기술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 지속적인 농업인교육을 통한 농가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IV-1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동부)

사업의 필요성

- 신규농업인 및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위 치 :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우도면
- 사 업 량 : 9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4,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신규농업인 영농현장 실습지원사업 계획 수립

IV-12. 탐라의 얼 아카데미 국내답사

사업의 필요성

- 탐라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강의 및 현장답사 연계교육 실시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역사교육을 통한 홍보 정예화에 기여
- 제주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통한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사업개요

- 건 명 : 탐라의 얼 아카데미 국내답사
- 위 치 : 전라남도 일대(해상교역로 중심으로)
- 사 업 량 : 1개 과정 · 80명(2기로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2월 ~ 7월
- 총사업비 : 13,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중 : 탐라의 얼 아카데미 계획 수립 및 시행
- 2017년 2월 ~ 7월 : 탐라의 얼 아카데미 추진

기대효과

- 제주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통한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 해상왕국인 탐라국 조상들이 개척한 해상 교역로를 따라가면서 그들의 역사와 삶을 재조명하고 탐라의 얼을 되새기고자 함

IV-13. 맞춤형 도민외국어 교육

사업의 필요성

- 도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고취 및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도민 외국어 교육 실시

사업개요

- 건 명 : 맞춤형 도민외국어 교육
- 사 업 량 : 도내 외국어아카데미(영어, 일어, 러시아어 등) 과정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96,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맞춤형 외국어교육 운영과정 계획수립 및 위탁계약
- 2017년 2월 ~ 12월 :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실시

기대효과

- 맞춤형 교육 중심으로 도민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으로 국제자유도시 걸맞는 인프라 구축

IV-14. 도민 중국어아카데미

사업의 필요성

- 도민을 대상으로 기초회화 과정을 통한 중국어교육을 실시하여 관광객의 불편사항으로 조사된 언어장벽 해소로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사업개요

- 건 명 :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 사 업 량 : 중국어 아카데미 및 중국어 배움터 2개 분야 1,5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7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2017년도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계획 수립 및 위탁·협약
- 2017년 2월 ~ 12월 : 2017년도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추진

기대효과

- 도민 중국어 기초회화교육 확대로 실용중국어 구사능력 향상

IV-15. 도민사회교육 강사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국·도정시책 및 친절과정 교육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 계기 마련으로 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
-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건 명 : 도민사회교육 강사수당
- 사 업 량 : 재외도민향토학교, 국·도정시책 교육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2,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12월 중 : 2017년 도민사회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1월 ~ 12월 :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실시

기대효과

- 도민 맞춤형 교육 및 교육환경에 걸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도민 개인능력 향상 도모

IV-16.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서귀포)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능력을 배양,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현장에서 발생하는 당면영농사항을 해결,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함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0개 과정 8,0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8,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농업인교육 계획수립 및 홍보 : 2017년 1월
-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 : 2017년 2월 ~ 10월

기대효과

-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FTA 등 세계 시장 변화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

IV-17. 4-H교육 및 행사

사업의 필요성

- 학교4-H회원의 다양한 과제활동 지원으로 智·德·勞·體의 4-H이념 실천을 통한 전인적인 인재육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4에이치활동지원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4-H교육 및 행사운영

- 사업대상 : 서귀포시4-H회 (학교 및 일반 4-H회)
- 사업량 : 2회 4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2017년 3월
- 사업추진 : 2017년 4월 ~ 10월
- 4-H회원들의 수준에 맞춘 농촌 농업의 우수성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대효과

-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의 인격과 농심을 배양
- 학교4-H회 활성화 및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

IV-18. 농산물 가공교육

사업의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농촌지역사회 주체인력으로서 역량 배양 필요
-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가공상품 개발 및 가공 기술 보급 교육 지속 필요

사업개요

- 건 명 : 농산물 가공교육
- 위 치 : 서부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000천원 (자체재원 100%)
- 사업내용 : 마늘, 양배추, 월동채소 등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교육

향후 추진계획

- 농업인 대상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가공 상품화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확대 : 2,000명
- 지역 문화행사 등 연계 농산물 상품화 홍보 및 소비 촉진 활동 강화

기대효과

- 지역 농산물 가공 기술 및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인 역량강화 및 자긍심 고취
- 농촌자원을 활용한 상품화 기술을 배양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

IV-19. 농업인 전문교육(서부)

사업의 필요성

- 전국 최고의 원예작물 특성화에 따른 농업인 실용화, 품목별 전문교육, 현장 애로기술 등 교육지원
- 집합실습, 현장견학 등 다양한 교육방법 도입으로 신지식 전문농업인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19조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 전문교육
- 위 치 : 서부지역 일원(한림읍·한경면·대정읍·안덕면)
- 사업량 : 3개 과정 6,000명
 - 농업인 실용화 교육 3,000명, 품목별 전문교육 2,000명,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 교육 1,0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4,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지역품목 중심 전문농업기술 교육 및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기대효과

- 고객(농업인+ 소비자) 만족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지식 배양
-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및 농가소득 증대

IV-2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서부)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기술교육
- 위 치 :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 사 업 량 : 9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4,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현장실습교육 참여 귀농인 사후관리 및 현지지도

기대효과

- 체계적인 농업기술 습득 희망자에 대한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 제공
- 단계별 현장실습을 통한 성공적인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IV-21. 생활문화 체감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문화교육 운영으로 도민의 잠재 역량 개발 및 예술교육 욕구 충족

사업개요

- 사업량 : 47개 과정 · 2,08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1,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문화교육 운영 : 5개 과정 운영(설문대 문화특강, 오카리나(중급), 플루트(중급) 등)

기대효과

- 다양한 문화교육 운영으로 지역 아마추어 예술인 양성 및 가족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IV-22. 제주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삼양동 유적만의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선사문화체험 및 학습장 역할 뿐만 아니라 복원된 문화재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활기 넘치는 선사문화 유적지 조성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고인돌 축조, 움집 만들기 등 선사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 총사업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2월 : 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 시행
- 2017년 3월 ~ 12월 : 제주삼양동유적 선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시행

기대효과

- 도민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전통문화 재현프로그램으로 관광자원화
- 자랑스러운 제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심속의 문화유적지 조성

IV-23. 제8기 탐라종묘문화재단 탐라문화아카데미 교육

사업의 필요성

- 탐라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굴하여 제주 전통문화를 전승·보급하기 위한 사회교육 과정인 탐라아카데미 운영
 - 탐라역사의 창조적 계승과 글로벌시대의 다양한 문화조류 속에 탐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탐라고유의 문화 발굴·보급하기 위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 제33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이도1동
- 사 업 량 : 도민 대상 강좌 교재비 및 강사비 1식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자체재원 100%)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탐라문화아카데미 운영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17년 2월
- 2017년 탐라문화아카데미 운영 : '17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탐라국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계승함으로써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
- 도민들의 문화소양을 계발하고 문화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문화시민의 자질 향상

IV-24.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관 전통교육체험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관을 활용하여 전통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775-1번지
- 사 업 량 : 3개분야(제주민요, 오메기술, 고소리술) 전수교육 및 체험교육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18,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12월 : 전통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문화향유기회 확대

IV-25. 해설이 있는 역사탐방·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의 필요성

- 삼별초 대몽항쟁과 몽골 직할통치 등 100여년의 고려말 제주역사 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역사 바로알기 및 자긍심 고취
- 향몽유적지 주변 마을과 공동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재 행정에 대한 신뢰 및 공감대 형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종합 정비계획(2012. 2월)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향파두리로 50 등 도내 산재 향몽유적
- 사업량 :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20회 2,500여명, 역사탐방기행 백일장 1회 200여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참가자 및 계절별 탐방코스 발굴 등 세부계획 수립,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 참가 청소년 대상 역사탐방기행 백일장 대회 개최

기대효과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향유기회 확대
- 주민참여를 통한 공감과 신뢰 확보로 역사유산 지역 명소화 유도 및 새로운 역사문화체험 기반 조성

IV-26.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및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 ※ 사업시행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2,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성폭력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실시로 사전예방 및 성관련 인지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운영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기대효과

- 예방교육·홍보확대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IV-27. 거주외국인 대상 제주문화 이해교육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및 제주문화 이해교육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거주 외국인 대상 제주문화 이해교육

-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기타 체류 외국인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주야간, 주말 한국어 및 문화교실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자체재원 100%)

기대효과

- 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에 기여

IV-28. 농촌지도자 농업경쟁력강화 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단체의 사업 및 행사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농업인 단체 회원들의 권익 향상 및 농정시책 홍보와 농업인 상호간 새기술 정보교환의 장 마련과 친선도모로 활동의욕 고취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농촌지도자 농업경쟁력강화 교육 지원
- 위 치 : 애월읍, 조천읍, 시내동
- 사업량 : 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1,6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70%,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개방화 세계화시대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수집 기회제공
- 회원자질 향상 및 새로운 작목 도입기회 제공

기대효과

- 농업인단체의 지역농업 선도자로서 역할 증대
- 글로벌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의 활로 모색에 기여
- 제주농업 창조 실천 글로벌 리더 역량강화 FTA에 적극 대응

IV-29. 농업인전문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FTA대응 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영농교육으로 전문농업인력 양성
- 현장교육을 통한 일체감 조성 및 맞춤형 교육으로 농가애로 사항 해결
- ※ 사업시행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전문교육 운영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120회 7,0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교육수요 및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운영 : 120회 7,000명
- 교육과정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교육사업 평가 반영

기대효과

- 교육수요 맞춤형 열린교육 추진으로 최신 농업기술 보급 및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

IV-30. 제주시4-H본부 농업발전 역량강화 교육 사업

사업의 필요성

- 4-H지역 선진농업기술과 정보공유를 통해 농업 발전에 기여
- 4-H회원 리더십 강화교육을 통해 미래 후계농업 양성에 이바지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지원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4-H본부 농업발전 역량강화 교육 사업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4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도 70%,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개방화 세계화시대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수집 기회제공
- 회원자질 향상 및 새로운 작목 도입기회 제공

기대효과

- 4-H회 및 관련단체의 활동 강화를 통해 한국4-H운동의 활성화 및 농업·농촌 활성화 도모

IV-31.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사업

사업의 필요성

-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 및 농산물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 경영 및 신농업 지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지원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업량 : 100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 : 2016년 11월 ~ 12월
- 추천대상자 선정 및 평가의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2017년 2월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심의 및 선정 : 2017년 3월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추진 : 2017년 4월 ~ 6월

기대효과

- 급변하는 세계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정예 후계농업인 육성
- 젊은 농업인 육성으로 6차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IV-32.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강좌

사업의 필요성

- UN기구나 국제 구호단체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경험을 도민들에게 직접 알려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고양
- 전 세계 평화시민활동가로 뛰어다니는 국내 실천가들을 초청해 현장에서 보고 느낀 평화, 인권 실천사례를 생생하게 소개하여 평화의 섬 제주의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강좌
- 위 치 : 제주CBS본부(제주시 연동)
- 사업량 : 평화와 인권을 위한 도민강좌
 - 강사진 : 국제구호단체 실무자 / - 대상 : 청소년·대학생·도민 등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민의 평화의식 고취 등 세계평화 도시 공감대 형성 및 제주사회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교육참여 기회 마련

기대효과

-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평화와 인권교육을 통한 세계평화도시의 공감대 형성 및 강좌와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민의 평화의식 고취

IV-33.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기후변화대응 교육을 통한 도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후변화교육 민간단체에 운영비 지원
 - 교육을 통한 생활 속의 온실가스 줄이기 등 기후변화 대응 실천 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③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교육·홍보)

사업개요

- 건 명 : 기후변화교육 운영비 지원
- 사 업 량 :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2천명
- 사업내용 : 기후변화대응 교육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38,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환경부 국비지원 매칭사업

향후 추진계획

- 기후변화대응 교육 운영 계획 수립 : '17년 1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17년 1월 ~ 12월
- 사업 평가 및 보조금 정산 : '18년 1월

기대효과

- 교육을 통한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등 기후변화대응 실천기반 조성

IV-34.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를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인 체제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의식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함

※ 사업시행 근거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8조
(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촉진 및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업내용 : 폐기물관리·에너지·기업녹색경영 분야 친환경 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6개 기관·단체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1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분야별 주관 기관·단체 등 선정 공모 계획 수립 : '17년 1월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17년 2월
- 기관단체 주도형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운영 : '17년 3월 ~ 11월

기대효과

- 도민 참여와 민관의 협력으로 환경친화적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 도모 및 제주 세계환경수도 비전 달성

IV-35. 농어촌 민박업체 교육

사업의 필요성

-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관련 사업자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농어촌민박 활성화
-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6조2항

사업개요

- 사 업 량 : 7회(읍면동 지역별 순회교육)
- 교육시간 : 3시간(소방안전, 위생, 서비스)

- 사업기간 : 2017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19,4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17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17년 2월 ~ 12월

IV-36.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서문지역은 노후건물 밀집지역으로 안전시설이 취약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자력개선이 어려운 실정으로 안전시설 확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국비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사업비 내시 2016년 8월)

사업개요

- 건 명 :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 위 치 : 제주도 용담일동 137-2번지 일원
- 사업량 :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43,499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3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서문지구 새뜰마을 마을문화센터 실시 설계 완료 : 16년 12월
-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 : 2017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취약지역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 주민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형성 지원

IV-37.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마을만들기를 주도할 마을리더 양성 및 주민참여 의식 제고
-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틀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위 치 : 제주시 읍·면지역 마을
- 사 업 량 : 아카데미 기본과정·심화과정 운영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지특 70%, 도비 30%)

향후 추진계획

-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교육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 2017년 1월
- 단계별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교육 추진 및 수료 : 2017년 2월~12월

기대효과

- 마을리더 양성 및 주민 참여 의식 제고로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 확보

IV-38. 마을만들기 단계별 준비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마을사업의 단계별 지원체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성공기틀 마련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사업개요

- 건 명 : 마을만들기 단계별 준비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위 치 : 제주시 읍·면지역 마을
- 사 업 량 : 현장포럼·사업준비 활성화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0천원 (지특 70%, 도비 30%)

향후 추진계획

-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추진 : 2017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마을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주민주도의 마을발전사업 기반 확보
- 마을의 잠재된 자원 발굴 및 특성화를 통해 내실있는 마을가꾸기 기대

IV-39.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기반 조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 농촌체험휴양마을별 대표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체험기반을 조성하여 체험 방문객 증대 및 소득향상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개요

- 건 명 :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기반 조성사업
- 위 치 : 제주시일원(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마을)
- 사 업 량 : 6개마을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2,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2월 : 마을별 대표 특색 프로그램 개발
- 2017년 3월 ~ 4월 : 체험프로그램 운영기반 조성
- 2017년 4월 ~ 12월 : 대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활동 전개

기대효과

- 마을별 대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반 조성으로 인근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차별화와 연계 운영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IV-40. 한국어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제6호

사업개요

- 사업량 : 한국어교육 운영비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총사업비 : 22,162천원(기금 70%, 도비 30%)

향후 추진계획

- 한국어교육 사업홍보 및 신청자 모집

기대효과

-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통하여 도내 거주 이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한국생활 적응지원, 사회활동 참여지지 및 의사소통 증진을 통한 가족 내 갈등 예방

IV-41. 제주시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물질만능주의와 개인 이기주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

하고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고 품격있는 제주시의 미래 설계를 위한 시민 대상 인문학 강좌 개설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지원 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인문학 아카데미
- 위 치 : 제주시 평생학습관
- 사업량 : 시민대상 인문학 강좌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0,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월 ~ 2월 : 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및 참가자 모집
- 2017년 3월 ~ 12월 : 아카데미 운영 및 평가

기대효과

- 인문학 강좌 운영으로 인문적 가치 함양을 통해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고 품격 있는 사회조성에 기여

IV-42.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효율적인 도시민 유치 및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시행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

사업개요

- 건 명 : 도시민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서귀포항 구 여객터미널)
- 사업량 : 도시민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1,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50%, 도 50%)

향후 추진계획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센터 운영 : 2017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민 유치 활성화 및 이주민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IV-43.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농어촌민박의 숙박, 식품위생, 소방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매년 서비스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여 농어촌민박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6조2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관내
- 사 업 량 : 제주시 농어촌민박사업자(1,549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9,4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 2017년 하반기

기대효과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안전교육 실시로 매년 발생하는 농어촌민박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도모

IV-44. “마늘 체험교실” 시설

사업의 필요성

- 기존 농산물 창고를 이용한 체험교실을 개설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 및 채소등 농산물을 내방객 및 인터넷 매체등을 통한 판매사업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함

사업개요

- 건 명 : 마늘체험교실 시설(창고건물 리모델링)
- 위 치 : 대정읍 영락리 1285-13
- 사 업 량 : 창고부지 2,083㎡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90%, 자부담 10%)

향후 추진계획

- 영락리마을회와 사업 협의 및 의견수렴 : 2017년 1월 ~ 2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7년 3월 ~ 6월

기대효과

- 지역 농산물 홍보(체험교실을 만들고 내방객 및 인터넷 활용)
- 농산물 판매를 통한 생산 농가 소득향상

IV-45. 한국어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사회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한국어교육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시 중앙로 81)
- 사 업 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2,162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30%)

향후 추진계획

- 한국어교육 심화과정 및 중도입국자녀과정 교육 운영

IV-46.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 위 치 :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시 중앙로 81)
- 사 업 량 : 언어발달지원 2명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9,957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30%)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 및 정착 지원

IV-47. 차세대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사업의 필요성

-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세대 통일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안보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주적 평화통일의 의미를 고양
- ※ 사업시행근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업개요

- 대 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귀포시협의회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자체재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사업계획 수립 : 12월 중
-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 2017년 10월 중

기대효과

- 통일안보 현장 견학을 통한 차세대 청소년들의 안보의지 도모

IV-48. 저출산 대응 시민인식 개선

사업의 필요성

-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교육 필요
- 결혼기피, 만혼으로 인한 저출산 대응책으로 지역 내 미혼자 만남 등 행사 마련

사업개요

- 건 명 : 저출산 대응 시민인식개선 교육 및 출산·결혼 장려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사업비 부담비율 : 국 70%, 도 30%)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세부계획 및 참여자 확정 : 2017년 10월
- 서귀포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 : 2017년 11월

기대효과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인식개선 및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친화적 분위기 조성

IV-49. 창업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창업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과정의 아카데미 운영

사업개요

- 건 명 : 창업아카데미 운영
- 사 업 량 : 창업아카데미 운영 4회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6,000천원(자체재원 100%)

향후 추진계획

- 성공창업아카데미 계획 수립 : 2017년 2월
- 성공창업아카데미 일반과정 운영 : 2017년 2월 ~ 7월 / 2회
- 심화과정 운영 : 2017년 8월 ~ 12월 / 2회

기대효과

-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예비창업자 양성

IV-50. 초등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정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만18세 이상인 성인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학력 취득의 기회 부여

사업개요

- 대 상 : 정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만 18세 이상인 성인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사 업 비 : 8,180천원
- 사업주관 : 미래인재교육과
- 주요내용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운영

2017년도 추진계획

- 2016년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학력인정 : 1월 ~ 2월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기관 운영비 교부 : 3월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 지도·점검 : 5월, 10월
- 2018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공고 : 7월 ~ 9월

IV-5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의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

사업개요

- 대 상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5개 시설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사업비 : 172,300천원
- 사업주관 : 미래인재교육과
- 주요내용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2017년도 추진계획

-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 1월
- 보조금 지원 : 1월 ~ 2월
- 보조금 집행 : 3월 ~ 12월
- 보조금 정산 : 12월

IV-52. 검정고시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일정한 학력 검정을 통해 상급 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 부여

사업개요

- 대 상 : 검정고시 지원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사 업 비 : 172,880천원
- 사업주관 : 미래인재교육과
- 주요내용
 - 2017년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2회 실시

2017년도 추진계획

- 2017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실시 : 4월
- 2017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실시 : 8월

IV-53. 학교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가정-학교-지역사회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학교 역할 수행
-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의 역할 수행

사업개요

- 대 상 :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
- 사 업 비 : 학교별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
- 사업주관 : 초·중·고·특수학교
- 주요내용 :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7년도 추진계획

- 2017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학교별) : 2월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 3월 ~ 12월)
- 2017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수합 : 12월

부속

【부록 1】

평생교육법

[시행 2016년8.30.] [법률 제14160호, 2016년5.29.,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년5.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년5.29.>

[시행일 : 2017년5.30.] 제5조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년 5. 29>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일 : 2017년5.30.]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년5.29.>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7년5.30.]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년5.29.>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 2017년5.30.]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 2017.5.30.]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12.30>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9의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3.12.30]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년5.29.]

[시행일 : 2017년5.30.]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년5.29.]

[시행일 : 2017년5.30.]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년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 2017년5.30.]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년5.29.]

[중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6년5.29.>

[시행일 : 2017년5.30.]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 2014. 7. 1] 제23조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삭제 <2013. 5. 22>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7.5.30.] 제26조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년2.3.>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시행일 : 2017년5.30.]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5.8>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12.30>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 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한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14.1.28>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2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제42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27.]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13.3.23., 2015.3.27, 2016년5.29>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제목개정 2013.5.22]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2016년2.3>

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5.3.27.]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5.3.27, 2016년2.3>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1의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8676호, 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4항·제5항과 제34조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641호, 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915호, 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

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70호, 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교부·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130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339호, 2014.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228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248호, 2015.3.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945호, 2016년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160호, 2016년5.2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록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09-03-18 조례 제 459호

[시행 2015.10.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60호, 2015.10.6. 일부개정]

관리책임부서 :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제16조·제21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7>

제2조(삭제) <2015. 10. 6>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17.>

③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7.>[제목개정 2015.10.6.]

제4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8.17, 2012.10.1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7>

제5조(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2.10.17.>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7.>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
3. 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사업
5. 도민 취·창업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 향상교육사업
6. 도민의 소양개발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인문교양교육사업
7. 도민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사업
8. 도민의 문화예술적 창의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전문개정 2015.10.6.]

제10조의2(성인문자해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적·성별·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저학력자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5.10.6.>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문해교육 교원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의 문자해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문해교육프로그램 사업
2. 문해행사 개최 사업
3. 문해교육시설의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본조신설 2013.5.15.][제목개정 2015.10.6.]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0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② 삭제 <2015. 10. 6.>

③ 도지사는 진흥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0.17.>

⑤ 도지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진흥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조직 및 시설 등의 지정자격과 구비서류 등 지정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7.>

⑥ 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되거나 지정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0.17.>

⑦ 삭제 <개정 2015. 10. 6>[제목개정 2012.10.17.]

제11조의2(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17.]

제11조의3(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17.]

제12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③ 평생학습관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시에 평생학습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평생학습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중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8.17>]

제14조(삭제) <2016년 10. 6.>

제15조(개관 및 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운영을 위해 개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토요일
2. 평생학습관의 소독, 시설공사 등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평생학습관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대하여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16조(시설사용)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본조신설 2011.8.17.]

제17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으로부터 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본조신설 2011.8.17.]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3. 여성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6.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의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1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12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미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감면승인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15.10.6.>

1. 시설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2. 교육신청자가 교육 수강일 전에 교육취소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11.8.17.]

제20조(보육서비스)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이하 “보육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대상 영유아를 인도 받음으로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보육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금액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6.][중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10. 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15.1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77호, 2011.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제주시평생학습센터 및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평생학습관으로 본다.

③ 제17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개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3호, 201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5호, 2014.8.2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0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제1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제주시평생학습관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건입동 533번지)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 (서귀동 321-10번지)	

<별표 2>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7조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금 액	비 고
강 당	교육행사, 공연, 발표 등	2시간 이내	25,000	
강의실 등	회의, 교육, 세미나 등	2시간 이내	15,000	

※ 2시간 초과시 매 1시간마다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징수

1. 공연 등의 준비시간, 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2.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3.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교육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교육 과정별	1명 / 1월	10,000	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보육위탁료(제20조 관련)

□ 보육위탁료

구 분	금 액	비 고
2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5,000원	
4시간 초과 8시간(1일) 이내의 보육서비스	12,000원	

※ 적용기준

1.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간식비, 기저귀대 등은 실비 수준으로 보육 위탁료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위원용)

청렴서약서(제3조제3항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협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시설구분	
참가예상인원		사 용 자	
면 제 사 유		사 용 료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소</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인)</p> <p>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p>			

----- (절취선) -----

사 용 허 가 서			
사 용 기 간			
		시설구분	
사 용 목 적		사 용 자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특별자치도지사</p>			

【부록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16년6.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31호, 2016년6.2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31호, 2016년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동 참 여	총괄	홍정순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
		양석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과장
		이성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김 석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오숙희	제주시 자치행정과 평생학습담당
		김수은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평생학습담당
		윤태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과장
		김도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 담당 사무관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발행인 원 희 룡

발행일 2017년 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연동)

전화) 064-710-3822 팩스) 064-710-7439

홈페이지 : www.jeju.go.kr
